심리상담사법 제정 입법을 위한 기초연구

2020. 5.

법률사무소 서희

본 연구 자료는 회원 열람용으로 불법복제 및 외부 유출을 금합니다.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2

Ⅱ. 심리상담사법의 필요성 ····· 4

1. 심리상담사법 부재로 인한 사회문제 ····· 4
2.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에 대한 일반 대중 및 전문가 인식조사 ····· 8
3. 심리상담사 제도 정책 및 입법추진 경과 및 현황 ····· 64
4. 심리상담 관련 각국의 입법 현황 ····· 74
5. 소결 ····· 85

Ⅲ. 심리상담사에 대한 이론적 논거 ····· 86

1. 심리상담과 심리상담사 ····· 86
2. 심리상담사의 역할과 직무 ····· 88
3. 심리상담사의 윤리 ····· 93

Ⅳ.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 실태 ····· 95

1. 관련 유사명칭 및 유관 국가자격제도 현황 ····· 95

Ⅴ. 심리상담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 100

1. 심리상담 국가시험 운영 등 ····· 100
2. 심리상담기관 및 관련학과 인정방안 ····· 101
3. 심리상담 관련 이수 교과목 구성방안 ····· 103
4. 심리상담사법(안) ····· 105

참고문헌 ····· 117

표 차 례

〈표 2-1〉 설문조사 응답자 정보 ····· 9
〈표 2-2〉 설문의 영역 및 내용 ····· 10
〈표 2-3〉 심리상담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 18
〈표 2-4〉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 27
〈표 2-5〉 인터뷰 질문지 내용 ····· 28
〈표 2-6〉 심리상담의 본질적 요소 ····· 30
〈표 2-7〉 심리상담사의 역할 ····· 32
〈표 2-8〉 심리상담의 특징에 대한 인식의 차이 ····· 34
〈표 2-9〉 영역 2: 심리상담 관련법 부재로 인한 문제 ····· 35
〈표 2-10〉 영역 3: 심리상담사법 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 55
〈표 2-11〉 영역 4: 심리상담사법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 ····· 60
〈표 2-12〉 심리상담 관련 법률 ····· 66
〈표 2-13〉 상담기관 내용 분석 ····· 68
〈표 2-14〉 학교상담 제도화 연혁 ····· 68
〈표 2-15〉 전문상담교사 배치 관련 법안 ····· 69
〈표 2-16〉 전문상담교사 자격 관련 법안 ····· 69
〈표 2-17〉 [별표 2] 전문상담교사 자격 ····· 70
〈표 2-18〉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 제3항) ····· 70
〈표 2-19〉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 현황 ····· 71
〈표 2-20〉 청소년상담사 법제화 변혁(국가법령정보센터) ····· 72
〈표 2-21〉 청소년상담 관련 법안 ····· 72
〈표 2-22〉 청소년상담사 급별 자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별표3) ····· 73
〈표 2-23〉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과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73
〈표 2-24〉 청소년상담사 자격 현황 ····· 74
〈표 2-25〉 각국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 비교 ····· 75
〈표 2-26〉 텍사스 주 공인상담법 ····· 76
〈표 2-27〉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 ····· 77
〈표 2-28〉 뉴욕 주 공인상담법 ····· 77
〈표 2-29〉 미국 전문상담사 면허 독점권 관련 법령 ····· 78

〈표 2-30〉 독일의 심리치료사 법 ····· 79
〈표 2-31〉 독일 면허정지 법령 ····· 79
〈표 2-32〉 독일 심리치료사 훈련 및 국가시험 법령 ····· 80
〈표 2-33〉 말레이시아 상담사법 ····· 81
〈표 2-34〉 말레이시아 Act 580 [별표 2] ····· 81
〈표 2-35〉 대만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 ····· 82
〈표 2-36〉 대만법령에 규정된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업무 비교 ····· 83
〈표 2-37〉 일본 공인심리사 자격 기준 법령 ····· 84
〈표 2-38〉 일본 공인심리사 자격 제한 및 독점권 ····· 84

〈표 3-1〉 미국 표준직업분류표 ····· 88
〈표 3-2〉 Mental Health Counselor의 직무 ····· 89
〈표 3-3〉 NCS 심리상담 세분류 직무능력단위 ····· 92

〈표 4-1〉 심리상담 분야 민간자격증 현황 ····· 96
〈표 4-2〉 최근 5년간 상담 관련 국가자격 발급 현황 ····· 97
〈표 4-3〉 청소년상담사 급별 자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별표3) ····· 97
〈표 4-4〉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과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98
〈표 4-5〉 전문상담교사 자격요건(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3) ····· 99

〈표 5-1〉 심리상담 관련 이수 교과목 구성(안) ····· 104

그림 차례

[그림 2-1]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 ····· 11
[그림 2-2]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의 분포 ····· 12
[그림 2-3] 성별에 따른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 ····· 13
[그림 2-4] 학력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 ····· 14
[그림 2-5] 연령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 ····· 14
[그림 2-6] 거주지역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 ····· 14
[그림 2-7] 직업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 ····· 15
[그림 2-8]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 16
[그림 2-9]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집단별 만족도 ····· 17
[그림 2-10]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의 분포 ····· 19
[그림 2-11] '심리상담'하면 떠오르는 특성이나 이미지 ····· 20
[그림 2-12]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꺼려지는 이유 ····· 22
[그림 2-13] 심리상담사/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인식 ····· 23
[그림 2-14]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 ····· 25
[그림 2-15] 범주간 관계도 ····· 36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첨단 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가 더욱 편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물질문명 주의, 인간경시 주의와 더불어 급격한 국제사회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인간소외 등 심리적·관계적 문제의 정도는 더욱 심해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독, 자살, 폭력, 우울, 이혼 등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 치솟고 있는 노인빈곤율, 수년 째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살률 등 우리 국민이 마주하고 있는 마음건강의 위협요소들은 그 심각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은 이제 국민들에게 전혀 생소한 단어가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는 마땅히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법률적 관리체제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정부의 여러 부처가 다양한 상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심리회복지원센터와 연계한 상담서비스가 피해자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심리상담의 중요성이 일정 정도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담에 관한 일정한 기준과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 매우 산발적이고 혼란한 모습으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란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심리상담은 마음건강과 관련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과의 대면 관계에서 문제의 해결과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이장호, 2009)으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심리상담 인력이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성적인 문제, 내담자에 대한 비밀보장 침해, 위기상황 내담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부당한 상담료 징수 등 여러 측면에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건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내담자들의 자발성이 훼손될 위험 또한 존재한다(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09). 이에 따라 현재의 상담분야의 비체계성과 혼란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천개에 달하는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현 실태를 고려할 때,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진 국민의 마음건강 문제를 국가 수준에서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상담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은 직업, 청소년, 노인, 범죄, 가족 등 각 분야에 따라 개별적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포괄함과 동시에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개별적 상담 관련 조항들을 포괄하는 상위법으로써, 그리고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심리상담사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의 필요성을 전제로, 국가자격으로 운영되는 심리상담사 자격제도와 이를 규정하는 심리상담사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심리상담의 현 실태와 관련된 일반 국민들과 마음건강 유관 전문인력의 인식을 살펴보고,

둘째, 현행 상담관련 법률 현황과 국외 심리상담 입법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하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심리상담사와 관련된 선행연구, 현행 민간자격의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국가자격 심리상담사 제도 실시를 위한 심리상담사의 역할과 직무영역 제시,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운영방안과 관련된 이론체계를 수립하고,

넷째, 상기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국가자격 심리상담사의 자격 관리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는 법안 제정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국가자격 심리상담사 제도를 포함하는 심리상담사법의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1) 심리상담사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 및 마음건강 유관 전문인력의 인식

심리상담사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종사하는 직종으로 그 서비스의 대상인 국민들이 심리상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느냐는 심리상담 분야의 현 실태를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심리상담사가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유관 전문인력들의 인식 또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 및 유관 전문인력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 심리상담 제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요구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심리상담사법 입법 방안 구안

국내외의 관련 입법 사례 분석을 통하여 기존 사례들의 문제점과 함의를 도출하고 이를 심리상담사법 입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아가 심리상담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심리상담의 범위와 심리상담사의 역할, 직무, 윤리 등을 도출하여 심리상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현행되고 있는 심리상담 관련 유사 국가 및 민간 자격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포괄적인 심리상담사법 법제화와 국가기술자격 운영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일반 국민들과 마음건강 유관 전문인력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는 만 20세 이상 성인 1,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 심리상담 서비스의 전문성과 방향성에 대한 인식, 심리상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관 전문인력 인식조사를 위해 12명의 마음건강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입법사례 분석과 심리상담 선행연구 분석에는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구체적인 현행 국내외 법령 분석, 심리상담사의 정의, 역할, 직무와 윤리 등 이론적 토대 도출을 위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국내 입법사례로는 전문상담교사와 청소년상담사 제도를 살펴보았으며, 해외 사례로는 미국, 독일,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심리상담사의 역할과 직무, 윤리 등 이론적 토대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학술연구를 비롯하여 미국의 직업분류, 우리나라의 NCS 직무분류,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의 윤리규정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관련 민간 및 국가자격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민간자격의 경우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심리상담 전문 자격 운영 현황을, 국가자격의 경우 청소년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자격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Ⅱ. 심리상담사법의 필요성

1. 심리상담사법 부재로 인한 사회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서비스는 일정한 기준과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민간분야에서 매우 산발적이고 혼란한 모습으로 제공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들의 마음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마음건강과 행복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가지만,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심리상담기관이 전문성이 담보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다. 2020년 현재 등록된 '상담' 관련 민간자격은 4,000여 개,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은 3000여 개가 존재하며, 상담센터의 개소 또한 허가제로써 관리·감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가능한 신고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민간에서 발급되는 상담 관련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우후죽순 상담센터들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1) 심리상담사법의 부재로 인한 내담자 안전보장의 문제

최근 심리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폭행 및 추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언론은 또한 성폭행 및 추행 사건의 가해 심리상담사들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현실까지 지적하였다.[1] 상담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처벌이 어려운 점은 상담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내담자들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심리상담사를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인 경험을 개방하면서 심리상담사와 특별한 신뢰 관계를 맺게 된다. 심리·정서적 취약 상태에 놓인 내담자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심리상담사에게 일정 정도 의존성을 가지게 되고, 신뢰관계와 의존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친밀감은 상담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야기한다. 내담자의 의존성과 힘의 불균형은 전문적이고 건강하게 활용되는 경우 내담자의 치료와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소가 되지만, 심리상담사가 악용하는 경우 내담자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이에 근거한 성적 접촉은 성적 착취가 될 수 있으며, 착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동의

1) 심리상담사의 기괴한 요구 "속옷 벗고 성기 그림 그려라", 〈한국일보〉, 2019.05.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01249729715?did=DA&dtype=&dtypecode=&prnewsid=줄줄이 불기소 처분... 법망 빠져나가는 '상담실 성범죄', 〈한국일보〉, 2019.05.2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21549727913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상담사가 자신의 권위와 힘을 남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범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상담과 상담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심리상담사의 성적 접촉을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내에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심리상담사가 내담자의 심리적·정신적 의존을 악용하여 성적 접촉을 하였을 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현행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상담 관계에 내포된 힘의 불균형이 현행법상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의 존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성적 접촉을 한 심리상담사가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우리나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행위태양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처벌에 있어 공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성적 접촉을 일으킨 심리상담사가 또다시 새로운 상담기관을 개소하고 심리상담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해 심리상담사가 설령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었더라도, 심리상담기관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 심리상담사가 새로운 기관을 개설하는 데 별도의 제한점이 없다. 실제로 2016년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심리상담소를 개소하여 여성 내담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가해자는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도 2019년까지 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심리상담실 내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의 공백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과 성범죄자와 같이 자격미달자가 심리상담소를 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심리상담사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제한되어있으며 유사한 피해 사례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심리상담사와 내담자와의 성적 접촉은 심리적 취약상태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안고 심리상담을 찾은 내담자에게 더욱 끔찍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며, 이러한 피해의 여파는 장기간 지속된다. 더군다나 내담자들은 자신이 심리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상담사의 행동에 대해 신고하거나 고발하기를 꺼려한다(Galletly, 1993). 또한 상담사를 고발한다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상담내용이 공개될 것에 대한 두려움, 법적 절차에서 경험하게 될 스트레스,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 등으로 인해 자신과 상담사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능동적 대처하는 것을 어려워 할 수 있다(Galletly, 1993).

이처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제재가 부재함으로 인해 심리상담사가 자신의 권위와 힘을 악용하고 내담자를 착취하더라도, 상담서비스와 상담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내담자를 보호 및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2) 심리상담사법의 부재로 인한 국민의 혼란 가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심리상담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상담관련 자격증은 민간에서 산발적으로 수여하고 있다. 현행 심리상담 관련 자격제도

속에서는 유사한 명칭의 자격을 취득한 상담사 사이에서도 교육과 경험의 차이가 크고 내담자에게 제공되는 상담의 양상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 서비스의 잠재적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곽미용, 이영순, 2010). 수많은 심리상담 민간자격 중에는 석·박사 학위와 수천 시간의 상담 경력이 있어야 인정받는 자격증도 있으나, 백화점 문화센터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10시간 남짓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심리상담은 복잡하고 심오한 인간의 마음을 다루며, 내담자의 인간적 성장을 돕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을 통한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및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수많은 심리상담 자격증 중 어떤 자격증이 그러한 전문지식, 기술, 경험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심리적 좌절과 상처 속에서 마음의 평형이 깨진 취약한 상태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찾는 내담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로카드 상담, 최면 및 전생치료 상담, 푸드테라피 등 기존 심리상담 분야로부터 낯선 새로운 상담접근이 지속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며 심리상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상담을 찾아야 하는지 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리상담소의 개소와 운영이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전국에 몇 개소인지,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는 몇 명인지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터넷 통신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우리사회의 정보전달 속도는 매우 빨라졌으며 그 경로 또한 다양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허위 정보가 다양하게 유통될 수 있는 역기능을 동반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는 건강과 관련된 허위뉴스나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마음건강과 관련된 정보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채 유포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심리상담을 받아보고자 시도하는 경우, 가장 흔하게 시도할 수 있는 신청 경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일 것이다. '심리상담센터'를 검색했을 때 출력되는 수백만 건의 검색결과 중 어떤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떤 기관이 자격 미달의 기관인지, 어떤 자료가 허위정보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아보길 원하는 개인에게 달려있다. 무분별하게 발급된 심리상담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설립된 상담소들 사이에서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이다. 정신치료, 심리치료, 심리상담, 전문상담 등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 또한 그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심리상담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서비스 제공 기준의 통일이 요구된다.

(3) 심리상담사법의 부재로 인한 국민 마음건강 관리의 부익부 빈익빈

심리상담이 제도권 내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또다른 문제는 마음건강 관리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는 국민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위를 보유한 심리상담사에게 심리상담을 받으면 50분에 약 5-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심리상담은 단회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기적인 심리상담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심리상담은 제도권 내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유층이 주로 심리상담을 이용하게 된다. 실제로 전국의 사설 상담기관 중 절반이 넘는 곳이 서울에 몰려 있으며, 서울의 25개 구 중 강남구와 서초구에 가장 많은 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문화일보, 2018.04.04.)[2].

심리상담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접근장벽의 해소를 위해서는 바우처와 건강보험 제도의 영역에 심리상담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심리상담 서비스가 바우처와 건강보험 제도에 포함될 수 있다면 기꺼이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료 상승을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Lee, & Ahn, 2018). 구체적으로는 월 7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의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가 건강보험에 포함된다면 최대 2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국민들 또한 심리상담에 대한 바우처와 건강보험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심리상담 또한 의료행위로 인정받아 바우처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 국가들에서 심리상담이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심리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명확한 법률적, 제도적 규정이 뒷받침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의 규정을 살펴보면, 정신과의사, 임상심리학자, 상담심리학자등이 정신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행에 관한 국가나 주 자격관리위원회의 면허증을 소지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나 주 정부 차원의 자격제도를 통해서 보험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제공의 선행요건은 심리상담의 국가자격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심리상담사 관리 구멍… 자격증 4000종에 문화센터에서도 발급“, 〈문화일보〉, 2018.04.0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0401071039310001

2.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에 대한 일반 대중 및 전문가 인식조사

최근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협하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심리상담사 집단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심리상담사들의 질적 수준 하락, 국민들의 불신 증폭, 심리상담사들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는데(예, 김영근 등, 2012; 김정진, 2016; 이상민, 2020; 최정아, 2018), 이는 현장에서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심리상담사들에게도 가장 절실한 요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심리상담사 9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10년 동안 학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하라는 문항에서 학회원들은 법제화 및 상담 관련법 제정을 가장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서영석, 안수정, 안하얀, 이소연, 2019).

한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으로서 심리상담사법 유무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조사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리상담의 전문성은 곧 국민들의 복지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제공받는 당사자들이 심리상담사법이 부재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확인하고,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마음건강 분야에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심리상담사법과 관련된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근 학교폭력, 빈곤, 차별, 만성질환 등 국민들에게 노출된 사회적 문제들은 날로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나의 직업군이 이러한 난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음건강 분야 내 상호협력적인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Mellin, Hunt, & Nichols, 2011). 따라서 마음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은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마음건강 전문가들 중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일반 대중들과 마음건강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대한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과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기본 정보, 설문 영역 및 내용,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응답자 기본 정보

본 설문에 참여자 응답자 1,609명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다음의 〈표 2-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여성은 1,131명(70.29%), 남성은 467명(29.02%)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28명(26.60%)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86명(23.99%), 40대가 368명(22.87%), 50대가 325명(20.20%), 60대가 82명(5.10%)이었으며, 나머지 17명(0.19%)은 70세 이상이었다. 참여자 중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는 652명(40.52%)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학위 소지자는 499명(31.01%), 박사학위 소지자는 186명(11.56%),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답자는 146명(9.07%)이었으며, 대학 재학 중인 응답자는 109명(6.77%)이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경상도와 서울,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각각 450명(27.97%), 432명(26.85%), 381명(23.68%)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 174명(10.81%), 전라도 122명(7.58%), 강원도 28명(1.74%), 제주도 17명(1.06%) 순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직업군을 살펴보면, 대학생/대학원생이 334명(20.75%)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305명(18.96%), 교직 200명(12.43%), 서비스직 178명(11.06%), 경영/관리직 64명(3.98%) 순이었으며, 그 외 직업군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 2-1〉 설문조사 응답자 정보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1131	70.29	직업군	교직		200	12.43
	남성	467	29.02		경영/관리직		64	3.98
	언급 안함	11	0.68		사무직		305	18.96
연령	20대	428	26.60		자영업		97	6.03
	30대	386	23.99		판매직		22	1.37
	40대	368	22.87		서비스직		178	11.06
	50대	325	20.20		생산/노무직		29	1.80
	60대	82	5.10		기능직		29	1.80
	70세 이상	17	1.06		의료직		43	2.67
	언급 안함	3	0.19		농업/임업/수산업		9	0.56
거주지역	서울	432	26.85		임대업		7	0.44
	경기	381	23.58		대학생/대학원생		334	20.76
	강원	28	1.74		기타	심리상담사	53	3.29
	충청	174	10.81			사회복지사	6	0.37
	경상	450	27.97			전문직	15	0.93
	전라	122	7.58			종교인	7	0.44
	제주	17	1.06			연구직	6	0.37
	기타	5	0.31			프리랜서	14	0.87
학력	고등학교 졸업	146	9.07			전업주부	55	3.42
	대학 재학	109	6.77			예술	4	0.25
	대학 졸업	652	40.52			공직	2	0.12
	석사 졸업	499	31.01			군인	2	0.12
	박사 졸업	186	11.56			기타	128	19.27
	기타	17	1.06	총 응답자 수			1609	100

2) 설문 영역 및 내용

본 설문에 응답하기 전 참여자들은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직업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설문 문항 구성을 위해 심리상담 분야에서 자격제도 및 법 제정을 위해 실시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였다(예,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자격제도 관련 요구조사). 또한 다른 분야의 자격제도(예, 사회복지 자격제도, 갈등조정전문가 인증제도 등)와 관련해 실시한 요구조사 문항들을 참고하여 설문의 형식과 내용을 구상하였다. 각 분야의 특성이나 주요 활동에 따라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달랐지만, 대부분의 설문 내용은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관련 자격제도의 필요성, 면허 형태의 법령 마련에 대한 찬반 의견,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설문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과 방향성에 대한 인식, 심리상담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대상의 설문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문항을 제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다년간 심리상담 관련법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심리상담 전공 교수로부터 설문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설문지의 형식과 내용을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지는 4영역 14문항(객관식 12문항, 주관식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설문의 영역 및 내용은 〈표 2-2〉에 제시하였다.

〈표 2-2〉 설문의 영역 및 내용

영역	설문 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직업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이용한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이유
	'심리상담'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특성과 이미지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꺼리는 이유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과 방향성에 대한 인식	심리상담사는 정신건강관련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쌓아야 하는지 여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난무하여 혼란스러운 정도
	심리상담센터 운영 자격
	심리상담사의 자격, 상담비용 등에 대해 법으로 규정한 일정한 기준 및 체계의 필요성
	전문능력이 부족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심리상담사제재의 필요성
심리상담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	심리상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3) 자료 수집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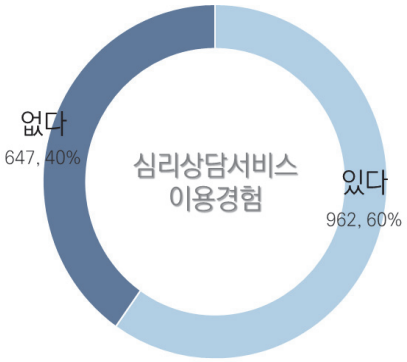
설문조사는 인구센서스에 따라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온라인 리서치 업체인 데이터스프링스코리아를 통해 진행되었다. 더불어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내담자들을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을 통해 추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제작하였고(https://forms.gle/n17wmFX2yTH7NstA6),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링크하여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링크를 누르면 설문의 목적과 응답 내용의 비밀보장 등을 기술한 진술문을 읽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면 설문이 시작되었다. 설문을 완성하는데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응답을 완료한 인원은 모두 1,611명이었으나, 주관식 문항에 마침표만 찍는 등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60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객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 문항별 응답자의 빈도(f), 백분율(%), 평균(M), 표준편차(SD)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직업 등 집단 특성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여 t 검정, F 검정, χ^2 등을 실시하였다.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자료를 작은 의미 단위로 분석하여 핵심 개념을 도출하였고, 유사한 내용을 묶어 범주화하였으며, 각 범주의 빈도를 계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심리상담 전공 교수인 연구자 1인이 수시로 감수하였다.

4) 결과

4-1)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609명 중 962명(60%)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47명(40%)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2-1〉에 제시하였다.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은 성별(χ^2 = 57.263, p<.001), 연령(χ^2 = 17.849, p<.01), 학력(χ^2 = 255.982, p<.001), 거주지역(χ^2 = 21.532, p<.01), 직업군(χ^2 = 150.76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

4-1-1)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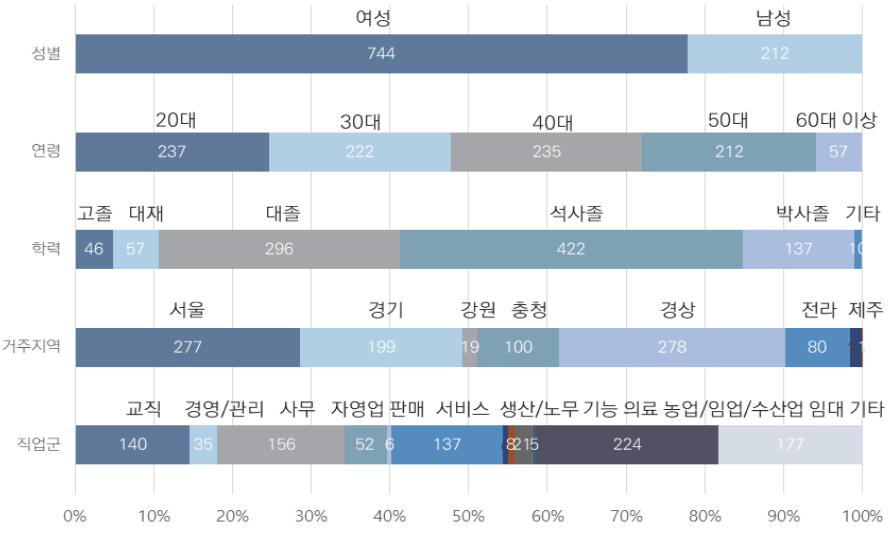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의 분포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962명 중에서 여성은 744명(77.34%), 남성은 212명(22.04%)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36명(24.53%), 30대가 222명(23.08%), 40대가 235명(24.43%), 50대가 212명(22.04%)으로, 60세 이상 참여자인 57명(5.93%)을 제외하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을 학력별로 비교한 결과, 석사학위 소지자가 422명(43.87%)으로 가장 많았고, 학사학위 소지자가 296명(30.77%), 박사학위 소지자가 137명(14.24%), 대학 재학 중인 응답자가 57명(5.9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은 서울과 경상도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각각 277명(28.79%)과 278명(28.90%)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199명(20.69%), 충청도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100명(10.40%), 전라도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80명(8.32%)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직업에 따른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이 224명(23.28%)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156명(16.22%), 교직 140명(14.55%), 서비스직 137명(14.24%), 경영/관리직 35명(3.64%), 의료인 21명(2.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를 〈그림 2-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6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0%였다. 현대인들에게 심리상담은 더이상 낯설지 않은 것으로 존재하며, 그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가 높음을 보여준다.

둘째, 여성 응답자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은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적, 환경적 변인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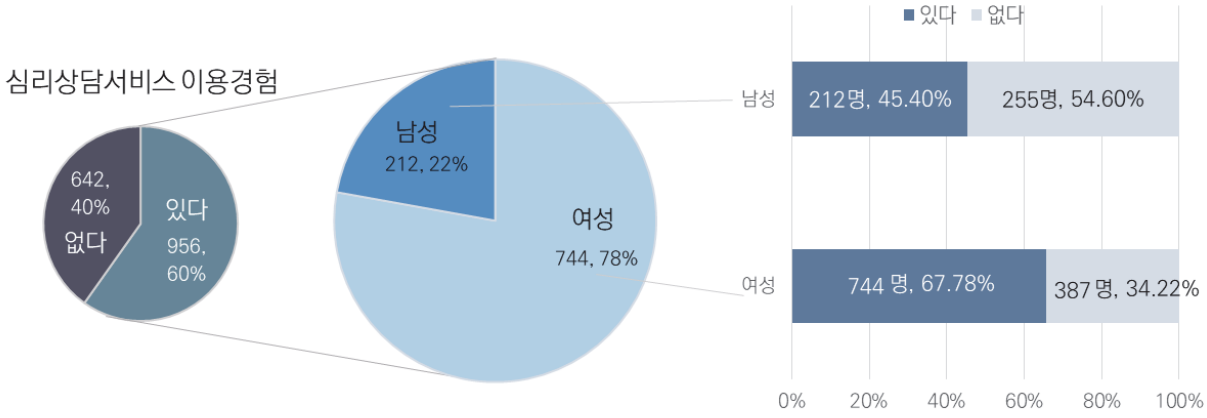
[그림 2-2]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의 분포

집단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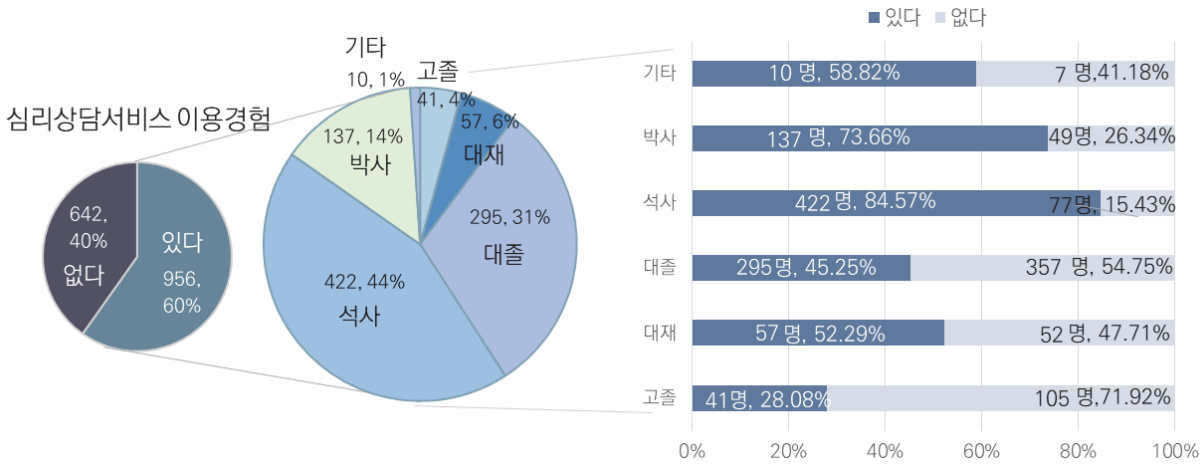
〈그림 2-3〉부터 〈그림 2-7〉에서는 집단별 응답자 수에 따른 이용률을 제시하였다.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자 수와 마찬가지로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은 남성(45.40%)보다 여성(67.78%)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50대 응답자들의 이용률(63.86%, 65.23%)이 가장 높았고,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가장 적었던 60세 이상(n = 57)의 응답자들의 경우, 이용률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5.56%). 학력별로 살펴보면, 석사학위 소지자와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서비스 이용률이 각각 84.57%와 73.66%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답자들의 이용률은 28.08%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82.35%로 매우 높았다.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60%대의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이용률은 52.23%로 가장 낮았다. 직업군에서는 사회복지(100%), 서비스직(76.97%), 임대업(71.43%)과 종교인(71.43%), 교직(67.00%), 전문직(66.67%)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대로 생산/노무직(20.69%), 판매직(27.27%), 기능직(27.59%),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11.11%)의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6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농업/임업/수산업, 기능직, 생산/노무직, 판매직, 무직인 응답자들은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사회계층을 일부 반영하는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는 심리상담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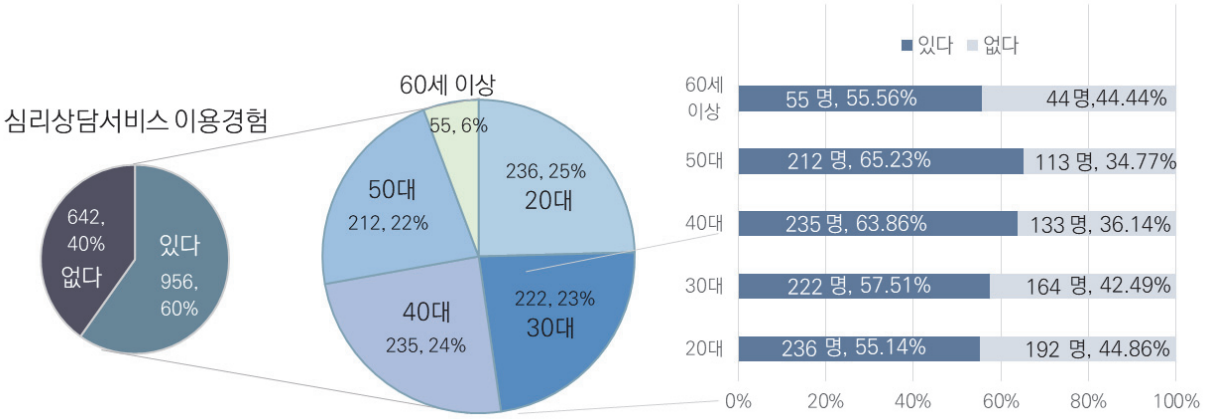
둘째,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집단(70-80%)과 이용률이 낮은 집단(1-20%) 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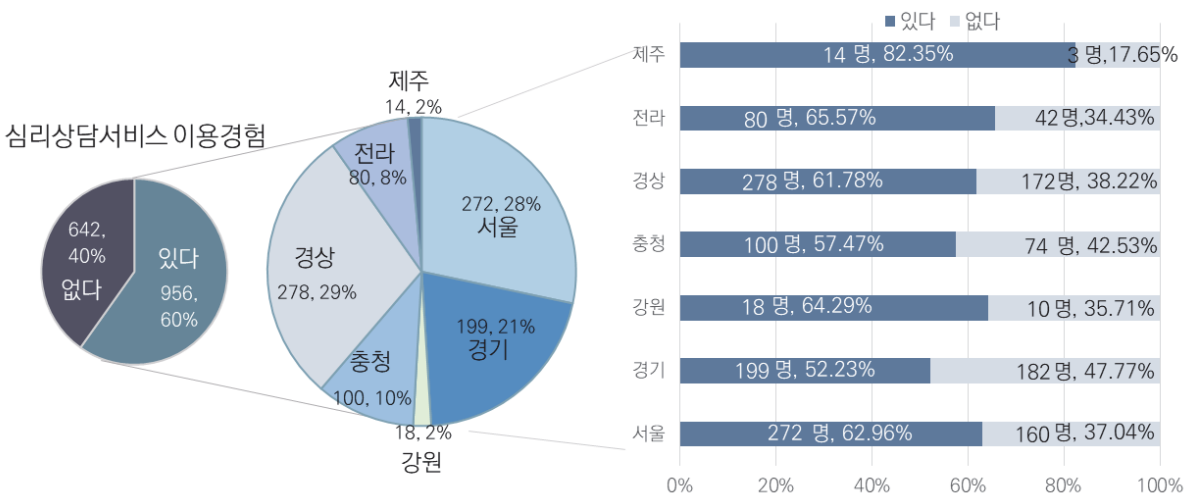
[그림 2-3] 성별에 따른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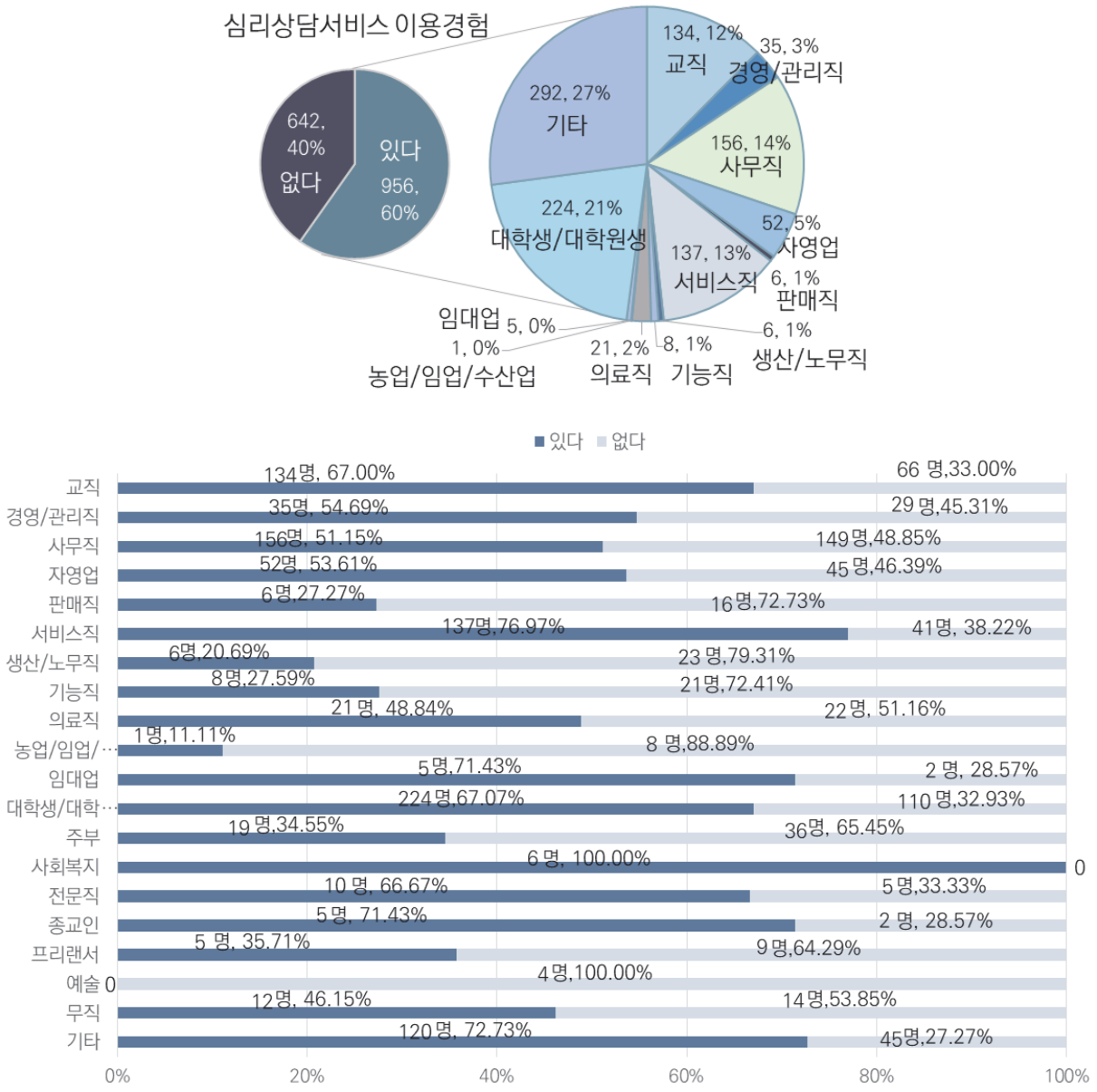
[그림 2-4] 학력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



[그림 2-5] 연령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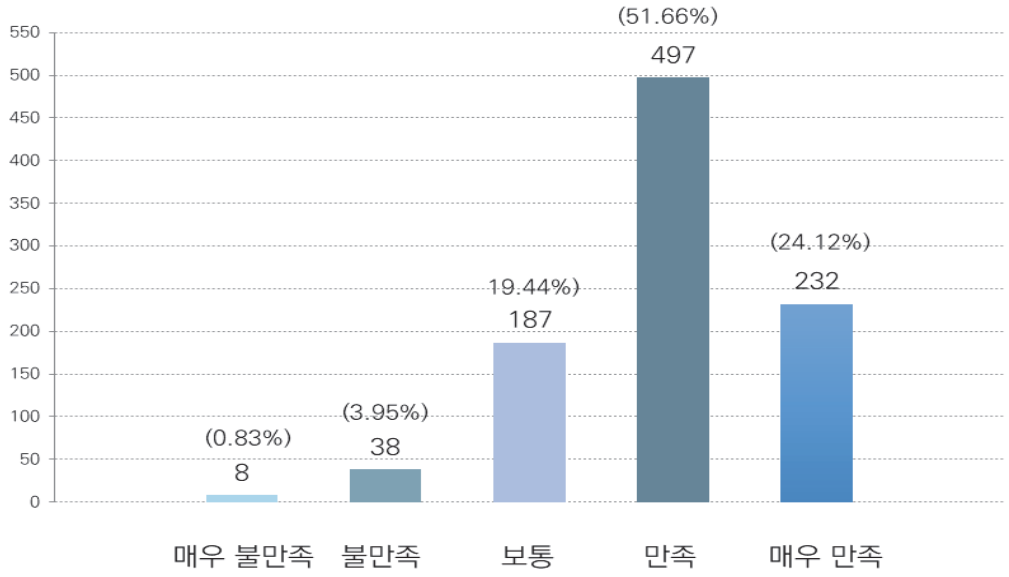
[그림 2-6] 거주지역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



[그림 2-7] 직업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

이용한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지금까지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한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926명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5점(SD = 0.82)으로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심리상담서비스가 국민 다수의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에 기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에 대한 빈도표를 〈그림 2-8〉에 제시하였다.



[그림 2-8]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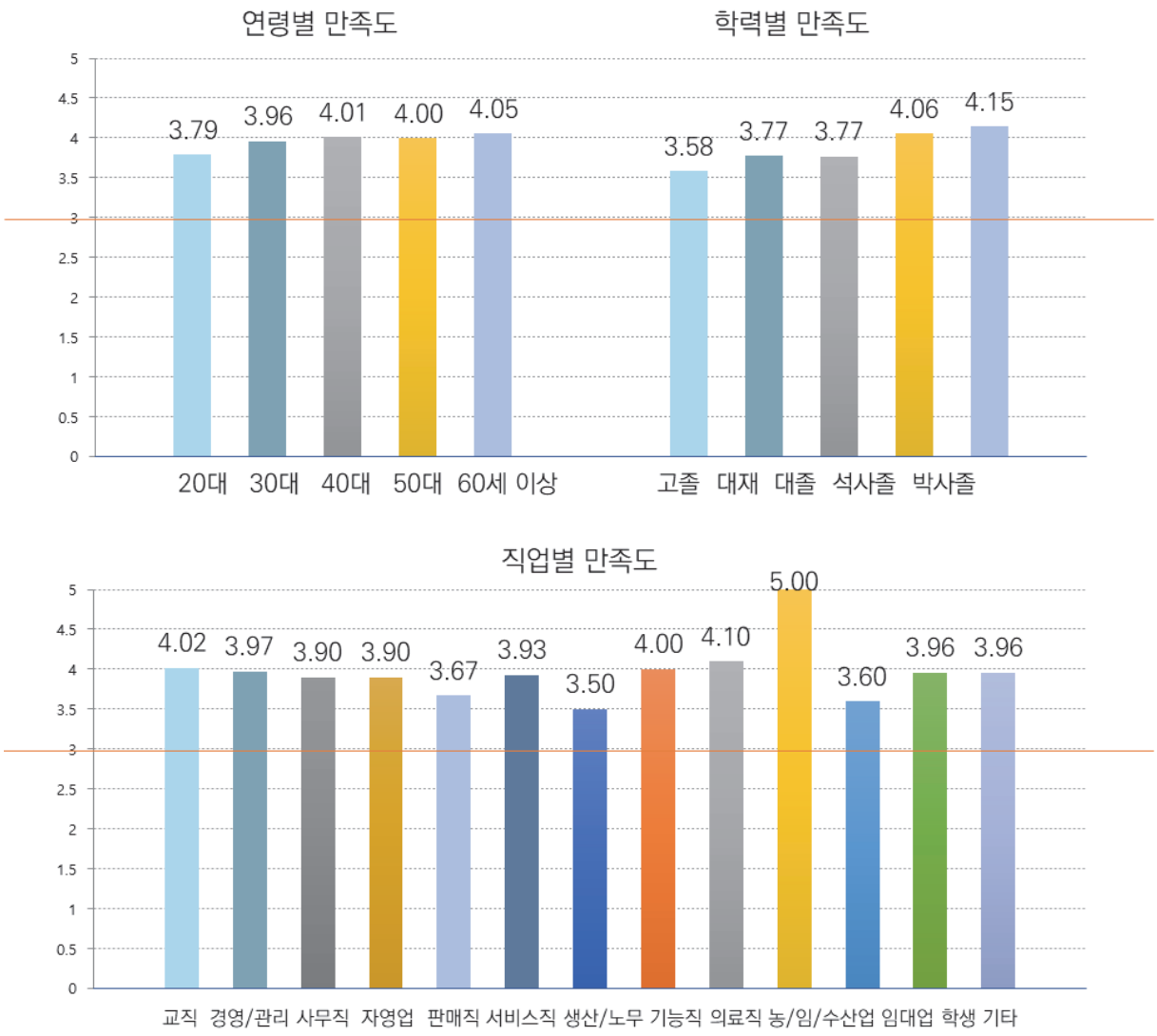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집단별 만족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F = 2.178*)과 학력(F = 8.400***), 그리고 직업군(F = 1.73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그림 2-9〉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하거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사후분석 결과, 20대 응답자와 40대 응답자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답자와 석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와 석사학위/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재학 중인 응답자와 박사학위 소지자 간 만족도 등 대부분의 학력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별 만족도를 살펴봤을 때, 심리상담사 집단과 사례수가 1명이었던 농/임/수산업 종사자의 만족도를 제외하면 의료직(M = 4.10, SD = 0.70), 교직(M = 4.06, SD = 0.89), 기능직(M = 4.00, SD = 0.76), 경영/관리직(M = 3.97, SD = 0.75), 서비스직(M = 3.93, SD = 0.82)의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반대로 생산/노무직의 만족도(M = 3.50, SD = 0.84)는 가장 낮았다.

사례수가 최소 5인 이상인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별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n = 6, M = 4.33, SD = 0.52), 박사를 졸업한 참여자 집단(n = 137, M = 4.15, SD = 0.69)과 의료직에 종사하는 참여자 집단(n = 21, M = 4.10, SD = 0.70)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반면, 무직인 참여자 집단의 만족도(n = 12, M = 3.33, SD = 0.71)가 가장 낮았다. 그 뒤를 이어 생산/노무직에 종사하는 참여자 집단의 만족도(n = 6, M = 3.50, SD = 0.84)와 고졸 응답자 집단의 만족도(n = 41, M = 3.59, SD = 0.8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만족도 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집단이 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예, 무직, 생산/노무직 종사자, 고졸 응답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심리

정서적으로도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민간 또는 마음건강전문가 개인이 해결하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으며, 이제는 국가적 의제이자 의무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2-9]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집단별 만족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불만족 요인

이전에 경험한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문항의 결과를 〈표 2-3〉에 제시하였다.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심리상담사의 전문적 역량'(163명)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상담사의 전문성, 공감과 경청, 따뜻하고 진솔성 있는 태도 등 심리상담사의 역량이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응답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130명), '치유 경험'(115명), '실질적인 문제 해결'(93명), '심리적 어려움의 완화'(78명) 등의 순으로 만족요인을 꼽았다.

한편,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에 불만족하는 이유 역시 '심리상담사의 전문적 역량 부족'(109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51명), '비용'(19명) 및 '시간'(17명)에 대한 부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어려움' 등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합하면, 심리상담서비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926명 중 272명(29.37%)의 참여자들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할 때 '심리상담사의 전문적 역량'이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144명(15.55%)의 응답자들은 '실질적인 문제해결 여부'(144명, 15.55%)를 주요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이해'(130명), '이야기를 털어놓고 치유되는 경험'(123명), '심리적 어려움의 완화'(78명) 등이 만족도 요인으로 꼽혔다. 그 외에도 '비용'과 '시간', '비밀보장' 등에 대한 부담이나 '상담의 진행 속도', '진행 방향' 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만나 치유되었던 의미 있는 경험을 보고하였지만, 동시에 심리상담사의 비전문성 또한 적지 않게 보고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문제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않은 채 심리상담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일부로부터 발생하여 내담자들을 깊게 상처입히고, 심리상담 분야 전체를 가격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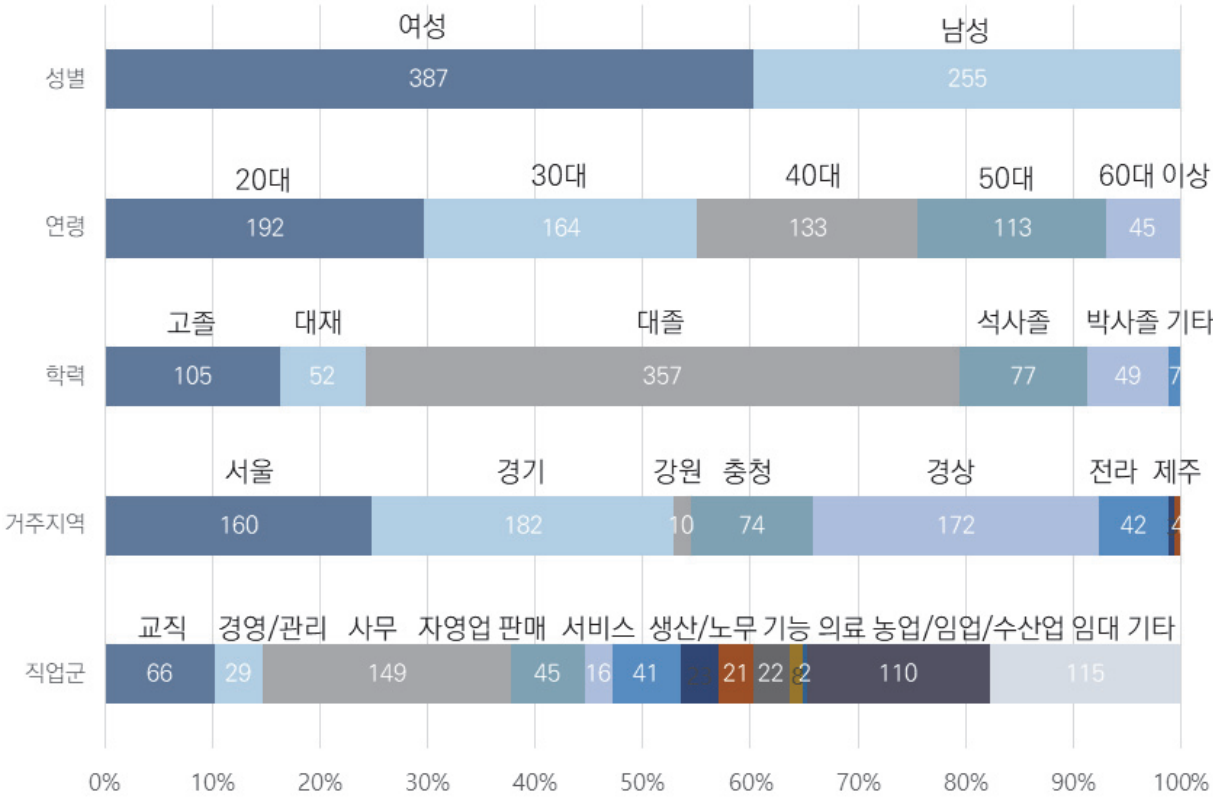
〈표 2-3〉 심리상담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만족하는 이유	빈도	불만족하는 이유	빈도
심리상담사의 전문적 역량	163	**심리상담사의 전문적 역량 부족**	109
- 심리상담사의 전문성	(86)	- 심리상담사의 비전문성	(64)
- 심리상담사의 공감과 경청	(50)	- 심리상담사에게 공감받지 못함	(25)
- 심리상담사의 태도: 진솔성, 따뜻한 마음, 친절, 성의 있는 답변 등	(27)	- 심리상담사의 자질 및 태도: 무성의, 형식적, 진솔성 없음 등	(16)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됨	130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51
정서적으로 치유되는 느낌을 경험함	115	- 실제적 도움이나 해결이 안됨	(42)
- 이야기를 충분히 털어놓음	(48)	-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9)
- 마음이 편안해짐	(36)	**비용에 대한 부담**	19
- 위로를 받음	(31)	**시간에 대한 부담**	17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됨	93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기 어려움**	8
우울/스트레스 등 심리문제 완화	78	**비밀보장에 대한 부담과 찜찜함**	4
문제 탐색하고 통찰하는 능력을 키움	60	- 심리상담사가 중간에 바뀜	
스스로 변화/성장했다고 느낌	57	- 원하는 것과 다르게 진행됨	

4-1-2)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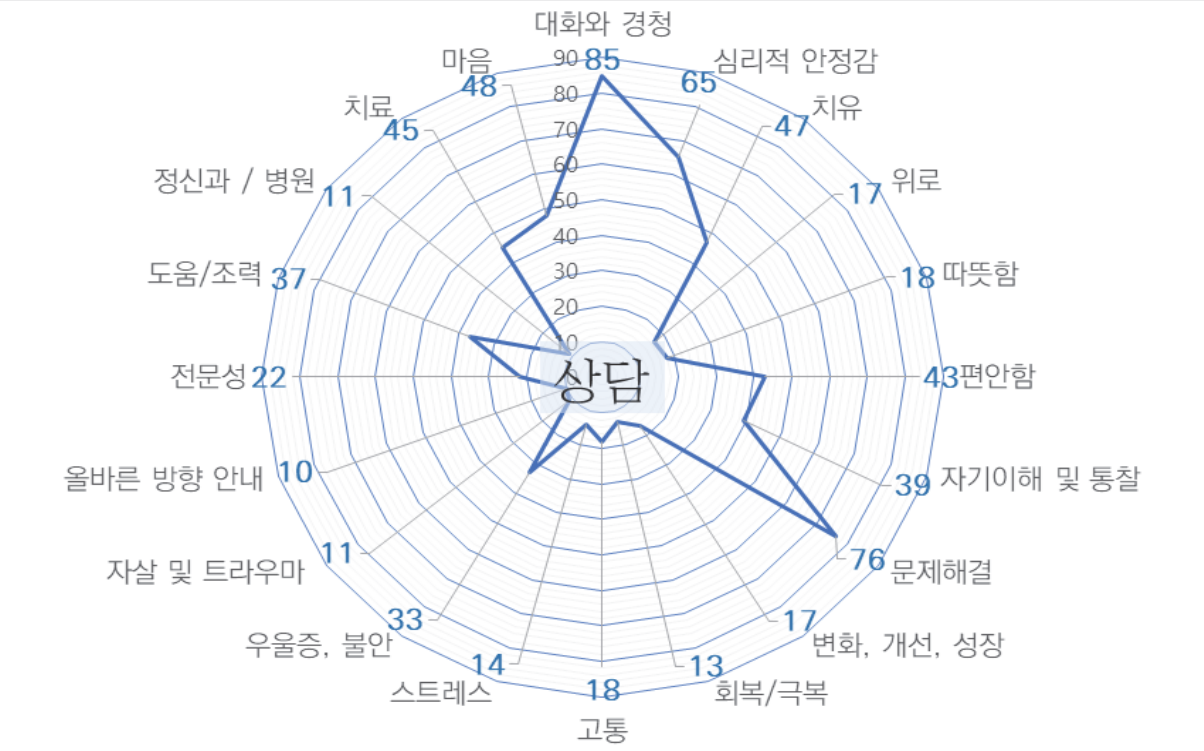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647명 중에서 여성은 387명(59.81%), 남성은 255명(39.41%)이었으며, 20대가 192명(29.68%), 30대가 164명(25.35%), 40대가 133명(20.56%), 50대가 113명(17.47%), 60대 이상은 45명(6.96%)이었다.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의 학력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가 357명(55.18%)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가장 적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답자가 105명(16.23%), 석사학위 소지자가 77명(11.90%), 대학에 재학 중인 응답자가 52명(8.04%), 박사학위 소지자가 49명(7.57%) 순으로 이용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의 거주지역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경상도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각각 160명(24.73%)과 182명(28.13%), 172명(26.58%)으로 가장 이용 경험이 적었고, 충청도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74명(11.44%), 전라도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42명(6.49%) 순으로 이용 경험이 적었다. 마지막으로 직업에 따른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은 149명(23.03%)의 사무직이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대학생/대학원생 110명(17.00%), 교직 66명(10.20%) 순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그림 2-10〉에 제시하였다.



[그림 2-10]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의 분포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응답자들로 하여금 '심리상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떠오르는 특성이나 이미지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응답자들의 반응에서 의미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특성들을 통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그림 2-11〉과 같다.



[그림 2-11] '심리상담'하면 떠오르는 특성이나 이미지

주. *N* = 647 (빈도가 10이상인 특성에 한해 그림으로 제시함)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 '심리상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첫째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대화), 그것을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경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화와 경청 중에서도 응답자들은 특히 '진지하고' '깊이 있게' '경청'하는 심리상담사의 모습을 가장 많이 떠올렸으며(46명),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18명)과 그로 인해 '속시원'하고 '해소'되는 듯한 '해방감'(15명)으로 심리상담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응답자들은 '비밀', '공유'와 같은 단어들로 '심리상담'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수의 응답자들은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할 때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상태('심리적 안정감', '치유', '위로', '따뜻함', '편안함' 등)로 심리상담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희망', '행복', '포근함' 등으로 인식되었으며,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잔디밭에 누워있는 이미지', '울분을 부끄러움 없이 표현하고 난 뒤 환하고 밝아진 얼굴' 등을 떠올리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한 후 얻게 되는 실제적 결과('자기이해 및 통찰', '문제해결', '변화, 개선, 성장', '회복, 극복' 등)로써 '심리상담'을 지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제나 고민을 해결하는 것으로 떠올리는 응답자(76명)가 많았고,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조언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넷째,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부정적인 상태('고통',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자살 및 트라우마' 등)를 떠올리는 응답자도 다수 있었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거나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또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심리상담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들은 '슬픔', '불화', '불면증', '틱' 등을 떠올리기도 했다.

다섯째, 심리상담서비스 또는 심리상담사의 역할('올바른 방향 안내', '전문성', '도움, 조력' 등)로 '심리상담'을 인식하는 응답자도 다수 있었다. '내 편이 생기는 것', '편견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것 같은', '붕대를 감아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였다.

여섯째, '심리상담'을 정신병리적 특징('정신의학과, 병원', '정신병', '사이코패스' 등)과 연결하여 떠올리는 응답자도 있었다. '금치산자', '정신이상자', '정신병이 있는', '문제가 있는' 등과 같이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였으며, '정신감정'과 '진단'을 통해 '범죄' 및 '정신병자'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응답도 소수 존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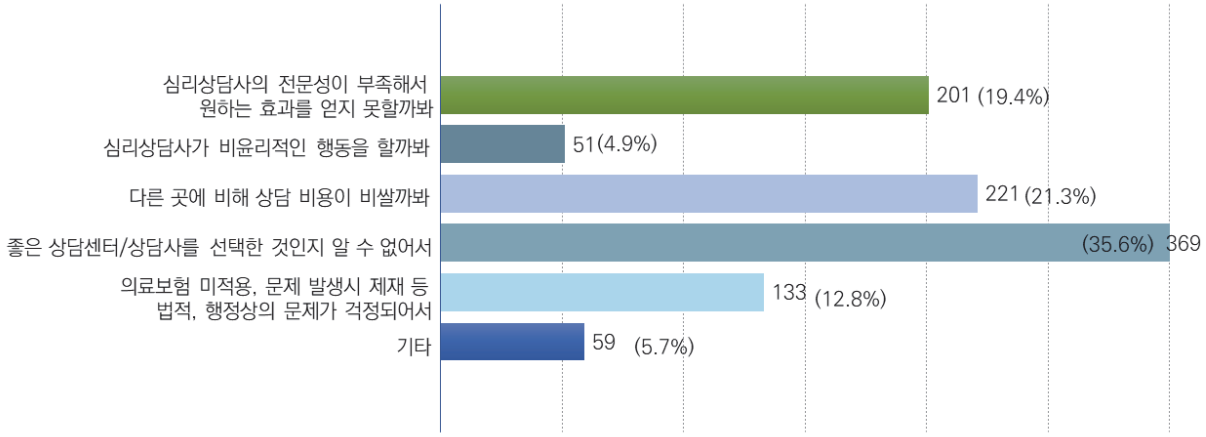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으로는 '진로', '대인관계', '가족 문제' 등과 같은 상담의 주제를 떠올리는 응답자들이 있었고(23명), 불안하고 피로한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한 응답자도 있었다(9명).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도 나도 다 하는 상담사'라거나 '구라', '신빙성 없는', '믿을 수 없는', '모호한', '추궁당하는 듯한' 부정적이고 불신하는 인식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종합하면,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하면 떠오르는 특성이나 이미지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은 심리상담 방식('대화와 경청'), 심리상담시 경험할 것으로 보이는 정서적 측면('편안함', '따뜻함' 등), 결과적 측면('문제해결', '자기이해' 등), 심리상담 이용의 원인('고통', '우울증' 등), 심리상담(사)의 역할('방향 제시', '조력' 등) 등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술한 대로 심리상담사의 전문적 역량과 실제적 문제해결 여부 등이 만족도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었는데, 이는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본 문항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대다수는 결국 심리상담사의 전문적 역량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심리상담사가 어떠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문제해결', '자기 이해' 등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통해 '대화'를 이끌어 내고 내담자를 '따뜻한' 정서에 머물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일반 대중들이 심리상담에 대한 이미지를 다르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심리상담'은 '심리상담사의 전문성'과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꺼려지는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를 〈그림 2-12〉에 제시하였다. 심리상담서비스를 받는데 꺼려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중복 선택하거나 기술하도록 요청한 문항에서 응답자 614명 중 369명(35.6%)이 '좋은 심리상담센터/상담사를 선택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곳에 비해 심리상담 비용이 비쌀까봐'(221명, 21.3%), '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까봐'(201명, 19.4%), '의료보험 미적용, 문제 발생시 제재 등 법적, 행정상의 문제가 걱정되어서'(133명, 12.8%), '심리상담사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까봐'(51명, 4.9%)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에 '낙인에 대한 두려움'(13명, 1.3%), '비밀보장 및 기록에 대한 걱정'(8명, 0.8%), '필요를 느끼지 못함'(13명, 1.3%), '경제적 부담'(4명, 0.4%), '정보 및 시간의 부족'(4명, 0.4%) 등의 응답이 있었다. 종합하면, 응답자의 60%가 심리상담센터/심리상담사 선택, 심리상담사의 전문성과 비윤리적 행동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본 설문의 결과는 상당히 많은 대중들이 심리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역량과 자질, 기본적인 소양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12]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꺼려지는 이유 (중복선택, *N* = 1037)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꺼려지는 이유를 종합하면, 다수의 응답자들은 심리상담사가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예, 좋은 심리상담센터/심리상담사 선택, 심리상담사의 전문성, 비윤리적 태도 등) 확인할 수 없어 혼란을 경험하거나 선뜻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면허 형태의 법령이 부재함으로 인해 대중들이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준화된 비용체계가 없거나,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할까봐 염려하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 또한 심리상담사법의 부재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심리상담사의 전문적 역량을 보장하는 면허 형태의 법령 및 관련법의 부재는 다수의 응답자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며, 그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이 있어도 심리상담서비스를 받기 꺼려하는 서비스갭(service gap)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심리상담사/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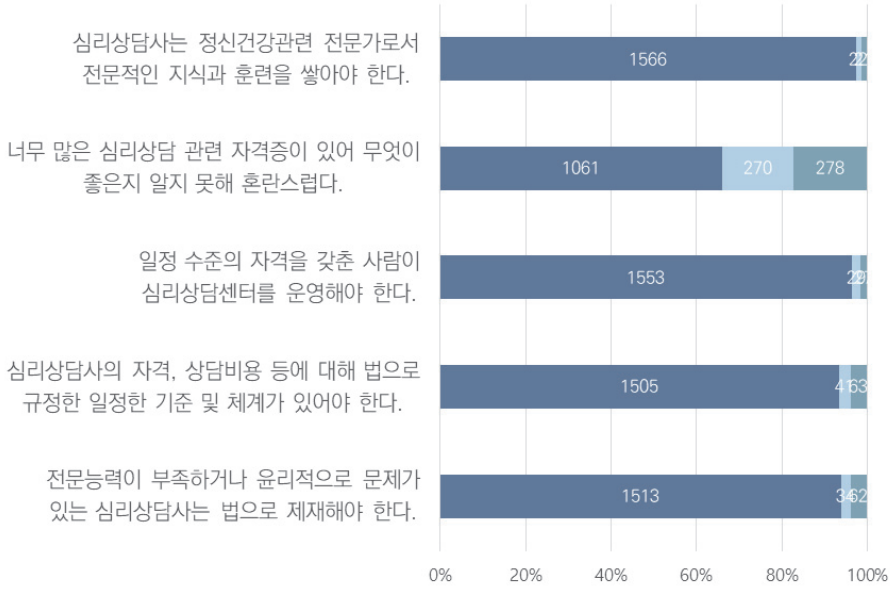
본 설문에서는 심리상담사 및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첫째, '심리상담사는 마음건강 관련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한 결과 참여자 중 1,566명(97.3%)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2명의 응답자(1.4%)는 '아니다', 21명의 응답자(1.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1,061명(65.9%)는 '너무 많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있어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해 혼란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270명의 응답자(16.8%)는 혼란스럽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278명의 참여자(17.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참여자의 1,553명(96.5%)이 그래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9명의 응답자(1.8%)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27명의 응답자(1.7%)는 '잘 모르겠다'고 보고하였다.

넷째, 응답자의 1,505명(93.5%)는 '심리상담사의 자격, 상담비용 등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는 일정한 기준 및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나머지 41명의 응답자(2.5%)와 63명의 응답자(3.9%)들은 각각 '그렇지 않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1,513명(94%)는 '전문능력이 부족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심리상담사는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34명의 응답자(2.1%)는 문제가 있더라도 법으로 제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62명의 응답자(3.9%)는 '잘 모르겠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응답 결과를 〈그림 2-13〉에 제시하였다.



[그림 2-13] 심리상담사/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인식

종합하면, 1,000명이 넘는 응답자들이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지나치게 많아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1,500명이 넘는 응답자들은 심리상담사들이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1,500명이 넘는 응답자들이 표준화된 전문적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 받고, 비윤리적/비전문적 문제를 일으킨 심리상담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체계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심리상담사법 제정을 통한 법적 관리와 체계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사/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인식의 집단별 차이

앞서 기술한 다섯 가지 진술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찬반 의견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χ^2 = 18.865, p<.01; χ^2 = 34.663, p<.001; χ^2 = 19.381, p<.01; χ^2 = 13.637, p<.01; χ^2 = 11.734, p<.05), 모든 진술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다'(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여성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체계의 필요성에 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적을수록, 즉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해 덜 알고 있을수록 심리상담 관련법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는 변인에 따라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 법적 기준 및 제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연령, 학력, 거주지역, 직업 등에 상관없이 심리상담사는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가져야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심리상담 자격을 규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일치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다만, 다섯 가지 진술문 중에서 '너무 많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있어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지 확인하는 문항의 응답은 성별 외에도 연령, 학력, 거주지역, 직업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 = 34.211, p<.001; χ^2 = 129.284, p<.001; χ^2 = 35.056, p<.01; χ^2 = 111.503, p<.001).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난무하여 혼란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참여자 집단이 가장 높았고(69.23%), 반대로 60세 이상의 참여자 집단은 가장 낮았다(57.58%). 학력별 비율을 살펴보면, 석사학위 소지자 집단이 자격증 난무로 인한 혼란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75.75%), 반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혼란스러움을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53.42%).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이 자격증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88.24%), 강원도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은 자격증으로 인해 혼란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57.14%). 마지막으로 직업별 응답율을 살펴보면, 교직에 종사하는 집단은 자격증 난무로 인한 혼란스러움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77.0%), 반대로 임대업에 종사하는 참여자들의 혼란스럽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2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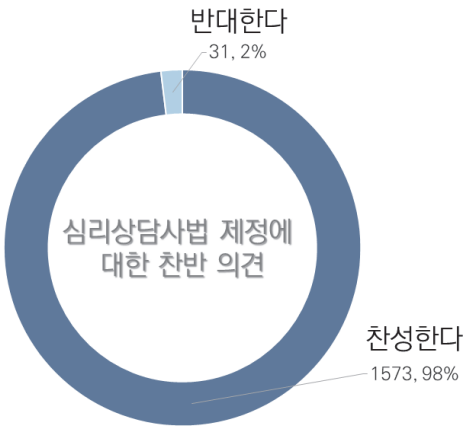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으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집단들 간 차이는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과 관련이 있었다. 즉,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집단(예, 50대, 석사학위 소지자, 제주 거주자, 교직 종사자)이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집단(예, 60세 이상, 고졸, 강원도 거주자)에 비해 자격증으로 인한 혼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여유있는 집단이 심리상담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러한 집단이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에 대해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몰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자격증, 역량, 법적기준 및 제재 등과 관련되는 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빈번하게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이며, 따라서 그만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석사학위 소지자 집단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98.80%), 고등학교를 졸업한 참여자 집단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93.15%). 학력이 높을수록 심리상담센터 운영자격을 보다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심리상담센터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기대하였다.

종합적으로,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은 집단일수록(예, 50대, 석사학위 소지자, 제주 거주자, 교직 종사자) 난무하는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으로 인해 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 법적 기준 및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깊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

내담자에게 최선의 전문적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상담 전문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상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결과, 참여자 중 1,578명(98.1%)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31명(1.9%)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를 〈그림 2-14〉에 제시하였다.



[그림 2-14]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성별(χ^2 = 16.539, p<.001)과 학력(χ^2 = 11.534,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467명 중 18명이 반대)에 비해 여성(1131명 중 12명이 반대)이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더 많은 비율로 찬성하였으며, 석사학위 소지자(496명, 99.6%)와 박사학위 소지자(183명, 98.37%)의 찬성율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변인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집단이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대해 대체로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상담에 대한 경험, 지식, 관심 등이 더 많을수록 심리상담사법 부재의 문제를 경험하고,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반대한 31명은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거나(예, 대학생) 자격증의 난무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거나 면허 형태의 법령이 마련되었을 때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답자들의 경우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대해 반대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2) 마음건강 분야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본 연구에서는 마음건강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사법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0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참여자의 기본 정보, 면접 내용,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및 모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 관련 국내법 조문 중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여섯 개의 직업군(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직업상담사)에 종사하는 마음건강 전문가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상담의 전문성과 역할, 범위와 자격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담긴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해당 직업군의 자격증을 2급 이상 보유하고,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전문가들로 참여자를 한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의 지인과 참여자들의 추천을 받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Gall, Gall, & Bong, 2003)을 활용하였다. 소개를 받은 경우, 연구자들은 유선으로 연락하여 보유 자격증, 심리상담 관련 경력,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여부 및 협업 경험 등 참여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후 면접에 참여한 마음건강 전문가들로부터 다른 참여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12명(여성 8명, 남성 4명)의 마음건강 전문가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중 10명은 국가공인 자격증(직업상담사 1급 1명, 2급 1명, 사회복지사 1급 2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명, 청소년상담사 1급 1명, 2급 1명, 전문상담교사 1급 2명)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2명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증과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39.67세(범위 = 29–57세)였으며, 마음건강 분야에서의 평균 경력은 11.23년(범위 = 5년 6개월–22년)이었다. 참여자들 중 3명은 학사학위, 5명은 석사학위, 2명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2명은 현재 박사 재학 중이었다.

12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정부/시 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상담센터, 대학기관, Wee센터, 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근무 지역은 서울 8명, 경기도 4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9명은 정규직, 2명은 무기계약직, 1명은 단기계약직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2-4〉에 제시하였다.

〈표 2-4〉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번호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경력	근무기관	근무지역	보유 자격증
1	여성	40대	석사졸	18년 1개월	정부위탁기관	경기	직업상담사 2급
2	여성	50대	석사졸	18년	정부위탁기관	서울	직업상담사 1급
3	남성	40대	학사졸	8년	정부위탁기관	경기	사회복지사 1급
4	여성	40대	석사졸	8년	청소년기관	경기	청소년상담사 1급, 심리상담사 2급
5	여성	40대	박사재학	13년	대학, 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6	여성	30대	학사졸	7년	시 위탁기관	서울	사회복지사 1급
7	여성	30대	학사졸	7년	Wee센터	서울	전문상담교사 1급
8	남성	30대	박사재학	5년 6개월	청소년기관	서울	청소년상담사 2급, 심리상담사 2급
9	여성	40대	박사졸	14년	대학기관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10	남성	40대	박사졸	22년	대학, 병원	경기	정신과전문의 면허
11	여성	20대	석사졸	6년	Wee센터	서울	전문상담교사 1급, 청소년상담사 3급
12	남성	30대	석사졸	8년	병원	서울	정신과전문의 면허

2) 질문지

개인정보 질문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은 성별, 연령, 학력, 보유 자격증, 실무 경력, 현재 소속된 기관 및 직급, 근무 지역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면접 질문지

마음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가운데 심리상담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겪었던 경험과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가졌던 인식 등에 대해 탐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면접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우선, 심리상담사법 제정과 관련한 선행연구(권수영, 이신형, 황진태, 손재구, 2016; 김영근 등, 2012; 김인규, 2018; 명대정, 2000; 최정아, 2018)들과 유관 분야의 자격제도

관련 국가기관 보고서(예, 장애인재활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등)를 바탕으로 심리상담사 관련법 제정에서의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를 반영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심리상담 법제화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심리상담 전공 교수 2인에게 질문의 내용 및 구성이 적절한지, 주요한 내용 중 빠진 사항은 없는지 등에 관한 피드백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또한 실제 심층면접을 진행하기에 앞서 마음건강분야 현장에서 심리상담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상심리사 1인과 직업상담사 1인에게 면접 질문지를 보여주고 질문 내용의 적절성, 질문에 대한 이해도, 전체적인 순서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한 후 이를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 질문지 문항은 4영역,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영역과 내용은 〈표 2-5〉에 제시하였다.

〈표 2-5〉 인터뷰 질문지 내용

영역		인터뷰 질문 내용
1영역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의	• 선생님께서는 '심리상담'이 무엇이며, 심리상담사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영역	심리상담 관련법 부재로 인한 경험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리상담은 국가가 규율하는 면허(license) 형태가 아닌 자격(certification)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자격이 취소되어도 해당 상담사의 상담행위를 금지할 수 없고, 또 다른 민간 자격을 취득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면허 형태의 심리상담 법령이 없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불편함이나 곤란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3영역	심리상담사법(가칭) 제정에 대한 인식	• 심리상담과 심리상담사를 위한 면허 형태의 '심리상담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 심리상담사들에게는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 면허 형태의 심리상담 모법이 제정되면, 법안에 제시된 일정 수준을 통과한 마음건강 관련 종사자들은 심리상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마음건강 관련 전문가들에게는 어떤 차원에서 이득이 있을까요? – 일반 대중에게는 어떤 점이 유익할까요? • 심리상담사법이 제정될 경우 우려할 만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4영역	심리상담사법(가칭)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	• 심리상담사를 비롯한 마음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상생하고 마음건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사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포함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3) 자료수집 및 분석

면접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를 돕고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참여자들에게 면접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심층면접은 참여자들과 협의하여 참여자가 근무하는 상담실이나 연구실, 근무지역 인근의 카페 등에서 진행하였으며,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진행자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질문지에 기재한 사항을 확인한 후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구두로 다시 한번 설명하였다.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이후 면접 진행자가 전사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였으며,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는 기호 또는 숫자로 표기하였다. 또한,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은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보관하였다.

면접을 통해 전사된 12개의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면접질문지를 바탕으로 초기 영역목록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축어록을 검토하였고, 사례들을 유사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최종 영역(domain)을 생성하였다. 둘째,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의 축어록을 작은 의미단위로 분석하여 핵심적인 개념(core idea)을 추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추론을 최대한 배제하고 참여자의 응답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핵심 개념에 반영된 공통적인 주제를 설명하는 범주(category)를 도출하고, 영역별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세분화하였으며, 핵심 개념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분류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상담전공 교수로부터 수시로 감수를 받았으며, 각 핵심 개념이 정확한 범주에 속하는지, 각 범주는 핵심 개념의 본질을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범주와 핵심개념을 확정하였다.

4) 결과

자료 분석 결과 총 4개 영역(‘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의’, ‘심리상담 관련법 부재로 인한 문제’, ‘심리상담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심리상담법 제정 시 구성요소’), 24개의 상위범주, 47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4-1) 영역 1 :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의

영역 1은 면접 참여자들이 정의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상담사의 역할을 나타낸다. 참여자들은 마음건강 전문가로서 각기 다른 여섯 개의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서비스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해 유사하거나 일치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언급한 심리상담의 정의와 역할을 작은 의미 단위로 분석하여 유사한 내용을 묶어 범주화했을 때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1) 심리상담의 본질적 요소

참여자들에게 심리상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완성된 형태의 정의가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심리상담을 수행해 온 참여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상담의 본질적 요소들이 도출되었다. 심리상담을 특징짓는 본질적 구성요소들을 정리하여 〈표 2-6〉에 제시하였다.

〈표 2-6〉 심리상담의 본질적 요소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심리상담의 본질적 요소	상담사와 내담자의 상호작용	'치료적 관계', '진실된 만남', '함께하는 과정'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	'문제해결', '성장', '회복'
	새로운 경험	'재경험', '새로운 관점', '통찰'
	내담자의 (심리적) 자원 인식	'자신의 힘', '마음의 동력', '회복탄력성'

심리상담사와 내담자의 상호작용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와 내담자 간 상호작용이 심리상담을 정의내리는 핵심적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심리상담이란 전문적인 심리상담사와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한 참여자들의 정의는 심리상담에 대한 Rogers(1942)의 그것과 일치한다. 일부 참여자들은 상담이 전문가의 일방적인 진단과 처방이 아니라 '함께' '만나는' 진실된 과정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 상호작용, 그러니까 결국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열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내담자들은 상담이라고 하면 전문가의 일방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자기를 변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저는 꼭 상담은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시작해요. (심리상담사와 내담자의 상호작용, 참여자 1)

> 심리상담이란 치료적 관계 안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이 개선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심리상담사와 내담자의 상호작용, 참여자 9)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이 내담자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는 과정이며, 변화는 심리상담의 목적이자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핵심적 요소라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담자가 '성장' 또는 '회복'하는 과정이 심리상담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라 설명하였다.

>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담실에 와서 대화든 그림이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심리적인 이해가 깊은 상담사와 함께 하면서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것. 그러니까 저는 내담자가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 참여자 7)

제가 0000사라서 더 이런 생각이 강한지 모르겠는데,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것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저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폭력이 있는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에게 아 힘들었겠다 토닥토닥 하고 끝나면 전문적인 것이 아니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 참여자 6)

새로운 경험

다수의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이 내담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자신이 지닌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거나 '통찰'할 수 있도록 돕고, 그동안 내담자가 하지 못했던 경험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재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담자가 일상에서 쉽게 하지 못했던 경험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내담자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거나 타인과 진실되게 만나는 것이 어려워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상담이라는 건 그렇게 수용받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내담자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상담자에게 자신을 오픈했을 때 그것이 수용받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경험, 참여자 4)

내담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면서 힘을 갖게 되고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게 심리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경험, 참여자 11)

내담자의 (심리적) 자원 인식

내담자의 (심리적) 자원이 심리상담을 특징짓는 본질적 요소 중 또 다른 하나로 보고되었다.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이란 내담자가 스스로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시키며, '마음의 동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심리상담이란) 내담자가 이미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힘을 되찾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항상 내담자가 오면 그 친구가 가진 자원이 무엇인지 제일 열심히 찾아요. 상담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을 꺼내고 그걸 점점 키워나가는 과정이 결국 상담이니까. (내담자의 (심리적) 자원 인식, 참여자 2)

4-1-2) 심리상담사의 역할

참여자들에게 심리상담사의 주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심리상담사의 직무의 종류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참여자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치료적 요인으로써 심리상담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도출되었으며, 이를 〈표 2-7〉에 제시하였다.

〈표 2-7〉 심리상담사의 역할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심리상담사의 역할	지지자	'지지', '공감', '경청', '수용'
	조력자	'도움', '조력'
	제공자	'안전한 환경', '개입', '지혜'
	발견자	'알아차림'
	보호자	'행복추구권 보호'

지지자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들이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지지하는 버팀목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심리적 어려움을 짊어진 채 지쳐있는 내담자가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든든한 지지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공감'하고 '경청'하고 '수용'해주는 등 진솔한 태도로 내담자를 응원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은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많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오잖아요. 일단은 밖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결핍되고 위축되어서 오는 것이라서... 이걸 이겨낼 힘을 키우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흔한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해서... (지지자, 참여자 1)

조력자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들을 내담자를 돕는 조력자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내담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곧 심리상담이자 심리상담사의 주요 역할이라고 보고하였다. 방식이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심리상담사는 결국 내담자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 심리상담사의 주요 역할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고 자신과 타인에게 건강한 선택을 하면서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조력자, 참여자 9)

이론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정신분석이라면 개조한다고 할테고 대상관계라면 재경험이라고 하거나 인간중심 쪽으로는 성장이라고 할거고. 어쨌든 내담자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조력자, 참여자 10)

제공자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들이 내담자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주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물리적,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특정한 개입'을 할 수 있으며 '지혜'나 '재경험', 또는 필요할 경우 '지시적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내담자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어떤 경험을 내놓아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담의 구조화나 세팅을 통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상담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공자, 참여자 4)

발견자

일부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가 내담자의 마음이나 상황, 문제 등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심리상담사가 내담자의 필요와 욕구를 알아채지 못할 경우 상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리상담사의 전문적 역량과 연결된다고 설명하였다.

저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나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런거 내담자가 잘 모를 때 그걸 민감하게 알아차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그것을 잘 캐치하냐 못하냐가 내담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겠구나... (발견자, 참여자 3)

보호자

일부 참여자들은 때로는 심리상담사가 내담자에게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내담자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내담자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서 심리상담사를 설명하였다.

상담이라는 건, 개인들은 모두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저는 상담사가 그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그것에 저해될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가도록 돕는 과정인 것 같아요. (보호자, 참여자 5)

4-1-3) 심리상담의 특징에 대한 인식의 차이

앞서 기술한 대로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서비스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세부 전문 영역에서의 심리상담서비스와는 분명한 차이도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공동의 의식을 뿌리 깊이 갖고 있지만, 각 전문 분야마다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특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표 2-8〉에 제시하였다.

〈표 2-8〉 심리상담의 특징에 대한 인식의 차이

상위범주	하위범주
기간	단기상담 대 중장기상담
방향	심리내적 대 외부자원연계
형식	직접적 개입 대 비지시적 개입
내담자 문제의 심각성	상담 대 치료

예를 들어, 직업상담사는 주로 단기상담을 위주로 진행하고 심층상담은 상담전문가에게 연계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에 방점을 두며, 청소년상담사나 전문상담교사는 보다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편으로 심리상담과 구분되었다. 전문상담교사는 다중관계를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교육과 지도의 역할이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심리사와 정신과 전문의는 '치료'와 '상담'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 저는 사회복지 마인드가 있으니까, 사회복지의 베이스는 무조건 자원연계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에도 사회복지 마인드가 더 있어서 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관련 자원들을 최대한 연결해주려고 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반 상담에서는 물론 환경적인 문제도 다루면서도 더 심리정서적 중심을 가지고 간다면,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환경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가려고 하고 그것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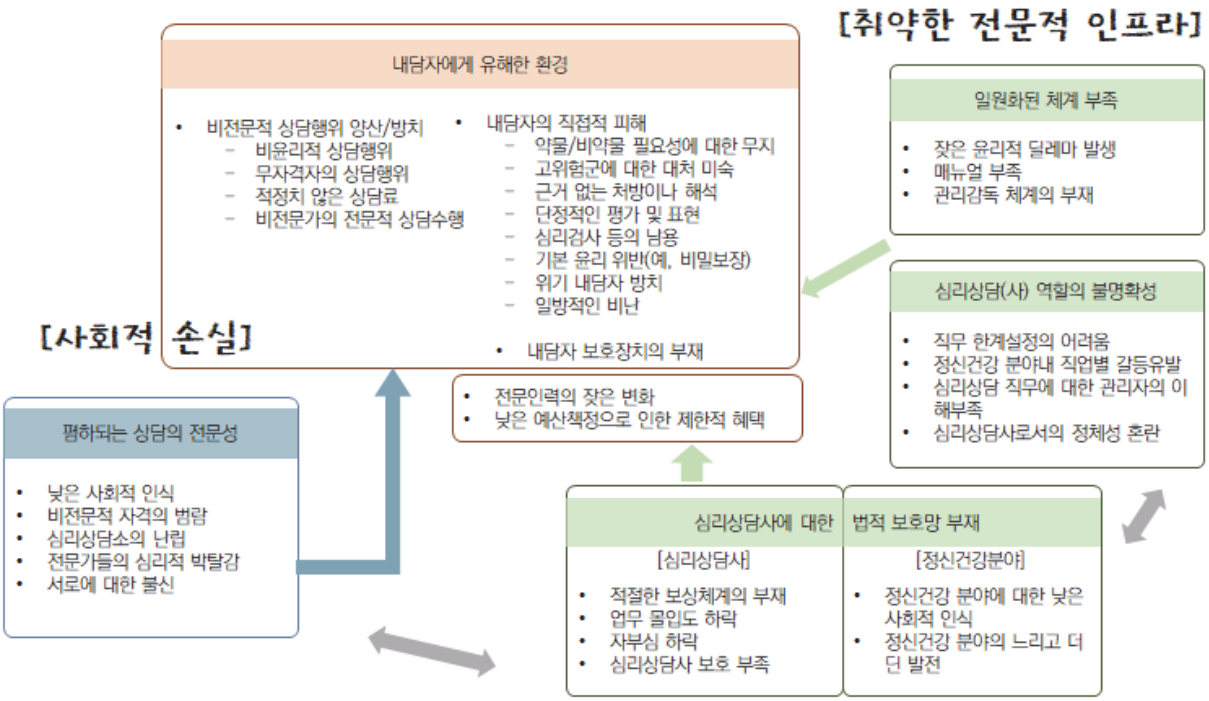
> 일반상담세팅과 학교상담은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다보니까 저도 일반상담처럼 하고 싶지만 학교장면에서 요구하는 교육이나 지도 이런 걸 더 해야할 때도 있구요.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잠깐씩 상담실 들락거리다가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일반상담에서는 이걸 상담으로 쳐주지 않잖아요. 000000학회에서 인정도 못받는건데 이거는. 그런데 학교상담에서는 그런 상담도 정말 많거든요... 학교라는 세팅 자체가 조금 더 직접적인 개입을 필요로 할 때가 많아서 학교상담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것뿐 아니라 행정적이거든 물리적인거든 학생들은 상담으로 받는 영향이 크고 상담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할 부분이 크게 되거든요. (참여자 7)

4-2) 영역 2 : 심리상담 관련법 부재로 인한 문제

영역 2는 참여자들이 마음건강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면서 절감한 심리상담 관련 법의 부재와 그로 인한 경험을 나타낸다. 사회적 손실('폄하되는 상담의 전문성', '내담자에게 유해한 환경')과 취약한 전문적 인프라('심리상담사에 대한 법적 보호망 부재', '상위법 부재: 일원화된 체계 부재', '심리상담(사) 역할의 불명확성') 등 2개의 상위범주와 6개의 중위범주, 그리고 18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표 2-9〉에 제시하였다. 또한 각 범주간 관계도를 〈그림 2-15〉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9〉 영역 2: 심리상담 관련법 부재로 인한 문제

상위범주	중위범주	하위범주	
사회적 손실	폄하되는 상담의 전문성	낮은 사회적 인식	
		비전문적 자격의 범람	
		심리상담소의 난립	
		전문가들의 심리적 박탈감	
		서로에 대한 불신	
	내담자에게 유해한 환경	비전문적 상담행위 양산/방치 - 비윤리적 상담행위 - 무자격자의 상담행위 - 적정치 않은 상담료 - 비전문가의 전문적 상담수행	
		내담자의 직접적 피해 - 약물/비약물 필요성에 대한 무지 - 고위험군에 대한 대처 미숙 - 근거 없는 처방이나 해석 - 단정적인 평가 및 표현 - 심리검사 등의 남용 - 기존 윤리 위반(예, 비밀보장) - 위기 내담자 방치 - 일방적인 비난	
		내담자 보호장치의 부재	
취약한 전문적 인프라	심리상담사에 대한 법적 보호망 부재	내담자	낮은 예산책정으로 인한 제한적 혜택
			전문인력의 누출 및 수급의 어려움
		심리상담사	적절한 보상체계의 부재
			업무 몰입도 하락
			자부심 하락
			심리상담사 보호 부족
		정신건강 분야	마음건강 분야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마음건강 분야의 느리고 더딘 발전
	상위법의 부재: 일원화된 체계 부재	잦은 윤리적 딜레마 발생	
		매뉴얼 부족	
		관리감독 체계의 권위 부재	
	심리상담(사) 역할의 불명확성	역할 및 직무 범위의 모호함	
		마음건강 분야 내 직업별 갈등	
		심리상담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부족	
		심리상담사로서의 정체성 혼란	



[그림 2-15] 범주간 관계도

4-2-1) 사회적 손실

□ 폄하되는 상담의 전문성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지나치게 난무하는 자격증으로 인해 심리상담서비스의 일정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법령 부재의 문제점으로 보고하였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능력개발원에 등재된 심리상담 관련 민간등록 자격증은 4,000개를 넘어섰는데(민간자격정보서비스, 2019), 마음건강 전문가들은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범람하는 자격증으로 인해 참여자들이 경험한 문제점을 낮은 사회적 인식, 비전문적 자격의 범람, 심리상담소의 난립, 전문가들의 심리적 박탈감, 서로에 대한 불신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구체적 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낮은 사회적 인식

참여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어렵지 않은 필기시험을 치르면 주어지고, 심지어 '돈만 내고' '출석만 잘하면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의 수가 도를 넘어서면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심하게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문화센터에서 몇달 배워서 무슨 무슨 상담사 1급을 따는' 현 상황에서 심리상담은 대중들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모호하고 비전문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민들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빈번히 놓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전문적 역량과 수행의 문제를 불러오기에 참여자들은 낮은 사회적 인식을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보고하였다.

> 이렇게 너무 많은 자격증들이 혼재하고 있다 보니까 상담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업무가 아니라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어떠어떠한게 있잖아요?'하는 말 자체가 현시점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상담인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낮은 사회적 인식[3])

> 민간 자격증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도 어떤 자격증을 땄다거나 심지어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시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너네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오는 내담자들이 있었어요. (낮은 사회적 인식)

> 50대쯤 되시는 분이 오셔서 나중에 은퇴를 하면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남는 시간 동안 상담 쪽으로 해보고 싶은데 (자격증을) 어떻게 따면 되냐고 묻거나... 이 일을 하면서 여유가 좀 되는데 겸업으로 상담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하거나... 상담에 대해 다들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여가 시간에 조금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만드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낮은 사회적 인식)

비전문적 자격의 범람

참여자들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자격증에 대해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틈을 타 '자격증 장사'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에 휘둘리거나 호도되는 대중들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는 그 자격증을 직업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일반인들이 소모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많아도 너무 많은게, 제 내담자도, 아 심지어 저희 센터 데스크에서도 길 가다가 00상담 관련 무슨 자격증을 따라고 권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몇 시간에 얼마만 내면 딸 수 있으니까 하라고. 가족들도 다 데려오면 할인해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어떠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구요.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자격증 장사를 하면서 남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걱정되죠. (비전문적 자격의 범람)

3) 일부 참여자들은 인용문을 통해 자신의 직군이 드러날 경우, 개인의 의견이 마치 그 직군을 대표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가능성을 염려하였다. 참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하여 본 절부터 참여자 번호를 모두 삭제한 후 인용문을 제시하였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또한 자격증 장사에 호도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사들 역시 무수히 많은 자격증의 범람 속에서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올릴 수 있기 위해 큰 의미 없는 자격증이나 인근 분야의 자격증까지 추가로 취득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 전문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증명해주는 자격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인이나 채용담당자들이 보기에는 더 전문성 있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몰입하지 못하고 에너지가 분산되는 사례들을 경험했다고 참여자들은 보고하였다.

> 우리끼리도 그래요. 000000 자격증 새로 생겼다는데 우리도 따야하는 거 아니냐고. 실제로 쓸모없어도 따는 경우도 많고. 온갖 자격증이 있으니까... 최소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 자격증에는 그런 장사 짓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비전문적 자격의 범람)

> 저도 지금 사회복지 자격증을 준비하느라 사회복지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지도사라든지 평생교육사라든지 저도 별도로 공부해서 이런 자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보처리사도 땄고... (비전문적 자격의 범람)

심리상담소의 난립

일정한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가 심리상담소를 운영, 관리하도록 제한하는 법령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신청을 하면 심리상담소를 개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무수히 많은 심리상담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과연 그곳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에 의해 운영되는 전문적인 센터인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참여자들은 '점집'이나 '타로카페' 등도 심리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심리상담소의 난립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양산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 사실 정신분석 쪽은 저희 쪽에서도 철저하게 수련을 받지 않으면 분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은 환자를 본 적도 없고 정신분석 강의를 좀 들으신 것 같은데 그걸로 정신분석 상담센터를 열어요. (심리상담소의 난립)

> 사실 정신분석 쪽은 저희 쪽에서도 철저하게 수련을 받지 않으면 분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은 환자를 본 적도 없고 정신분석 강의를 좀 들으신 것 같은데 그걸로 정신분석 상담센터를 열어요. (심리상담소의 난립)

> 학교에 있다 보면 신입생 모집을 할 경우에 이런 것을 많이 봐요. 임상 경험이 많이 없는데 민간 자격증만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 따기 쉬운 민간 자격증 하나 딴 다음 실제 상담실을 오픈하고 상담을 하다가... 대학원에 원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심리상담소의 난립)

성격적으로 굉장히 나르시즘인 사람이 사실은 외견상으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좌중을 휘어잡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대로 상담 교육을 받지 않은 채 내가 막 이러이렇다 하는 식으로 오픈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휘둘리게 되죠. (심리상담소의 난립)

전문가들의 심리적 박탈감

자격증이 난무하는 현상은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스스로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마음건강 분야에서 심리상담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교육과 수련이 필요하고, 참여자들 역시 '무수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쏟아부어' 전문가로 서서히 성장해왔기에 '발에 채일 듯' 많은 자격증의 수와 그로 인한 자격증의 위상 저하는 전문가들의 자부심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 취득한 전문가 자격증이 국가 자격 또는 면허 형태의 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수천 개 중 하나로 인식된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말 그대로 무늬만 자격증이신 분들이 있는 거죠. 이분들이 저희 전체의 이미지를 만들고, 사실 전체적으로 욕도 먹인다 하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분야에서 경력도 많고 정통 00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쉽게 통과하는 시험이라고 인지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 속상하죠 많이. (전문가들의 심리적 박탈감)

제가 0000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학부 4년, 대학원 2년, 전일제 수련 3년, 그리고 기초과목, 전공과목의 필기시험, 구술시험, 연구 등 필수조항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쳤는데, 면허 형태가 아니다 보니 막상 취득한 자격증의 권위가 예상보다 작은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하면 일반인들은 '차라리 의대를 가서 정신과 의사를 하지 그랬냐'라고 하죠. 그 말 속에는 심리학자가 의사보다 덜 권위 있는 뉘앙스가 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자격증 위상의 차이이기도 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전문가들의 심리적 박탈감)

서로에 대한 불신

자격 취득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는 자격증들이 범람하면서 마음건강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 '몰라서 신뢰하기 어렵고', 무분별한 자격증들에 대해 알면 아는 대로 전문성에 대해 걱정하게 되는 등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이미 여러 마음건강 분야 전문가들의 도마 위에 놓여진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마음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리상담사 또는 심리상담소를 소개하거나 연계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때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예전에는 상담전공 쪽을 제가 잘 몰랐으니까... 상담 자격증을 주는 곳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하루 코스였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이 안 되는... 그런데 그분들이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짧은 코스를 마치고 상담을 하는구나... 아 이거 정말 큰일나겠구나... 다음에는 교육 의뢰가 와도 안가요. 이제는 상담이라고 하면 비전문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당연히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한 불신)

00치료사 2급 이렇게 제출하면, 어디에서 받았는지 어떤 과정 거쳤는지 저희가 매번 자격기관을 검증하기가 어렵고, 어디서 검증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위험군을 연계해야 하는데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급하고 하다 보면 (자격증 검증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마음 한 켠으로 편하지 않고요... 솔직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너무 찜찜한 거예요. 00치료 자격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많잖아요. (서로에 대한 불신)

어떤 자격인지 잘 모르니까. 공인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보낼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으면 제 내담자를 보내기가 어렵죠. (서로에 대한 불신)

□ 내담자에게 유해한 환경

앞서 기술한 대로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난무하여 질적 수준과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고, 무자격/비전문적 상담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현실은 결국 내담자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충분한 자격을 검증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는 비전문가들이 많아지면서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적 편차가 극심해지고, 전체적인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 비윤리적 상담행위에 대한 제재도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모든 참여자들은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심리상담서비스로 인해 내담자 및 잠재적 내담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염려하고 있었으며, 이를 '비윤리적 상담행위의 양산/방치', '내담자의 직접적 피해', '내담자 보호장치의 부재'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비윤리적 상담행위의 양산/방치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무자격/비전문적 상담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그에 대한 관리 및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또 다른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리상담은 국가가 규율하는 면허(license) 형태가 아닌 자격(certification)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자격이 취소되어도 해당 상담사의 상담행위를 금지할 수 없고, 또 다른 민간 자격을 취득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실제

비윤리적인 상담행위로 문제가 된 이후에도 해당 심리상담사가 법적인 규제 없이 여전히 상담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또는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 현장에서 성추행으로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난리가 났던 분이 있어요. 지금은 페00북도 차단되고 여기서도 나가셨는데 저 분이 어디 가서 또 상담하시진 않으시겠지? ... 그런 불안은 남아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정말 제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저희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이 설마 못하겠지 믿어야 할 뿐이니까. 내담자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상담을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실제 제가 겪고 나니까 이런 게 절실해지는 거죠. (비윤리적 상담행위의 양산/방치)

>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상처 되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시더라구요... (사례 설명)... 그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에는 이의 제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다른 데에서 여전히 상담을 하고 있어요. (비윤리적 상담행위의 양산/방치)

그 외에도 다수의 참여자들은 무자격자의 상담행위, 적정치 않은 상담료, 비전문가의 전문적 심리상담 수행 등이 규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비전문적, 비윤리적 상담행위가 횡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담자가 겪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근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격도 불충분한 분이) 심지어 한 회기에 30만 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상담소가 삐까번쩍하게 차려져 있고 상담료를 30만 원씩 받는다니까 아 뭔가 훌륭한 사람인가보다 하고 찾아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재가 안 되는 거죠. (적정치 않은 상담료)

> 상담과 관련이 하나도 없는 쪽 심리학 박사인데 내가 무슨 가족치료를 하겠다... 진짜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사실 더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치료는 정말 상담 쪽에서도 가족치료 훈련을 따로 받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개인상담하고도 또 다른 영역인건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비전문가의 전문적 심리상담 수행)

> 사실 TV에 나왔던 그 성범죄, 성폭력 저지른 그 사람요, 사실은 상담쪽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자격이 없는) 사기꾼인데... 제재를 못하는게... (무자격자의 상담행위)

내담자의 직접적 피해

참여자들은 비전문적 상담서비스 제공 및 제재 불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내담자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보고하였다. 자격증과 심리상담소의 수와 비례하듯 내담자들이 입은 크고 작은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건강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로 산적해 있는 셈이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분야가 드러나는 사례들을 제외하고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고위험군 내담자에게 기초적인 매뉴얼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비전문적 상담행위로 인한 내담자의 피해 사례들을 보고하면서 그 위험성을 염려하였다. 또한 근거 없는 처방이나 해석, 단정적 표현 등으로 인해 내담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심리상담적 필요성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남용되는 심리검사 실시 등으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 내담자들도 만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신력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윤리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했거나 윤리강령을 강조하는데 반해, 충분한 훈련과 수련 없이 취득한 자격증을 지닌 경우 기본적인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위기 내담자를 방치한 경우, 상담 마인드가 전혀 없는 듯한 태도와 언행 등으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 일단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담을 하니까 내담자에게 해가 많이 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커요. 예를 들어 조현병 환자거나 양극성 환자였는데 상담사가 약을 끊으라고 좋지 않다고 강하게 말을 해서 약을 끊었던 거죠. 원래는 약으로 근근히 유지하던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 환자분이 싸이코틱해져서 온 거예요. (약물/비약물 필요성에 대한 무지)

> 고위험군 내담자들이 많이 오는 000 현장이었는데, 예를 들어 자해하는 아이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매뉴얼을 모르는 상태로 너무 부적절하게 대처하시거나 전혀 상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냥 하시는 경우도 보고요. (고위험군에 대한 대처 미숙)

> 동네에서 상담을 받다가 왔다는데 들어보니 너무 엉터리 상담인거죠. 예를 들어 우울할 때 탁구공 소리를 들으면 좋다고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식이죠. 내담자에게 상담사의 자격을 물어볼 순 없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졸업한 학교도 모르겠고 무슨 자격증인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거 없는 처방)

> 너무 적절하지 않는 해석을 하는 거죠. 뭐 부모가 뭘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집안이 엉망이 되고 난리가 난거예요. 공인된 자격증을 받는 과정이 있고, 일정한 수련을 거치고 했다면 저렇게 반응하지 않았을텐데. (근거 없는 해석)

> 상담은 경력이 아무리 많아져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배우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어설프게 아무 상담 자격증을 땄다고 상담을 하면 너무 위험한 게, '저도 상담 배웠어요. 저도 잘 알아요.' 이러면서 오히려 더 말을 강하게 단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단도 자기가 막 내리고. 그런 거에 상처받은 내담자들이 많이 와요. 다시 상담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단정적인 평가 및 표현)

온 가족이 (심리) 검사를 하도록 보내셨는데, 검사하는 이유가 없어요. 풀배터리를 받으려면 사실 많이 비싸잖아요. 그냥 그 선생님이 온 가족이 다 (풀배터리를) 받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받는다고. 이유도 없이. (심리검사 등의 남용)

000에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검사를 했나 본데, 이분이 검사지를 저희 쪽으로 들고 온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검사 실시하는 방법만 알아서 실시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 원자료를 반출하면 안 된다는 너무 기본적인 윤리도 모르고, 검사 보고서를 아예 제대로 작성할 줄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 윤리 위반)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전문성을 다 갖췄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전문성도 없이 내담자를 보게 되니까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 뭐 비밀보장 원칙이라든가 이중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 이건 정말 학부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본 윤리 위반)

내담자 보호장치의 부재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담자들 스스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해도 그것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실시되는 심리상담서비스로 인한 내담자의 상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참여자들은 한 사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건강이 비전문가에게 맡겨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 목소리로 경고하였다. 그 위험성으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것은 심리상담 관련법 부재로 인해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어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한 피해 사례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이 더 많을 것이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들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피해를 본 내담자들이 이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큰일을 당해 민사상 소송 정도... 이 사람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까지 당했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내담자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내담자 보호장치의 부재)

사실 상담을 하고 있는 저도 이 사람이 좋은 자격을 갖춘 상담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담사를 내담자는 전문가일 거라고 믿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정말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요... 상처받고 오는 내담자가 정말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한 번의 상담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에 있어, 그 평생에 걸쳐 더이상 상담과 관련한 도움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 너무 큰 자원을 잃게 되는 것이죠. (내담자 보호장치의 부재)

> 사실 피해를 받았는데 밝혀지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자기가 피해를 받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내담자들도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사례를 알게 돼도 저 역시도 그것을 문제시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런 것밖에. 그 사람이 가진 어려움은 더 심각해지지만, 사회적으로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는 거죠. (내담자 보호장치의 부재)

4-2-2) 전문적 인프라 부족

□ 심리상담사에 대한 법적 보호망의 부재

현재 심리상담사들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정성과 낮은 처우는 오랜 시간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김창대 등, 2013; 서영석 등, 2019; 이형국, 2016).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심리상담사, 더 나아가 마음건강 분야의 고용 불안정성과 낮은 처우 문제는 마음건강 전문가들을 고질적으로 괴롭혀 왔으며, 이를 심리상담 관련법의 부재로 인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보고하였다. 심리상담사에게 지켜야 할 사명과 의무는 너무도 많은 데 비해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은 법적 형평성을 무너뜨리고(김정진, 2016), 수많은 심리상담사들을 법적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참여자들은 자격증 난무로 인해 공급자 허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와 관련해 심리상담사, 마음건강 분야, 내담자 및 잠재적 내담자 관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심리상담사

적절한 보상체계의 부재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들의 고용이 대체로 계약직으로 이루어지는 등 매우 불안정하고, 직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보고하였다. 심리상담사들은 대체로 일의 의미와 보람, 그리고 사명감으로 상담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비한 근무환경과 '처절할 정도'로 낮은 임금 및 처우는 심리상담사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심리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상담사들에게 적절한 임금체계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과수당'이나 '경력산정'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사들은 그래도 사회복지사들에게 통용되는 호봉의 테이블이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심리상담사들은 그게 전혀 없어요. 심지어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들도 그게 없어요... 사실 이런 비교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학부 졸업한 사회복지사가 석사 졸업한 심리상담사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적절한 보상체계의 부재)

최저시급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곳이 많아요. 일단은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도대체 최저시급은 받나 싶어서요. 그냥 근무시간에만 정확히 일한다고 계산해도 (최저시급을) 아주 조금 넘더라구요. 석사를 졸업하고 국가자격증을 따고 나서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적절한 보상체계의 부재)

업무 몰입도 하락

또한 참여자들은 적절한 보상체계 없이 지나치게 낮은 처우로 이루어진 직무환경이 심리상담사들의 전문적 업무 몰입도를 낮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심리상담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리상담'만 해서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 생업에 종사해야 하거나 정서적 고통을 겪다 보니 업무 몰입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희는 이 일 외에도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잡한다고 하죠. 이 분야에 관련된 특강을 한다거나 유사 분야이지만 다른 기관의 일을 한다거나. 고용 안정성을 위한 장치는 물론 임금 체계도 없고, 부수적인 업무는 너무 많은데 그에 대한 보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내 업무에 몰입을 할 수 없고 정신이 분산되는 거죠. (업무 몰입도 하락)

자부심 하락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심리상담 분야의 고용 및 처우 문제가 심리상담사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송두리째 흔든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가 전문적 직업으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교육과 훈련 등 오랜 시간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고용불안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은 심리상담사의 직업적 만족도를 낮추고 국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직업상담사들의 고용불안이 누구보다 극심'하고, '사람들의 복지를 돕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가 누구보다 엉망이며', '사람들의 마음건강을 케어하는 심리상담사가 누구보다 케어받지 못한다'며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사실 대부분이 계약직인 것부터가 이미 상담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이 안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너네가 하는 일이 계약직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계약직인거죠. (자부심 하락)

자격증이 난무하다 보니까 공급자의 허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를 고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너 아니어도 돼' 하는 게 있어요..... 이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불안이 이만큼 높아지는 거죠. 지금은 그냥 봉사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이 현장에 없을 것 같아요. 버틸 수가 없겠죠. (자부심 하락)

지금 정신건강 분야 선생님들이, 제 주변에 보면 대부분이 석사 이상이고 그동안 배우고 노력한 게 얼만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시간들에 비해 너무 터무니 없는 급여나 수입을 갖고 사는데 계속해서 헌신해라? 그게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자부심 하락)

심리상담사 보호 부족

고용, 임금, 처우 외에도 심리상담사들의 기본권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보고되었다. 심리상담사들은 외상 경험이 있거나 고위험군 내담자 등과의 심리상담에서 불안, 심리적 어려움, 스트레스, 부담감, 소진 등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공식적인 보호 절차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내담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법이 없다 보니까 상담사 보호가 잘 안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고위험군이 정말 많이 있는데,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힘들고 그 위험부담을 심리상담사가 다 떠안고 있어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도 오로지 상담사가 지게 되고. (심리상담사 보호 부족)

상담 장면은 대체로 (내담자들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간혹 (일부 내담자에게) 시달릴 때가 있어요. 상담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민원이 발생하는 걸 정말 싫어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상담사가 혼자 해명하고 증명해야 해서 소진되고 상담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없고요. 오히려 다음 위탁이 끊기기도 해요. 그럴 때 느끼죠. 상담사의 기본권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 (심리상담사 보호 부족)

또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용기관에 의해 심리상담사 개인정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담자에게 노출되거나 내담자와의 개인적 친분이나 돌봄을 요구받는 등 심리상담가로서 개인으로서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 손쉽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심리상담사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돕고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사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직업적 무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00에서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데 원래 상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담자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노출하는 거예요. (고용기관)에서는 담당자 휴대폰 번호도 우리한테 안줘요, 회사 전화로만 하지. 그러면서 우리 번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는 거죠... 어떨 땐 집단 끝나고 이상한 연락이 새벽이고 밤이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수신차단을 했는데 이게 민원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번호가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걸 감안해주지 않고 그저 민원 발생에만 전전긍긍해서 오히려 제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죠. (심리상담사 보호 부족)

병원은 그나마 좀 안전한데, 일반 상담 세팅에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상담자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내담자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니까... 법적 보호도 없지만, 상담자 스스로도 뭔가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상담자 보호는 사실 상담 받는 수요 자체가 아직은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점점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아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상담사 보호 부족, 참여자 5)

마음건강 분야

마음건강 전문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위상

심리상담사에 대한 고용 문제와 낮은 처우는 심리상담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곧 모든 마음건강 전문가들에 대한 낮은 사회적 위상으로 연결되며, 마음건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을수록 현대인들의 정신적 치유는 갈 곳을 잃게 된다고 참여자들은 단언하였다. '마음건강에 필요한 것은 햇빛을 더 많이 받고, 더 솔직하고,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화'라고 말한 글렌 클로즈의 말처럼, 전문적 도움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보는 일은 사회적 양지로 이끌려 나와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음건강 전문가들의 전문성은 여전히 사회적 그늘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전문가들이 돈 때문에 이 일을 하진 않지만 돈도 사람의 중요한 매개체인데... 그 처우가 나아지지 않으니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있죠. 처우가 나아져야 아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전문적인 일이구나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건강쪽은 다 그런 거 같아요. 다른 것에는 돈을 쓰면서도 이쪽엔 돈을 안 쓰려고 해요. 공짜면 하겠는데 그게 아니면 안 한다 이런 분들. 사실 대학생 과외보다 싸잖아요. 일대일로 내 심리상태를 그 시간만큼 돌보는 건데, 그게 전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높은 비용이 아닌데, 그렇게 돈 들일 일인가 상담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건데 하니까 비싸다고 하는거죠. (마음건강 전문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위상)

저희는 000구 청소년0000라든지 교육청 등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심리상담사 임금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와요. 근데 이게 청소년들 마음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 책정된 급여 자체가 이렇게 너무 적은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전문성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는지 아니까 드리면서도 너무 죄송한거죠. (마음건강 전문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위상)

마음건강 분야의 느리고 더딘 발전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에 대한 고용 문제와 낮은 처우 문제가 마음건강 분야의 오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마음건강 분야의 느리고 더딘 발전 속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보았다. 또한 훌륭한 역량을 갖춘 인력들이 투입될 가능성을 낮은 처우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마음건강 분야의 발전을 지연되고 있음을 안타까워 하였다. 마음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마음건강 전문가들이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지탱해줄 고용 안정성과 적절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가 막연하게 1호봉이 어느 정도 올랐겠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취직하기 전에 알바하면서 00원 받았는데 첫 취직해서 세금 제하고 그것보다 낮은 00원 받았거든요. 00년 전에 00원이었는데 지금 00원인건데... 경쟁력 있는 선후배들이 들어오려면 급여가 올라야지 이래선 누가 버텨... 근데 처음엔 선배들이 노력을 안해서 이쪽 분야 발전을 안 시켜서 그렇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바뀐게 없어, 나도 후배들에게 해준게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마음건강 분야의 느리고 더딘 발전)

전문인력의 누출 및 수급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심리상담 인력에 대한 고용 불안정성과 낮은 처우 문제가 전문인력들의 잦은 이동과 탈락을 불러온다고 보고하였다. 열악한 업무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하에 심리상담사가 채용되지 않는 고용 불안정성의 단면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심리상담은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 진행되는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는 것은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전문인력들이 장기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내담자는 덜 숙련된 새로운 인력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이쪽이 인력이 자주 바뀐다고 하잖아요. 예산이 아무래도 너무 낮고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죠. 자주 바뀌면 연계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건데. 아이들 입장에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해야지 선생님이 자주 바뀌면 좋지 않은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전문인력의 누출 및 수급의 어려움)

> 심리상담사들이 소진되고.. 다시 도돌이표되는 건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후년의 전문인력을 더 확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이는 노하우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 그게 내담자에게 가는 거잖아요. 상담사들의 처우를 보호하는 법령 마련은 결국 내담자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전문인력의 누출 및 수급의 어려움)

> 이 분야가 발전을 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수요에 맞는 생산성도 높이려면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따라줘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자격증 많이 주고 부족한 인력을 그냥 구겨채워 넣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런이런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처우가 따라주지 않으면 여기서 조금도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저희 쪽에도 3년에서 5년 일하고 이 분야를 떠나는 좋은 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끼리는 무능력한 사람들만 여기 남아 있는다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전문인력의 누출 및 수급의 어려움)

(잠재적)내담자

낮은 예산책정으로 인한 제한적 혜택

참여자들은 심리상담 관련법의 부재가 곧 내담자의 혜택을 제한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해당 예산이 책정되고,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대중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심리상담사법이 부재로 인해 심리상담과 관련하여 책정되는 예산이 매우 적은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심리상담사의 임금과 처우는 낮아지고 내담자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좁혀진다. 참여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적 책무로서 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 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곧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되고 안되고로 직결되는 문제더라구요. 예를 들어 학교밖 지원 관련법이 생기고 그게 조례로 제정되니까 관할 구청이나 시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학교밖 지원센터도 생기고 필수사업처럼 내려와서 예산도 자연스럽게 책정이 되고. 이전까진 학교밖 얘기가 없었는데 2020년 청소년 주요사업도에도 이제는 학교밖 이야기가 필수적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법 제정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는 거더라구요. 심리상담은 당연히 국가적 관심사인데 법제화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워요. (낮은 예산책정으로 인한 제한적 혜택)

> 공공기관 상담은 수요가 너무 많아요. 순서가 안와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당연히 저희 애들은 사설센터에 갈 여유가 없으니까 무료 상담이나 저렴한 구립쪽으로 연결해 줘야 하는데 거긴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순서가 안오고.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책정된다면 인력도 늘어날테고 인력이 늘어나야 당연히 아이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텐데 그게 안되는 거죠. (낮은 예산책정으로 인한 제한적 혜택)

□ 상위법의 부재: 일원화된 체계 부족

심리상담은 상담의 대상(예, 청소년 상담), 주제(예, 직업/진로 상담), 맥락(예, 학교 상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된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세분화된 심리상담 관련법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 기준이 되어주는 심리상담 모법이 존재하지 않아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가지'만 존재하는 현 상황을 설명하며 일원화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뿌리'가 먼저 든든히 자리잡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들이 뻗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완전한 '빈 자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이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존재'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일원화된 체계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잦은 윤리적 딜레마 발생', '매뉴얼 부족', '관리감독 체계의 부재'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잦은 윤리적 딜레마 발생

상담 과정에서 심리상담사의 개인적 가치와 전문가로서의 가치, 전문가 윤리 및 법적 기준 등이 서로 충돌하여 문제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윤리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심리상담사들은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 된다(이은정, 이은지, 안수정, 서영석, 2019; Welfel, 2016). 복잡다단한 상담 현장에서 다양한 가치들의 충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상담사들은 심리상담 분야에서 합의한 공동의 강령을 기준으로 매순간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수의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들에게 참고 또는 권고되는 윤리강령보다 분명한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아 윤리적 딜레마를 더 많이 경험하거나 그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학교상담 장면에 있는 참여자들은 일반상담에 비해 더 자주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Cottone & Tarvydas, 2007; Issacs & Stone, 1999). 심리상담사이자 교사이자 학교 조직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의 입장과 부모의 권리, 그리고 학교 정책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보다 명료한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법령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 일반 상담세팅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상담에서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나 상담 비밀보장 문제라든가.. 기록공개 요청을 했을 때 일반상담기록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공문서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부분도 복잡하고, 수업중 상담에 대한 부분이나... (잦은 윤리적 딜레마 발생)

> 시험감독도 하고 수업도 하면서 교육하고 지도도 하고 상담도 하는 다중관계잖아요. 상담 외에도 복지, 장학, 수업 관련 여러 가지를 조직의 일원으로서 해야 하다 보니까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구조화가 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책임도 지고 보호도 받고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법망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잦은 윤리적 딜레마 발생)

따라서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이 무엇보다 윤리 문제에 민감해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령 마련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로서는 윤리교육을 통한 개인의 양심에만 규제를 맡기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든 참여자들은 정도(正道)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내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급하다고 보고하였다.

> (사례 설명, 한 사람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 의사다, 외과 의사다 그러면 의사면허를 박탈당하는 것까지 가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직무의 전문성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상담을 한다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치명적인 사유인거죠. 그러니까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거죠. 상담은 이 부분이 너무 취약한 부분인데 이걸 거의 윤리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맡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윤리교육에만 의존함)

매뉴얼 부족

참여자들은 심리상담 장면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많은 것들이 개인의 가치와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현 상황을 심리상담법 관련 부재의 어려움 중 하나로 보고하였다.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슈나 문제에 대해 보다 공식적이고 명확한 지침이나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일원화된 공식적 매뉴얼이 부족한 현재, 심리상담사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짊어지는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 업무를 수행할 때 너무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 상담사 개인에게 또는 어떤 하나의 기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부담을 상담사 개인이나 기관이 온전히 져야하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매뉴얼 부족)

> 법이 없으니까 정확한 걸 항상 잘 모르고 상담사 보호도 잘 안 되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법령이나 규칙으로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면, 상담사도 어느 선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럴 땐 스스로도 어떻게 보호하고 관계에서도 이래야 한다 명료하잖아요. 공식적인 절차를 내담자나 보호자가 원치 않더라도 법령이나 규칙에 이런 게 있다 하는 안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더 명료하고 공식적인 처리를 할 수 있을텐데...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인 처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판단한 게 되고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상담자가 지게 되는 그런 이중부담을 얻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매뉴얼 부족)

관리감독 체계의 권위 부족

심리상담사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 및 취득 이후 과정에서의 역량 점검, 보수교육 활성화, 수련 기관 인준 및 수련감독자에 대한 관리 등 상담의 모든 과정과 장면에서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현재 심리상담 분야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가 부재한 상태로 여러 학회나 자격발행처 등 다양한 주체에서 철저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법령 부재의 문제점으로 보고하였다. 일원화된 관리감독 체계가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들이 불비한 업무환경에서 '각자도생'하기 위해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비유하기도 하였다.

>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탄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고, 개소한 후에도 주기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잖아요. 의사들도 일년에 몇 평점 이상 들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신체검사 같은 거 해야 하고.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 거죠. (관리감독 체계의 권위 부족)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심리상담 관련 학회들을 통해 수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면서 해당 학회의 관리체계 하에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학회들은 심리상담사들에게 높은 공신력과 권위를 갖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민간단체 중 하나로 인식되며 엄격한 법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도 그런 상황에서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학회보다는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쪽보다는 이쪽이 실질적 힘이 있으니까. 사실 학회가 훨씬 더 제가 지향하는 곳이고, 여성가족부는 상담 쪽으로 깊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학회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런 것이 속상하고 확 와닿았어요. (관리감독 체계의 권위 부족)

> 센터장님이 그 학회는 그냥 민간단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센터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 개 중 하나의 민간 단체에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관리감독 체계의 권위 부족)

□ 심리상담(사) 역할의 불명확성

다수의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이 법률로써 정의, 규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장에서 직무가 불명확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심리상담(사)의 정의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직무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심리상담사 및 마음건강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를 '역할 및 직무 범위의 모호함', '마음건강 분야 내 직업별 갈등', '심리상담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부족', '심리상담로서의 정체성 혼란'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역할 및 직무 범위의 모호함

참여자들은 심리상담 직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다보니 현장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업무 중 어디까지가 자신의 직무인지 혼란스럽다고 보고하였다. 명확한 영역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직무에 대한 한계설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내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돕는다"와 같이 심리상담사들의 추구하는 지점은 추상적일 수 밖에 없어 태생적으로 한계를 짓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업무의 제한이 없고 그로 인한 책임 소재 또한 더욱 커지게 되면서 심리상담사들이 소진되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센터에서 자살자해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이 출동했었는데, 그들의 매뉴얼이 분명하더라구요. 매뉴얼 상으로 자기들은 어떤 역할과 도리를 다 했다, 어떤 조치를 취했고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러고 돌아가는데, 아 저들은 직업적인 한계 설정이 가능하구나... 저희는 그런게 없는 거예요. 보통 상담사들은 내담자의 삶을 돌봐야 하니까 그 말은 다 해야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상담사 소진으로 이어지고. 특히 공공기관 세팅에서는 공공의 서비스 마인드가 요구되다 보니까 더 한계설정이 어려워져요. (역할 및 직무 범위의 모호함)

학교에서 업무의 제한이 없다거나 너무 많은 범위의 업무를 다 끌어안고 해야한다든지. 사실 생활지도는 어떻게 상담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크게 무리가 없어서 생활지도와 관련된 그 어떤 업무도 다 상담실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는 것도 제가 하고 가, 피해 학생들을 모두 제가 상담해야 하고 그 부모님도 제가 다 만나고... 역할에 대한 혼란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역할 및 직무 범위의 모호함)

마음건강 분야 내 직업별 갈등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마음건강 분야 전문가들의 직무는 세부 직업별로 유사하면서도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마음건강 분야에서는 전문가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참여자들은 직무가 불명확하다 보니 직업 간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심리상담에 대한 직무 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보니, 마음건강 분야 내에서도 심리상담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확실하게 모르거나 오해를 하고 있어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저희 상담팀은 항상 일을 쳐내기 바빴어요. 왜 이게 너네 일이 아니야? 그러면 아 우리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고 상담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부터 설명해야 하니까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직무 규정이 없으니까 계속 말로 설득해야 하는거죠. (마음건강 분야 내 직업별 갈등)

저희는 비밀보장, 검사유출 금지 이런 게 사소해 보여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이 아이를 지원해주려면 모든 걸 알아야 하고 잘 알수록 더 잘 지원해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왜 안 알려주는지 의아해하세요. 심리검사 자료를 공개해달라,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이야기해달라 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이걸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내담자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의 역할은 전문적 자문을 해주는 것까지다 그래도 이해를 잘 못하시죠. (마음건강 분야 내 직업별 갈등)

> 심리상담 전공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전문상담교사들은 심리상담 지식이 조금 떨어진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심리상담에 대한 경험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아예 피피티에 써놓으셨더라구요. 그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전문상담교사들은 세팅이 달라서 요구되는 역할 자체가 다른건데 그걸 낮춰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마음건강 분야 내 직업별 갈등)

> 상담실무자와 정신과 전문의랑 상하관계가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센터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0000 대상자를 수천 명 만나온 저희 실무진들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사례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업무가 많이 달라요. 제 생각엔 정비사와 운전자 차이 같아요. 정비사는 자동차 특성과 문제에 대해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운전 스킬은 운전자가 더 전문인 것 같거든요. 자동차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이런 조언이 적절하지 운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운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거지만 경기장 트랙에서 전문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건데 그걸 공인하는 면허가 없다 보니까 다들 할 수 있는 것처럼 운전사에게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무시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음건강 분야 내 직업별 갈등)

심리상담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부족

심리상담 관련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아 심리상담에 대한 이해가 적은 관리자가 심리상담사들의 상사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상담 전공자가 아닌 관리자 또는 운영자들 역시 참고할 수 있는 직무 규정이나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업무 내용이 심리상담사로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거나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국가에서 정책을 운영하거나 기관을 운영하는 주무처에서 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지 못해요. 그런 상태로 업무를 지시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상담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 사업이 운영만 잘 되면 되고 눈에 띄게 드러나는 성과만 있으면 되니까. 저도 제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은 더 (직무 규정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요청하는 거예요 경계선 없이. 그리고 평가는 00률, 00률 같은 정량적인 것으로만 해버리고. (심리상담 직무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부족, 참여자 2)

심리상담사로서의 정체성 혼란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의 '뿌리'가 되는 심리상담 관련 모법이 존재하지 않고, 그로 인해 명료한 직무 및 역할 규정이 공유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곤 한다고 보고하였다.

마음건강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심리상담사가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 정말 이상했어요. 상담한다고 하면, 상담? 우리도 하는데?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도, 임상심리사도, 정신과 전문의도 모두 하는데, 그럼 너희의 정체성은 뭐야? 너희의 전문성은? 이렇게 물을 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심리상담사로서의 정체성 혼란)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이 일을 과연 내가 해야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건가 고민을 하다보면 자부심도 낮아지고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고... (심리상담사로서의 정체성 혼란)

지난 번에는 0000가 사회복지 기관으로 편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나마 우리가 사회복지사 호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면서 진지한 고민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모두 행정보고를 해야하냐고 하면서요. 결국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상담의 정체성이 퇴색될 우려가 있고, 동등하게 서로 협업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게 상담의 정체성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현행 유지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죠. (심리상담사로서의 정체성 혼란)

4-3) 영역 3 : 심리상담사법(가칭) 제정 및 그 효과에 대한 인식

영역 3은 참여자들이 마음건강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면서 심리상담사법 제정 및 그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나타낸다. 모든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예, “심리상담이 현대사회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법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라서, 없는게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상담자든 내담자든 누구를 위해서든 꼭 있어야 하는거죠.”), 심리상담 관련법 마련이 가져올 기대효과를 개진하였다. 심리상담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이 확충’될 것으며, 이로 인한 기대효과들을 심리상담사, 마음건강 분야, 내담자 등 세 주체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3개의 상위범주, 11개의 하위범주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표 2-10〉에 제시하였다.

〈표 2-10〉 영역 3: 심리상담사법 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범주	하위범주	
내담자	양질의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심리상담서비스 전문성 확충
	보호장치 마련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회복	
심리상담사	무자격/비전문적 상담행위에 대한 제재 가능	
	고용 불안정성과 처우개선	
	심리상담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심리상담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 향상	
마음건강 분야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 담당	
	협업의 활성화	
	마음건강 전문가들의 위상 강화	

4-3-1)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 확충

모든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 확충'을 심리상담사법 제정으로 인해 가장 기대되는 긍정적 인 결과로 보고하였다. 심리상담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필연적으로 심리상담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며, 심리상담사법의 궁극적 목표 또한 심리상담의 전문적 수준 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 확충'은 법제화의 명확한 결과로써,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지 않고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아래에서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 확충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세 주체(내담자, 심리상담사, 마음건강 분야)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내담자

양질의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모든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법 제정으로 인해 내담자들이 양질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것이 가장 의미있는 법제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법 제정이 심리상담 전문가 스스로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담자 및 잠재적 내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무게 중심을 실어 보고하였다.

> 실제로 전문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양질의 상담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내담자들도 시간과 돈을 내어 절실한 마음으로 오는 건데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비전문적 상담사 만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효과성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양질의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보호장치 마련

그동안 심리상담사법의 부재로 인해 비윤리적, 비전문적 상담행위를 제재하기도 어려웠지만, 내담자가 취약한 상태에서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내담자를 구제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나 지침이 빈약하였다. 심리상담사법이 제정된다면 내담자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참여자들은 예상하였다.

> 내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훨씬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 내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을 구제할 절차나 기준도 세워질 수 있구요. 법이라는 것이 갖는 한계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기능은 무언가의 근거가 되어준다는 점이잖아요? 나는 이 부분을 보장받지 못했어,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었네, 내가 지금 피해를 입은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이것을 해야하는 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보호장치 마련)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회복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법 제정으로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이 확충되면 심리상담 분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던 심리상담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면 내담자들은 불안을 낮추고 전문적인 도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상담이 받고 싶어도 어디를 가야할지 잘 모르겠고, 누가 전문적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비용문제에서도 걱정되고. 내담자 입장에서 보면 심리상담의 효과는 정말 느린 거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내가 어디가서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뭘 믿고 가서 거기에 그 돈을 투자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전문성을 신뢰를 할 수 있게 되고 덜 불안해지면 상담효과도 상담이용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회복)

□ 심리상담사

무자격/비전문적 상담행위에 대한 제재 가능

모든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법 제정을 통해 무자격/비전문적 상담행위와 무분별한 자격증 난무와 심리상담소 난립 등을 제재하여 전문성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제재 기준과 방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제언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게 심리상담소의 난립 막을 수 있고, 무자격자나 이름만 자격자인, 실제로는 소양이 너무 부족한 분들이 너무도 쉽게 상담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걸러낼 장치가 생긴다는 건 그만큼 안정감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무자격/비전문적 상담행위에 대한 제재 가능)

고용 불안정성과 처우 개선

심리상담사들에 대한 고용 불안정성 및 열악한 처우는 그들의 직업적 삶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법 제정을 통해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개선되고, 법적 보호장치 없이 상담 활동을 해왔던 심리상담사들의 기본권이 보장받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앞서 기술한대로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들의 고용 및 처우 문제는 심리상담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내담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내담자를 위해서라도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 (법 제정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역량이나 기능수준에 맞는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구요. 많이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주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이 엄청난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용 불안정성과 처우 개선)

심리상담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참여자들은 심리상담법 제정을 통해 심리상담의 정의나 역할, 직무설정 등이 명료해지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므로 심리상담사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자신의 직업과 역할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상담사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의사는 이런 집단이고 간호사는 이런 집단인데 상담사 집단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지킬거라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거니까 대중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저 스스로도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상담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심리상담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 향상

면허 형태의 법령 마련을 통해 심리상담사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사회적 공인을 받을 수 있다면,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에게 보다 당당해질 수 있고 동시에 책임감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공신력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 수련과 훈련을 받아왔어도 난무하는 자격증과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꺾여 있었으나, 법제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회복하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고취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 법령이 마련되면 일단은 내담자들한테 당당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법적 근거 내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 거고. 동시에 대중에게도 면허 형태의 자격증이 홍보된다면 일반 대중들이 우리 직군을 평가하는 정도, 기대하는 역할 등이 더 강화될 것이니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해요. (심리상담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 향상)

□ 마음건강 분야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 담당

참여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마음건강 서비스 관련 사업조차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 한정되어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매우 염려하였는데, 심리상담사법이 마련되면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마음건강 분야에 지속적으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였다

공공서비스로서 상담이 가지는 중요성이 정말 크잖아요.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요. 법이 제정되면 상담사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 담당)

협업의 활성화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법 제정을 통해 심리상담사의 직무가 명확해지고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이 갖추어진다면 심리상담사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향상되면서 마음건강 분야 전문가들 사이의 협업과 연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청소년 대상 심리상담서비스에서는 CYS-NET의 중요성과 같이 마음건강 전문가들 간 촘촘한 연계망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리상담사법 제정을 통해 협업이 활성화되면 마음건강 분야의 각 전문가들은 자신의 고유한 전문적 역할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역할 분담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전문가들의 과다했던 업무량을 줄이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로 너무 바쁘거나 환경적 한계 때문일 때도 있지만, 서로 낮춰보거나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업이 잘 안되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법령이 마련되면 그 직업에 대한 신뢰도나 권위가 높아지고, 수련이 체계화된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전문성 문제도 해결되면서 전반적으로 협업이 활성화되고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협업의 활성화)

그동안은 직무가 불분명하니까 역할분담이 잘 안되고 그냥 주어지면 다 하는 거였잖아요. 자신의 업무가 명확해지면 분업화가 잘 되고 그러면 협업도 잘 되는 건데. 의료계에서도 약은 약사에게 진단은 의사에게 분업화가 된거잖아요. 이게 잘 되면 각자 전문성에 몰입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이 편해진다고 해야할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대로 상담전문가는 상담전문가대로 안전한 환경에서 각자의 역할을 더 집중해서 충실하게 하게 되는 거죠. (협업의 활성화)

저는 정말 협업하는게 시너지가 있구나 느껴져요. 예를 들어 성격문제가 깊으신 분이면 사실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진행속도라든가 효과가 훨씬 더 좋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권유를 하고 함께 협업을 좀 하면서 보면 훨씬 예후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협업의 활성화)

훨씬 낫죠. 만약 심리상담 전문가 과정이 충분히 정신치료 할만하다고 보이고 면허 자체를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교육받고 수련받고 한 경우라면 당연히 더 신뢰가 가니까 연계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테고. (협업의 활성화)

마음건강 전문가들의 위상 강화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사법 제정을 통해 마음건강 전문가들의 사회적 위상 또한 함께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마음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인식 및 처우는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심리상담법이 제정되고 심리상담 분야의 질적 수준이 관리된다면 마음건강 분야에 대한 가치 또한 재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 전반적인 비약물적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위상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파생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전문의 자격증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진료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상담서비스 제공자들의 질 관리를 통해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로 인식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더 나은 인력들이 우리 직업 시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전문성과 인식이 더욱 향상될 수 있고... (마음건강 전문가들의 위상 강화)

4-4) 영역 4 : 심리상담사법(가칭)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

영역 4는 심리상담사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요소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나타낸다.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면허 및 자격 제도, 윤리강령, 전문직 단체 등 다양한 요소들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여 〈표 2-11〉에 제시하였다.

〈표 2-11〉 영역 4: 심리상담사법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

상위범주	하위범주
정의/역할 및 자격	상담의 정의와 역할 직무 범위와 한계 직무역량 평가(정성적 평가기준 포함)
	수련 수련감독
	자격기준 보수교육 필수화
면허와 제재기준	심리상담소 개업 제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
	예외 조항, 제재 및 처벌 기준
윤리강령	상담사의 권리와 의무
	구체적 매뉴얼 마련
처우	타당한 급여체계 마련 의료보험
전문직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기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 직업군 간 교류를 방해하는 폐쇄적 조항 제외 협업시스템 확충 치료와 상담의 차이

정의/역할 및 자격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에 대한 정의와 역할 규정에 대한 합의와 직무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에 대한 정의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어”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정의와 역할규정이 저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상담경험도 없는 일반인들은 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담에 대한 각자의 요구와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전문적 직무의 영역과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직무평가라든지 직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보다 명료화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부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의 복합적인 특성상 정량적 평가 외에도 정성적 평가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심리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수련 기간, 기관,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심리상담사와 상담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열정페이로 채워지는 수련기간의 상담수행 활동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적절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격 취득 이후의 전문성을 점검할 수 있는 보수교육의 필요성도 필수요소 중 하나로 강조되었다.

>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심리상담이 무엇이고 심리상담사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역할이 정말 잘 정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수련을 받는다는지 하는 것들이 꼭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상담자들에게도 중요하고 다른 분야 사람들이나 내담자에게 모두요. (정의/역할 및 자격)

면허와 제재기준

참여자들은 면허 형태의 법령 마련으로 난립하는 심리상담소의 무분별한 개소를 제한하고, 무자격/비전문적 상담행위를 제재하는 등 최소한의 자격과 전문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진단서를 작성할 때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 제도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격 기준에 대해 매우 섬세하게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고, 자칫 누군가를 배제하는 배타적 조항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누군가를 제재하고 처벌한다는 것에는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집단에서 권위를 가져가 “권력으로 휘두르는 병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최소한 법으로 이 자격을 공인해주고 윤리적으로나 행위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들, 문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격정지 몇 년 이런 것 있잖아요. 개업을 함부로 열 수 없게 제한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면허와 제재기준)

윤리강령

조항 내용으로 윤리 강령 또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언급되었다. 특히 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었는데, 다중관계에 대한 내용, 치료 시 적절한 프로토콜을 어떻게 지키는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내용 등 심리상담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과 위반 시 처벌 방법,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되었다.

>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요. 비밀보장이라든가 이중관계라든가 심리검사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 이런 대표적인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사소해 보일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정말 사소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매 상황마다 쉽지 않고. 윤리적으로 가능한 것, 안되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집어넣어 줘야지 상담자들도 지켜야 할 기준이 분명해지고 또 다른 집단의 이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윤리강령)

기타

그 외에도 직무능력평가에 의한 적절한 임금/보상체계 마련, 이익을 대변하고 응집력을 키울 수 있는 협회 관련 조항, 보험 및 보호체계 마련, 협업 시스템 확충 등을 필수요소로 보고하였다. 또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심리상담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되 직무간 교류를 방해하는 폐쇄적 조항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참여자는 심리상담사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할 때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사명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첨언하였다.

>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기준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 너무 중요하고 이걸로 전문성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건 반드시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가는게 아니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왔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 사람한테 임상선생님이 거친 그 과정을 똑같이 적용해서 수련을 몇 년 받고 이런 것 다 하라고 하면 사실 하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항상 뭔가를 배척하고 자신만의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꽁꽁 싸매고 자기들끼리 하려는 그런 집단은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잘 안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 꼭 취해야 할 것은 가져가면서 허용해줄 부분은 허용해줘야지 더 발전할 수 있는 집단이 되지 않을까.. (엄격하되 포용적인 체계마련)

(3) 소결

본 절에서는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과 마음건강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인 응답자의 98.1%인 1,578명이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심층면접에 참여한 마음건강 분야 전문가들 모두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국민들은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무분별한 자격증의 범람과 표준화되지 않은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으며, 비전문적, 비윤리적 심리상담 제공으로 인해 내담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마음건강 전문가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내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매우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음건강 전문가들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을 형성하는 내담자들의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사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집중하였으며, 국민들의 심리적 복지와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로서 심리상담사들이 그 권리와 의무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결국은 내담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심리상담사법은 비단 심리상담사 집단의 권익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심리정서적, 환경적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그것을 극복해 가는데 있어서 심리상담사법의 부재는 마음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과 촘촘한 연계망을 만들지 못하여 서로 간 불신과 갈등을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각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내담자들을 위해 연계하고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사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마음건강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마음건강 분야 발전의 주추를 놓기 위해서도 심리상담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종합하면,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난무하고 심리상담소가 난립하여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상담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과 유관직종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심리상담사법은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제정되어야 하며, 심리상담사 및 마음건강 전문가들의 '뿌리'를 굳건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상담사 제도 정책 및 입법추진 경과 및 현황

다음에서는 현행법 중 심리상담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심리상담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상담과 청소년상담사 관련 법령 내용과 입법추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행법 중 심리상담과 관련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에 따라 정리하고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행법 중 심리상담과 관련한 법률은 총 101개로 법무부(22개) 보건복지부(20개) 여성가족부 (14개)의 순으로 관련법률 순서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전문기관, 전문인력이 정리되어 있으며 전문기관과 인력의 자격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표기하였다(표 3-1). 총 101개의 법률 중 단 74개의 법률만이 전문기관을 명시했으며 그마저도 전문기관만 명시해 두었을 뿐 전문기관의 업무나 전문인력의 자격이 명시된 기관의 수는 총 99개의 기관 중 단 43개의 기관뿐이었다. 이는 국민의 심리 건강을 위한 법률들에 제한점을 보여주는 현황으로, 법률의 부재 탓에 자칫 비전문가나 부적격한 기관들이 국민의 심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학교상담사 법률과 관련하여 학교상담사 배치와 자격 관련 법안을 알아보았다. 전문상담교사 1급과 2급의 자격은 어떻게 다르고 이수해야 하는 과목과 과정들을 서술해놓았다. 황준성 외(2011)에 따르면,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법정 교원이지만 교과 영역을 담당하는 '정교사'와는 달리 '상담이라는 특수한 분야를 담당하는 교사'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교사나 사서 교사와는 달리 역할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은 제정된 바가 없다. 즉, 간호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사서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그 자격·직무·책임 등에 대하여 자세한 규율이 이루어지나, 상담전문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체계적인 법률적 규율(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그 자격·직무·책임 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즉, 전문상담교사에 대응되는 심리상담 전문가에 대한 법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상담법이 제정되기 전에 상담전문가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는 것이 법률의 체계상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상담사 관련 법안으로는 청소년 기본법이 있었으며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 관련시설이나 학교에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기준이나 이수과목등이 명시되어있다. 청소년상담사는 3개의 급수로 구별되며 각 급수별로 이수해야하는 과목과 자격기준이 다르다. 청소년상담사 선발현황을 보았을 때 매년 청소년상담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문상담교사와 청소년상담사 모두를 포괄하는 공통의 모법을 지니지 않고 학교상담은 「초·중등교육법」 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배치기준과 자격이 명시되어 있고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배치기준과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다음 장에 걸쳐 상세히 제시되는 심리상담관련 법률을 보면 상담과 관계된 소관부처가 22개에 달하며 구체적인 상담기관과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법률들이 대다수이다. 이는 상담과 관련한 기본법으로서의 모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0년도에 국민교육법(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함)에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학교상담만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법령은 2014년이 되어서야 마련되었다. 나아가 학교상담법에 앞서 2001년 심리사법(Psychologists Acts, 2001)이 만들어져서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모법이 먼저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상담자 혹은 청소년상담사를 위한 독자 법령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보건교사), 사서(사서교사), 영양사(영양교사)의 자격·직무·책임 등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한 「의료법」, 「도서관법」, 「국민영양관리법」과 같은 심리상담사(학교상담인력, 청소년상담인력, 부부가족상담인력)를 위해서는 심리상담사 관련 모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심리상담 관련 법률

심리상담과 관련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에 따라 정리하고 그 내용과 명시된 기관 등을 살펴보았다. 표 3-1)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국내 현행법령 중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의 주요어를 활용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에 따라 정리해 놓은 것으로 상위법 체계에 따라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 (총리령, 부령)을 포괄한다.

김인규, 손요한 (2019)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상담을 명시한 총 법률 수는 101개로 그 중 상담기관을 명시한 법률은 총 74개이다. 상담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법률은 27개로 법령 지원대상을 위한 상담활동은 명시하였으나 그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기관명이 언급되지 않았다.

일례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은 "국가는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 외에 진로,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담을 법령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관과 상담사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제대군인이 법령에 따라 상담을 받으려 할 때 어디서,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74개의 법률 이외의 27개 법률에서 상담지원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상담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관명과 상담지원을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 담당자들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74개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담기관은 총 99개로 이 중 절반 이하인 43개의 기관만이 정확한 기관명과 업무, 전문인력 자격이 명시되었다(표 2-12). 나머지 56개의 기관은 기관명만 제시되어 업무나 인력 자격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 법령에 따라 소속부처에서 상담기관을 설치 혹은 위탁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상담사의 자격조건 및 업무 분담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때문에 적절한 자격을 지니지 않은 인력이 투입될 위험성이 크다. 또한, 민간기관이나 병원에 위탁하는 경우, 이러한 시설을 관리해야 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과 정확한 업무가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2〉 심리상담 관련 법률

번호	소관부처	법률 수	내용	전문기관	전문인력	자격조건 명시[4]
1	법무부	22	범죄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담 지원	보호시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심리상담실, 정신의료기관	전문상담인, 사회복귀업무교도관, 정신건강전문요원, 진술조력인	○
2	보건복지부	20	노숙인, 장애인, 영유아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지원	지역자활센터, 긴급지원기관, 노숙인자활시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	노인복지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장애인복지상담원	○
3	여성가족부	14	가족, 여성,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상담 지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 방과 후 지원센터	상담원, 전문인력, 가족친화관련 전문인력, 종사자	○
4	고용노동부	10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 청년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을 위한 상담 지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평등상담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업안정기관	전문인력, 민간직업상담원, 상담전담자	○
5	교육부	8	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상담, 진로교육,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예방등의 상담 지원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 교원치유센터, 국가진로교육센터, 학교상담실	교원, 전문상담교사,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
6	금융위원회	6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상담 지원	×	×	×
7	인사혁신처	3	공무원 복지를 위한 상담 지원	고충심사위원회, 공무원상담센터, 심리상담기관	고충상담원	△[5]
8	문화체육관광부	3	게임과 도박중독과 관련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상담 지원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	×
9	국방부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기본으로 국군포로지원, 군수용자처우를 위한 상담 지원	×	외부전문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성고충 전문상담관	○

번호	소관부처	법률 수	내용	전문기관	전문인력	자격조건 명시[4]
10	행정안전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구호를 위한 상담 지원	직업안정기관, 국제고등학교	직업상담원, 전문상담교사	△[6]
11	국도교통부	2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 지원	직업재활시설	×	×
12	경찰청, 해양경찰청	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를 위한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의료기관	×	×
13	소방청	1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소방전문치료센터	소방보건의	○
14	국가보훈처	1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	×	×	×
15	통일부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정착적응시설,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
1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인터넷 중독자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센터장, 상담실무업무직원	×
17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1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상담 지원	공동체복합시설, 안산트라우마센터, 단원고등학교 전문상담기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
18	국민권익위원회	1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상담소, 의료기관	×	×
19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의 살처분 시행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상담 지원	의료기관	×	×

4) 상담기관의 자격과 상담인력의 자격명시 여부를 표기함. (○= 둘 다 명시, △= 둘 중 하나만 명시, ×=명시되어 있지 않음)
5) 전문상담기관은 명시하고 있으나,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의 고충상담원을 제외한 구체적인 인력과 자격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6) '제주특별자치도시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기관과 인력을 명시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호법 시행령'은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 2-13〉 상담기관 내용 분석

구분	기관 수	구분	기관 수
법률에 명시된 상담기관	99	기관명, 업무, 인력 자격명시	43
		기관명, 업무, 인력 자격명시 안 함	56

(2) 전문상담교사 관련 법안

우리나라에서 학교상담은 1950년대 미국교육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미국의 교육철학, 교육방법 등을 소개하며 논의가 시작되었다(김진희 외, 1996). 교도교사제도, 교도주임제도, 교육청 단위의 상담제도를 거쳐 '전문상담교사'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초·중등교육법」 제정된 이후이다. 학교상담의 법제화 과정은 다음 〈표 2-14〉와 같다.

우리나라의 현행법령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관련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의 제 19조의 2(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다. 「초·중등교육법」 제 19조의 2에 따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에 따르면 학교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둬야 하며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들의 상담업무를 맡을 것이 명시되어 있다.

〈표 2-14〉 학교상담 제도화 연혁

제도	내용
교도교사제도 (1957)	생활지도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학교 전체의 교도활동을 조직 및 조정할 생활지도 담당 전문교사를 배치하는 제도로 설립
	배치와 시행이 의무가 아닌 학교장의 결정에 따르는 권장사항
교도주임제도 (1972)	중학교는 12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일 경우 교도주임을 두도록 함(1986년 개정)
	학교교육의 활동에서 외형적으로나마 상담이 전문적인 활동임을 공식화함
교육청 단위의 상담제도 (1990)	시도교육청 단위의 조례에 의해 15개시 시도교육청의 교육연구원에 교육상담부와 진로상담부 신설
	상담에 필요한 연구와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양성과 배치를 통해 단위학교 상담실 지원
전문상담교사 제도 (1997)	초중등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교도교사에서 전문상담교사로 명칭 변경
	전국의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설치
	초중등교육법 개정(2004)을 통해 순회상담교사제도 도입

〈표 2-15〉 전문상담교사 배치 관련 법안

법령	조항	내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 (전문상담교사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의 제 21조와 「교원자격 검정령]의 제 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격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1급과 2급의 자격은 제 21조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수과목과 학점은 제 12조 2와 관련한 [별표 4]에 명시되어 있다.

〈표 2-16〉 전문상담교사 자격 관련 법안

법령	조항	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원자격 검정령]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 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2013. 3. 23.〉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수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18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42학점 이상

〈표 2-17〉 [별표 2] 전문상담교사 자격

자격	내용
전문상담교사 1급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전문상담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표 2-18〉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 제3항)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이수	
		1급	2급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28학점 이상 (14과목 이상)

비고: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위의 자격을 가진 학교상담사들은 현재 아래 〈표 2-19〉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2010년 기준 배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단 2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며 비율은 점점 더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고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 역시 20%가 되지 않아 더 많은 수의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교사를 확보,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유형근(2002)는 학교상담 체제가 지나치게 문제해결 중심이며 학생의 발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비계획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김인규(2009)는 학교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이 전문상담교사뿐만 아니라 학급담임, 상담부 교사, 생활지도부 교사 등으로 다양하여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갖지 않고도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변호사나 의사처럼 면허제도가

아니다보니, 법령에 면허독점권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학교상담에서 일반적인 면담과 지도와는 상담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전문상담교사의 명칭과 활동에 대한 독점적 지위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김인규, 2009).

〈표 2-19〉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0)

구분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학교(전문상담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학교수	180	5,829	3,106	2,225	11,160
배치수	307	2	199	375	576
배치율(%)	85.0	0.0	6.4	16.9	5.2

주: 2010.7.15. 기준

(3) 청소년상담사 관련 법안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는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적·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수행되었고 2004년 대폭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은 처음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에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또한, 2005년에 시행된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을 통해 청소년상담사가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김창대 외, 2013). 청소년기본법을 기반으로 청소년상담자의 급별 자격요건과 이수 과목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청소년상담사의 수가 증가하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급수별로 이수과목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으며 자격제도의 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법령이 상담분야 확장 및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상담실무 경력을 응시자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이창호 외 2011),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2013)은 등급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3등급의 현행 자격제도를 2등급 체제로 변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처럼 국가면허의 형태는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가능하지만 현행법령의 자격증제도는 자격증이 없이 관련 직종에 근무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도 현행법상 처벌과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큰 단점이 있다(김정진, 2016). 또한, 청소년상담사 관련법안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으로 상담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의 법적 근거로 청소년기본법이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영근 외 2012).

〈표 2-20〉 청소년상담사 법제화 변혁(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내용
청소년기본법(1991)	청소년정책을 위한 근거로써 청소년육성법을 개정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
청소년기본법(2004 개정)	제23조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
	제24조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해 학교가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 처음으로 명시
	제42조 청소년상담원의 설립 명시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2005)	청소년복지법과 함께 청소년상담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틀 마련

〈표 2-21〉 청소년상담 관련 법안

법령	조항	내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제23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의2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표 2-22〉 청소년상담사 급별 자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별표3)

등급	응시자격기준
1급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표 2-23〉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과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면접
	선택	비행상담·성 상담·약물 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필기시험	면접
	선택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 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필기시험	면접
	선택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표 2-24〉 청소년상담사 자격 현황(국가자격 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조사, 2019)

등급별 / 연도별	1급	2급	3급	전체
2014	15	409	1,558	1,982
2015	52	564	1,531	2,147
2016	39	830	2,141	3,010
2017	88	1,042	1,594	2,724
2018	109	787	1,515	2,411

4. 심리상담 관련 각국의 입법 현황

다음의 〈표 2-25〉에서는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이 법령, 법령의 내용, 자격검정 등에 따라 비교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심리상담 관련 법안이 연방(Federal)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각 주(State)별로 존재한다. 50개 주(State) 중 텍사스(Texas)주의 심리상담 법안을 정리했다. 주마다 법이 다른 미국과는 달리, 독일은 성문법의 대륙법을 따라,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 존재한다(이상민, 2020). 또한, 미국은 면허위원회가 상담사들의 자격, 운영, 징계 등을 담당하지만 독일에서는 법령 자체에 교육내용, 수련시간, 권한, 법령 위반 시 징계 등이 명시되어 있다. 미국은 주(State)별로 심리상담 관련 법의 내용이 다르고 소관 부처가 달라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독일은 국가 전체에 법이 적용되며 심지어 유럽연합(EU) 내에서 통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독일에서 심리치료사 면허를 받았다면, 유럽연합(EU)에 속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심리치료사로서 일할 수 있다(이상민, 2020). 다음으로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심리상담법안을 시행한 말레이시아와 대만, 일본의 법령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1998년에 상담사법(Counselllors Act 1998, Act 580)을 제정하였고 법령 자체에 교육내용, 징계가 명시된 독일과는 달리 면허위원회가 따로 윤리규정과 규칙을 보유하는 형태로 상담사법이 운영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2001년 심리사법(Psychologist Act)를 제정하여 상담 운영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이점은 보건복지부가 심리사법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이며 법 자체에서 임상심리학자와 상담심리학자를 구분하여 자격요건과 역할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의 2018년부터 공인심리사법이 시행 되었으며 문무과학성과 후생노동성에서 공동으로 소관하고 있다. 세부 법령의 내용은 미국과 영어로 법령을 공개한 말레이시아와 대만의 법령을 정리하였다. 법령의 내용 중 상담사의 자격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인 면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면허제도가 아닌 자격증제도인 우리나라의 법령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며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표 2-25〉 각국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 비교

국가	법령	내용	자격관리	비고
미국	전문상담사법[7] (Rules Relating to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professional Counselors)	- 전문상담사의 자격, 전문상담 서비스 정의,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 수혜자 명시 - 전문상담사의 면허위원회의 역할과 직무 등에 대해 기술 - 면허위원회 규정을 통해 상담자들의 자격, 윤리 및 징계에 대해 기술	면허위원회	- 연방법 없이 50개 이상의 주(State)법으로 심리상담사 법령이 규정되어 다른 주로 옮겨서 심리상담을 받거나 할 때 호환성 문제 발생함
독일	심리의 심리치료사 및 아동·청소년 심리의 심리치료사 직업법 (Gesetz über die Berufe des Psychologischen Psychotherapeuten und des Kinder-und Jugendlichenpsychotherapeuten)	- 심리치료사들의 자격, 심리치료 서비스 정의, 심리치료서비스 범위, 서비스 수혜자 명시 - 법령 내에 교육내용 및 수련시간, 권한, 법령 위반 시의 징계 등에 대해 기술	법령	- 심리상담사(Psychological counselor)가 아닌 심리의 심리치료사(Psychological psychotherapist)라는 용어 사용 - 유럽연합(EU) 내에서 통용이 가능하도록 협정을 맺고 있어 유럽내에서 독일의 심리치료사 자격이 통용 가능함.
말레이시아	상담사법 (Counsellors Act, 1998, Act, 580)	- 상담의 정의, 서비스 범위, 면허위원회의 역할 등 규정 - 면허위원회가 따로 윤리규정과 규칙을 보유	면허위원회 (Membership of Council)	- 면허위원회 구성은 복지부, 교육부, 보건부, 이슬람발달부, 공공서비스부서, 행안부에서 각 1명씩, 대학교에서 3명 그리고 6명의 상담전문가로 구성
대만	심리사법 (Psychologists' Act)	- 임상심리학자(Clinical psychologist)와 상담심리학자(Counseling psychologist)를 구분하여 각각의 자격요건, 서비스 범위를 명시 - 상담사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상담사법에 대한 상세규칙 규정	중앙관할기관 (The Central Competent Authority)	- 심리사법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임
일본	공인심리사법 (公認心理師)	- 공인심리사 정의 서비스의 범위, 자격요건, 시험명시 - '일본심리교육센터'에서 자격시험 실시	공인심리사 제도 추진실 (公認心理師制度推進室)	-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관리 - 2018년 4월 공인심리사법 시행 시작

7) 50개 주 중 Texas주의 주(state)법.

(1) 미국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

미국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지구에 상담사자격인증법이 만들어져 있다(김정진, 2016). 우리나라보다 심리상담의 역사가 오래되고 상담을 선도하는 나라인 미국의 법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상담법 제정에 적용할 점을 찾고자 한다. 〈표 2-26〉에 제시된 텍사스주 법령과 다른 50개 주(State)법안 중 대표적인 사례로써 미네소타주의 상담사 법 중 공인상담법과 뉴욕주의 상담사법을 알아보았다. 텍사스 주의 법령은 건강관리직업(Health profession) 법령 내에서 다루고 있으며 면허와 자격기준, 상담면허의 독점권, 자격위원회 등을 명시하였다. §681.92 학업요구조건(Academic requirment)과 §681.92. (수련요구조건)Experience Requirements을 법령을 통해 규정하였다. 또한 §681.141법안을 통해 상담사의 계속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공인상담법은 건강법(Health)내에서 텍사스주와 동일하게 면허와 자격기준, 상담면허의 독점권, 자격검정위원회 등을 명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령 148B. 53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상담사는 국가시험인 NCE(National Counseling Exam)을 통과해야 하며, 이 시험은 국가 상담사 위원회인 NBCC(Natioanl Board for Certified Counselors, Inc)에 의하여 관리받는다(148B.53조 1항 5). 상담 또는 유관분야의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는 상담관련 교육프로그램인증위원회(CACREP: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 Programs) 또는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가 인정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취득해야 한다.

〈표 2-26〉 텍사스 주 공인상담법

상위법	공인상담법	자격기준(면허)
Health Professions	Regulation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681.92 Academic requirment (a) 상담사 면허에 응시하는자는 상담이나 상담관련분야의 대학원 학위가 있어야 한다. (1) 2017년 8월 1일 이전의 지원자격 프로그램을 시작한 학생들은 상담관련분야의 최소 48시간의 교과시간을 이수해야함 (2) 2017년 8월 1일 이후의 지원자격 프로그램을 시작한 학생들은 상담관련분야의 최소 60시간의 교과시간을 이수해야함 (b) 상담관련분야의 대학원학위가 있는 자는 §681.83에 기술된 자격요건들을 만족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식성정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c) 신청이 접수된 날짜 직전 최소 2 년 동안 미국에서 발행 한 LPC(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s)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한 신청자는 실습을 포함한 모든 학업 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간주된다. §681.92. Experience Requirements (a) 전문상담사 지원자들은 반드시 관리감독을 받은 3,000시간의 위원회에서 받아들일만한 인턴경험이 있어야 한다. (b) 관리감독받은 경험은 반드시 최소 1,500시간의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2-27〉 미네소타 주 공인상담법

상위법	공인상담법	자격기준(면허)
건강법 (Health)	CHAPTER 148B. Marriage And Family Therapy, Professional Counseling	148B. 53조 (1) 18세 이상 (2) 좋은 도덕정 성품 (3) 상담 혹은 유사분야의 석사 혹은 박사 학위 졸업자이며 최소 48의 학기시간 또는 72시간의 분기시간을 수강해야 하며 지도감독 하의 700시간 이상의 상담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함 (4) 최소 2000시간의 실습의 슈퍼비전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거나 이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전문실습과정 증거를 제출해야 함 (5) NCE(National Counseling Exam)을 통과해야 하며, 이 시험은 국가 상담사 위원회인 NBCC(Natioanl Board for Certified Counselors, Inc)에 의하여 관리받는다.

〈표 2-28〉 뉴욕 주 공인상담법

상위법	공인상담법	자격기준(면허)
교육법 (Education)	Article 163. Mental Health Practitioners	§8402 3항 (b)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 등록이 되어있거나 부서에서 해당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판단된 프로그램에서 상담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 교육을 받아야 함 (c) 최소 3000시간 이상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슈퍼비전 경험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가 만족할만하며 이사회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d)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만족할만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e) 최소 21세 이상 (f) 좋은 도덕적 성품

뉴욕 주는 텍사스 주와 미네소타 주와는 다르게 교육법(Education) 내에 공인상담사 법인 Mental health practitioners 법령을 두고 있으며 법령으로 면허 기준을 정해두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소 연령이 18세 이상인 미네소타와는 달리 뉴욕은 21세 이상이며 두 개의 주 모두 규정되어 있는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얻을 수 있다. 수련시간은 미네소타주에서 요구하는 슈퍼비전 최소 시간인 2000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3000시간이며 상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뉴욕주는 이사회와 위원회가 따로 있으며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된다(§8406).

〈표 2-29〉 미국 전문상담사 면허 독점권 관련 법령

지역	독점권
텍사스	다음의 경우를 고의로 저지르는 경우 형사범죄(Criminal offense)에 해당한다(503.242항) - 상담면허가 없이 전문상담 실습에 관여한 경우 - 상담면허가 없이 전문상담사나 면허가 있는 상담사의 명칭을 사용했을 때
미네소타	-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거나 148B. 592조에 따라 면허가 면제되지 않는 한 전문 상담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148B.591조 1항). - 148B.50에서 148B.593에 따라 발행된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는 한 “면허가 있는 전문상담사” 또는 “LPC”라는 직책명을 사용할 수 없다(148B. 591조 2항).
뉴욕	- 유효한 면허가 있거나 조항에 따라 면제된 사람만이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정신건강 상담사”라는 직책명을 사용할 수 있고 면허가 있음을 암시하는 직책 또한 면허가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163장 8402)

세 개의 주의 면허독점권을 명시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직종에 종사하거나 상담을 실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텍사스 법령에서는 면허가 없이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직책명으로도 면허가 있는 전문상담사, 정신건강상담사라는 표현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뉴욕법에는 면허가 있음을 암시하는 직책을 쓰면 안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는 상담자격이 법령을 통해 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르다. 세 개의 주에서는 모두 상담자격을 면허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받지 않고서는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상담관련 직종에 근무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담자격은 ‘민간자격증’으로 의사나 간호사처럼 면허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를 갖추지 않은 사람도 자격증만 있다면 상담을 할 수 있다. 더구나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지니지 않은 유사민간자격증들을 내세우며 상담을 진행하는 이부 비전문심리상담사들이 오히려 국민의 마음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이상민, 2020). 상담이 면허제도가 되지 못했던 이유로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상담을 관장하는 독자적인 기본법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미국 상담법령의 면허독점권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마음건강 보호를 위해 상담자격이 면허의 형태로 지정되어야 하며 그를 위하여 독자적인 상담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독일의 심리치료사 법

독일의 경우 제 1조 1항부터 심리정신치료사와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에 대한 독점권을 규정했다. “심리치료사”라는 명칭은 의사, 심리정신치료사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치료사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해둠으로써, 심리치료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보장해 두었다. 자격기준으로는 필요한 훈련과 국가시험 합격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수련 기간이나 조건은 따로 조례로 규정해두었다. 또한, 면허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법령에 따로 명시해 두어서 국민이 자격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심리치료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령으로 EU 회원국 내에서 자격증이 통용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통용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표 2-30〉 독일의 심리치료사 법

법령	자격 기준(면허)	독점권
심리정신 치료사 및 아동청소년 심리정신 치료사 직업에 관한 법률 (심리치료사법 -PsychThG)	**제2조 승인** (1) 제1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면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신청할 때 발급된다. 1. (삭제) 2. 필요한 훈련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3.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성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을 것 4. 건강상의 관점에서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지 않을 것 5.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일어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제1조 전문직** (1) "심리정신치료사" 또는 "정신심리치료사"라는 전문적 직함으로 의료심리치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라는 전문적 직함으로 청소년 심리치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리치료사 또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 직업의 일시적인 행사도 임시 면허에 근거하여 허용된다. 제1문에 따른 전문적 직함은 제1문 또는 제2문에 따라 직업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심리치료사"라는 명칭은 의사, 심리정신치료사 또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독일 면허정지 법령

제 3조 3항. 다음의 경우 면허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형사소송이 시작되었고, 직업 수행에 있어 불성실 또는 불신이 야기될 수 있을 때,
2.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건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건 중 하나가 여전히 충족되고 면허 보유자가 관할 당국이 명령한 공식 또는 전문의료진단을 거부할 때,
3. 면허 소지자에게 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독일어 능력이 없음이 드러낸 때.

해당 조건이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자격이 정지된 심리정신치료사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치료사는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관할 당국은 면허가 정지된 면허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심리정신치료사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치료사가 관할 당국의 결정기간 동안 해당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표 2-32〉 독일 심리치료사 훈련 및 국가시험 법령

훈련 및 국가시험 법령	훈련 법령 조례
제5조 훈련 및 국가 시험 (1) 심리정신치료사 및 아동청소년심리치료사를 위한 훈련과정은 상근 형태로 최소 3년, 비상근 형태로 최소 5년간 지속된다. 이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을 수반하는 실제적인 활동으로 구성되며, 국가시험 합격으로 종료된다. (2) 제1항에 따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요구되어야 한다. 1. 심리정신치료사가 되기 위한 훈련 a) 임상심리학 과목을 포함하여, 학생이 대학기본법 제15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학습과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독일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통과된 심리학 과정의 최종 시험, b)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협정의 다른 서명국에서 취득한 동등한 심리학 학위 또는, c)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이수된 동등한 심리학 대학 학위	(3) 조례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훈련과정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정신치료법에 대한 심층적인 기본지식과 이러한 방법 중 하나에 대한 심층적인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2. 훈련 참가자가 실기활동 중 배치되는 방법, 특이 기간 중 관리해야 할 환자에 대한 점 3. 실기활동은 심리치료가 허가된 의사, 심리정신치료사, 아동청소년심리치료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감독 하에 정신과 임상훈련으로는 최소 3개월, 아동 청소년심리치료 훈련의 경우 심리치료가 제공되는 정신과 외래환자 시설서 최대 6개월, 사회보험기관이 인정한 정신요양시설에서 최소 6개월, 합계 최소 1년 이상 수행된다는 점 4. 이론적 훈련의 총 시간은 최소 600시간 이상이라는 점 5. 실기훈련은 6회 이상의 환자 치료로 최소 600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3) 말레이시아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

말레이시아의 상담관련 법안은 상담사법(Counsellors Act, 1998, Act, 580)으로, 상담사의 정의와 자격기준은 part Ⅳ (Registration of counsellors and practising certificates)에 명시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의 법안을 살펴보면, 면허기준으로 먼저 말레이시아 시민이거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21세 이상이여야 면허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별표2]로 규정된 자격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이 [별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자격을 승인한다면 명시된 자격과 동등하게 본다. 말레이시아는 [별표2]를 통해 자격을 승인하는 대학을 규정하고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위를 규정해두었다. 대학별로 인정되는 학위가 다르며 같은 학위라도 명시된 특정 대학에서만 이수한 학위만 인정된다.

〈표 2-33〉 말레이시아 상담사법

법령	자격기준(면허)	독점권
상담사법 (Counsellors Act, 1998, Act, 580)	24조 (1)항. 말레이시아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획득한 자, 21살 미만이 아닌, 상담자로 등록하기에 적절한 자, [별표 2]의 상담자로서 명시될 수 있는 상담자격 중 하나라도 있는 사람. (2)항. [별표2]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위원회에서 자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별표2]의 명시된 자격과 동등하다. 위원회는 그러한 자격을 지닌 사람을 상담사 등록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22조 (1)항 (a) 상담실무를 하거나 상담사로서 직업을 가질 때 반드시 상담자로써 등록이 되어야 한다. (b) 등록된 상담자(Registered counsellor)는 "등록된 상담자"라는 직업명과 등록된 상담자를 암시하는 직업명을 써야 한다. (c) 등록된 상담자는 등록된 상담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나 카드 또는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1)항을 위반한 자는 3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3조 (1)항.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유효한 실무 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상담자로 활동해서는 안된다. (2)항. (1)항을 위반하는 자는 Part 에 따른 징계 소송에 따른 책임을 지며, 그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보수를 어떠한 법원에서라도 되찾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표 2-34〉 말레이시아 Act 580 [별표 2]

자격 부여기관	이수 학위
University of Malaya	교육학 석사 학위(상담과 지도)
University Kebangsaan Malaysia	심리학 학위(상담)
	문학 석사 학위 (심리상담)
	교육학 석사 학위(상담과 지도)
Universiti Putra Malaysia	교육학 학사 학위(상담과 지도)
	상담학 석사학위
University Teknologi Malaysia	교육학 석사 학위(상담과 지도)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교육학 석사 학위(상담과 지도)
Universiti Sains Malaysia	명예 교육학사
	교육학 석사 학위
	철학 박사 학위(교육학)

말레이시아 법안 역시, 상담사를 면허증 형태의 등록(Registration) 제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등록되지 않은 상담사가 상담업무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놓았고 이를 어길시 3만 링깃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형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실무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상담업무를 했을 때는 징계소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상담서비스에 대한 보수나 수수료를

되찾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떠한 법원에서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면허제도로 운영함에 따라 면허가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상담면허가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면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4) 대만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

대만의 심리상담관련 법안은 심리사법(Psychologists' Act)으로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를 구분하여 법령을 명시해두었고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이며 심리사법(Psychologists' Act)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상세규칙을 규정하였다. 심리사법(Psychologists' Act) 중 심리상담사와 관련한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조를 통해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국가로부터 발행받은 사람을 상담심리사로 규정했으며, 제2조를 통해서는 국가상담심리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자격요건들을 명시했다. 규정된 자격으로는 상담심리학을 전공해야 하고 1년의 인턴기간을 마쳐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제5조와 6조를 통해서 상담심리사 면허에 대한 독점권을 명시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상담심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원회로부터 자격이 취소되었거나 법적 구속 경력이 있는 사람은 상담심리사로 활동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두었다. 이러한 조항은 법적으로 면허가 있는 상담심리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며, 법적 구속경력이 있거나 면허가 취소된 자들은 "상담심리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무분별하고 비전문가들이 국민의 마음건강에 해를 끼칠 수 없게 보호할 수 있다.

〈표 2-35〉 대만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

법령	자격기준(면허)	독점권
심리사법 (Psychologists' Act)	**제1조**. 중국 시민이며 상담심리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발행받은 사람을 상담심리사로 규정한다. **제2조**. 상담 심리학 전공으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공립 혹은 사립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공부했거나 분과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며 석사학위를 취득함, 인턴과정을 최소 1년동안 수료해야 한 이후에 상담심리학자 자격에 참여할 수 있음.	**제5조**. 상담심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상담심리사라는 직책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 다음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은 상담심리학자로 활동해서는 안된다. 상담심리사자격이 취소되었거나 무효가 된 경우 고의적인 사업관련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표 2-36〉 대만법령에 규정된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업무 비교

직책	업무
심리상담사	1. 일반적인 심리상태와 기능에 대한 사정. 2. 심리적 발달의 문제이나 장애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3. 인지, 정동, 행동장애와 이상행동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4. 사회적응 장애와 이상행동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5. 신경증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6. 중앙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다른 종류의 심리치료. * 5호과 관련한 심리치료는 정신과 의사에 의하여 내려진 진단과 진찰과 더불어서 수행되어야 한다.
임상심리사	1. 일반적인 심리상태와 기능에 대한 사정. 2. 정신증과 뇌 정신기능에 대한 심리 평가. 3. 심리적 발달의 문제나 장애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4, 인지, 정동, 행동장에와 이상행동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5. 사회적응 장애와 이상행동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6. 신경증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7. 정신증이나 뇌 정신기능에 대한 심리치료. 8. 중앙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다른 종류의 심리치료. * 6,7호와 관련한 심리치료는 정신과 의사에 의하여 내려진 진단과 진찰과 더불어서 수행되어야 한다.

대만 법령의 특징은 법령으로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기 다른 자격요건과 그에 따른 명칭을 다르게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두 심리학자들이 맡은 업무 또한 구분해놓았다. 법에 명시된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심리적인 발달장애나 신경증, 인지, 정동, 행동 장애, 사회 적응장애를 담당하지만 임상심리사는 추가적으로 뇌정신기능에 대한 평가와 심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를 구분하여 업무와 자격요건을 명시해 놓은 대만의 법안은 국민들이 상담을 받고자 할 때 두 상담사의 업무 차이를 보고 어떠한 상담사에게 찾아가면 될지 알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전문성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5) 일본의 공인심리사법

일본의 공인심리사법은 법령으로 '공인심리사'의 정의와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인심리사시험'인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공인심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법령으로 명시해 두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심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해두었다. 또한, 공인심리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규정해두어 무분별한 공인심리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표 2-37〉 일본 공인심리사 자격 기준 법령

법령	자격 기준(면허)
공인심리사법	**제4조** 공인심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는 공인심리사가 될 자격을 가진다. **제7조**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1. 학교교육법(쇼와22년 법률 제26호)에 따른 대학 (단기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리학 기타 공인심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목으로 문부과학성령·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 및 졸업하고, 동법에 따라 대학원에서 심리학 기타 공인심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목으로 문부과학 성령·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 기타 그에 준하는 자로서 문부 과학성령·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2. 학교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기타 공인 심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목으로 문부과학성령·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기타 그에 준하는 자로서 문부과학성령·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시설에서 문부과학성령·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의 업무에 종사한 자 3. 문부과학대신 및 후생노동대신이 전2호에 열거 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자

〈표 2-38〉 일본 공인심리사 자격 제한 및 독점권

자격제한	독점권
(결격 사유)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심리사가 될 수 없다. 1.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률의 규정 기타 보건의료, 복지 또는 교육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명칭의 사용 제한)** **제44조** ① 공인심리사가 아닌 자는 공인심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것의 외에 공인심리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심리사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심리사의 명칭과 그 명칭 중 심리사라는 단어의 사용정지를 명령받은 자로서 해당 정지를 명령받은 기간 동안 공인심리사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명칭 중에 심리 사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소결

이번 장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심리상담사 국가자격과 이를 규정하는 법령의 부재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더불어, 이와 관련한 심리상담 수요자인 국민들과 심리상담 유관직종 종사자들의 인식과 의견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등 심리상담사의 자격을 법령으로 규정한 국가들의 사례 또한 살펴보았다. 심리상담사법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크게 내담자의 안전보장 문제, 국민들의 가중된 혼란, 마음건강 관리에 있어서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유관 마음건강 전문가들의 경우,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내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실태를 매우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심리상담사법이 국가 차원에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단일 분야를 넘어 마음건강 분야 전체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주추를 놓기 위해서도 심리상담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외의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이들 국가들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 문제들을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 제도와 법률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의 법령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심리상담사 제도를 면허증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령에 규정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마치 면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직책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심리상담을 받기 원하는 국민들이 어떤 심리상담 기관, 심리상담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점권과 더불어 자격제한 규정 또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형사소송이 시작된 사람 등의 상담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하여 내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규정을 어기게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 또한 존재하여 범법자가 상담기관을 개소하거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리상담의 범위, 상담사의 자격 및 면허규정 등을 법률로써 명확히 정하게 된 결과, 미국과 독일의 경우 의료보험을 통해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도 심리상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심리상담이 전적으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례와 법제화를 통해 국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면허 형태의 심리상담사법 제정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심리상담사에 대한 이론적 논거

1. 심리상담과 심리상담사

현재 한국에서는 심리상담 분야 뿐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에서 상담이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심리상담 장면 외에서의 상담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식을 덜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 흔히 상담이라고 한다. 예컨대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상담이나 투자 전문가가 제공하는 재무, 투자상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심리상담의 영역에서 상담은 이와 크게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심리상담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역할을 넘어 심리학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생활상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에게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여러 삶의 영역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최윤미, 2003).

그러나, 오랜기간 심리상담은 그 통합된 정의를 갖지 않은 채 학계에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예: Nassar-McMillan & Niles, 2011; Sweeney, 2001). 특히 심리상담의 분야가 학교상담, 청소년상담, 가족상담 등으로 분화되어감에 따라 심리상담의 정의는 그 일관성을 잃어갔다. 심리상담의 정의가 다양해질수록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특정 집단의 관점만이 반영된 정의가 생겨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계 외부의 대중들에게 심리상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는 산하에 있는 31개의 학회와 모여 보다 통일되고, 간결하면서도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심리상담의 정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20/20: A Vision for the Future of Cousnseling; Kaplan, Tarvydas, & Gladding, 2014). 반복된 논의와 투표를 통해서 마침내 미국상담학회는 심리상담을 "다양성을 가진 개인, 가족, 집단이 마음건강, 안녕, 교육, 사회생활 등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 과정과 관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심리상담의 통합적 정의가 도출된 것은 몇가지 의의를 가지는데, 첫째는 심리상담의 여러 하위분야 전문가들이 공통된 정의 하에서 일관되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이다(Sheeley, 2008). 둘째로, 간결한 정의를 통해 심리상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심리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상담학계 외부의 사람들이나 상담의 실제 수요자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다(Kaplan, Tarvydas, & Gladding, 2014).

심리상담이 여러 가지 분화된 정의로부터 통일된 정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미국의 사례처럼, 한국에서도 심리상담을 최초의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 그 정의가 분화로부터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에 심리상담이 학문분야로서 도입된 것은 1957년 미국 교육사절단의 카운슬링 워크샵 및 교도교사 연수회를 통해서였으며(이형득, 1992),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 학생지도연구소와

같은 기관이 설립됨으로써 상담교육 및 상담자 양성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이후 일반 국민들의 상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면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인력의 수와 상담기관의 수는 해를 거듭하며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 및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심리상담사의 입지는 크게 확장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 심리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나 심리상담사의 역할 등을 확립하는 것에 소홀해왔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한국의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자신의 역할과 직무를 감지하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뿐이었다(최윤미, 2003). 청소년상담, 학교상담, 가족상담 등 심리상담의 하위분야 발달에 따라 각 분야별로 상담을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심리상담'의 통합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여러 연구자들은 심리상담을 보다 본질적으로 정의하고 심리상담사의 역할을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예: 권수영, 이신형, 황진태, 손재구, 2016; 최윤미, 2003; 최해림, 김영혜, 2006).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점차 심리상담에 대한 정의와 심리상담사의 역할은 구체화 되어갔으며, 마침내 2015년에 이르러 심리상담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포함되게 되었다. 현재 심리상담은 NCS 중분류 '상담', 소분류 및 세분류 '심리상담'에 포함되어 있다. NCS에서는 심리상담을 "심리사회적 문제 해소 및 성장을 위하여 전 연령의 개인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전문적 상담관계에 기초하여 심리교육 및 예방, 심리치료 등을 수행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당면한 심리적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앞으로 더 나은 심리적 건강을 영위하기 위한 성장'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심리상담은 내담자의 문제해결에서 나아가 총체적(Holistic) 성장을 다루는 것으로, 극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인간서비스(Human service)의 한 영역이다. 따라서 어떠한 자격을 가진 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가는 내담자의 성장과 마음건강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충분한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제공할 경우 오히려 내담자는 현 상태보다 퇴보하거나, 마음건강의 저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심리상담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보니 대부분의 심리상담이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으며, 정부의 심리상담 사업에 참여하는 상담자의 수준조차 천차만별인 상황이다(이동귀, 김광식, 권해수, 2013). 심리상담 전문인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심리상담사를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하여, 무자격자의 심리상담을 방지하는 것은 수준높은 상담사를 확보함으로써 상담의 성과와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라 함은 일련의 철학과 보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사람을 의미하며, 공식적인 단체에 의해 규정되고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직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은 자격제도와 훈련과정과 같은 목표적 성격도 중요하지만, 전문영역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사회적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 Richardson(1968)은 전문직의 일반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철저한 훈련을 통해 전문영역을 확립한다.

둘째, 그들이 사용하는 전문기술 등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에 활용된다.

셋째,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승인 과정이나 자격부여 체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전문가는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 수행 시 반드시 훈련내용과 전문적 윤리 및 기준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리상담 전문인력이란 내담자의 문제해결과 총체적 성장을 돕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인된 양성과정과 자격제도와 독점적 권리, 전문인력 협회와 윤리강령을 가진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리상담사의 역할과 직무

심리상담사의 전문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주된 논의는 미국심리학회(APA)에 Counseling psychology 분과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노안영, 1994). 다양한 논의를 통해 임상심리사와 심리상담사가 서로 다른 활동 영역과 전문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Osipow, Cohen, Jenkins, & Dostal, 1979), Goldschmitt 등(1981)은 심리상담사 업무 영역을 깊이 있는 심리치료, 연구, 심리평가, 프로그램 개발, 진로상담, 계속교육을 위한 전문가 컨퍼런스 참여, 목표지향적 상담, 근접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 훈련 등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상담 학계에서 이루어진 심리상담사의 역할 규명에 대한 학술적 노력에서 나아가 미국에서는 '상담사(Counselor)'를 명확하게 직업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미국의 표준직업분류(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는 상담사의 세부영역에 대해서 〈표 3-1〉과 같이 분류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전문영역의 상담사로서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표 3-1〉 미국 표준직업분류표 (Bureau of Labor Statistis, 2018)

대분류	21-0000 Counselors, social workers, and other community and social service specialists (상담사, 사회복지사, 기타 지역 및 사회서비스 전문가)
중분류	21-1010 Counselor(상담사)
세분류	21-1011 Substance abuse and behavioral disorder counselors (약물중독 및 행동장애 상담사)
	21-1012 Educational, guidance, and career counselors and advisors (교육, 학교 및 진로상담사)
	21-1013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s (결혼과 가족상담사)
	21-1014 Mental health counselors (정신건강상담사)
	21-1015 Rehabilitation counselors (재활상담사)
	21-1016 Counselors, all other (기타 상담사)

'상담사'가 표준직업분류체계에 정식으로 포함됨으로써 해당 분류체계에 따라 그 역할과 직무 또한 규정되었다. 미국 노동부의 직업정보 네트워크 O*NET에는 앞서 살펴본 상담사의 분류에 맞추어 직무영역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Mental health counselor(정신건강 상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상담사 세부영역 각각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Mental Health Counselor의 직무 (O*NET, 2020)

1	Maintain confidentiality of records relating to clients' treatment. (내담자의 치료와 관련된 기록의 비밀보장 유지)
2	Encourage clients to express their feelings and discuss what is happening in their lives, helping them to develop insight into themselves or their relationships.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논의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자신과 관계 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3	Collect information about clients through interviews, observation, or tests. (면접과 관찰, 검사를 통해 내담자에 대한 정보 수집)
4	Assess patients for risk of suicide attempts. (내담자의 자살위기에 대한 평가)
5	Fill out and maintain client-related paperwork, including federal- and state-mandated forms, client diagnostic records, and progress notes. (연방이나 주에서 요구되는 서류나 진단기록, 상담 진행 등 내담자 관련 서류작업)
6	Prepare and maintain all required treatment records and reports. (필요한 상담기록과 보고서 등 준비)
7	Counsel clients or patients, individually or in group sessions, to assist in overcoming dependencies, adjusting to life, or making changes. (내담자가 의존성을 극복하거나, 삶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인 혹은 집단상담 진행)
8	Guide clients in the development of skills or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ir problems. (내담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
9	Perform crisis interventions with clients. (위기개입상담)
10	Develop and implement treatment plans based on clinical experience and knowledge. (임상적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상담계획 수립)
11	Evaluate clients'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based on review of client information. (내담자 정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평가)
12	Act as client advocates to coordinate required services or to resolve emergency problems in crisis situations. (위기상황 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옹호자가 되거나 필요한 서비스 계획조정)

13	Modify treatment activities or approaches as needed to comply with changes in clients' status. (내담자 상태변화에 따른 상담접근과 활동의 조정)
14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ounseling programs on clients' progress in resolving identified problems and moving towards defined objectives. (상담목표 달성과 문제해결 등 내담자의 진전 및 상담의 효과성 평가)
15	Meet with families, probation officers, police, or other interested parties to exchange necessary information during the treatment process. (필요 정보 수집을 위한 가족, 보호관찰관, 경찰 등 관련 인물들과 만남)
16	Discuss with individual patients their plans for life after leaving therapy. (상담 종결 후 내담자들의 삶의 계획에 대한 논의)
17	Collaborate with other staff members to perform clinical assessments or develop treatment plans. (임상평가와 상담계획 수립을 위해 다른 직종들과 협업)
18	Counsel family members to assist them in understanding, dealing with, or supporting clients or patients. (내담자의 이해와 지지를 위해 내담자 가족 상담)
19	Monitor clients' use of medications. (내담자의 약물사용 관찰)
20	Plan, organize, or lead structured programs of counseling, work, study, recreation, or social activities for clients. (내담자의 상담, 일, 공부, 취미, 사회활동 등 계획 및 조직 돕기)
21	Learn about new developments in counseling by reading professional literature, attending courses and seminars, 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contact with other social service agencies. (다른 사회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세미나 등 참여, 문헌 독서 등을 통해 상담의 새로운 발전들에 대해 공부)
22	Refer patients, clients, or family members to community resources or to specialists as necessary. (필요에 따라 내담자나 가족 구성원을 다른 전문가나 지역자원 등으로 연계)
23	Gather information about community mental health needs or resources that could be used in conjunction with therapy. (상담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적 요구와 자원에 대한 정보수집)
24	Supervise other counselors, social service staff, assistants, or graduate students. (다른 상담사, 사회서비스 제공자, 대학원생 등에 대한 상담 자문)
25	Plan or conduct programs to prevent substance abuse or improve community health or counseling services. (약물남용을 예방하거나 지역사회의 건강과 상담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26	Coordinate or direct employee workshops, courses, or training about mental health issues. (정신건강과 관련된 워크샵, 강연, 훈련프로그램 등 기획 및 운영)

한편, 한국에서 역시 김봉환(2002)이 상담전공자의 직무수행 영역의 확대 가능성을 제안한 이래 심리상담사의 역할 범위와 직무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최윤경, 2004; 최윤미, 2003). 최윤미(2003)는 한국 심리상담사의 직무 영역을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역사회 상담교육 및 예방, 심리측정과 평가, 기업체 자문 및 교육, 상담자 교육훈련과 자문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최윤경(2004)은 상담연구, 상담행정, 중장기 성인상담, 교육 훈련 자문, 단기문제해결상담, 기관 상담, 진로 및 학업상담, 사례관리 및 검사활동의 8개 영역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심리상담사가 이상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실제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다소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최윤경, 2004). 이상적 역할과 실제 현장에서의 역할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심리상담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명시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상담 기관이나 맥락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이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법령 속에서 심리상담사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역할에 관한 정의가 기록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권수영 등, 2016). 심리상담사의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다양한 국가적 재난상태를 맞이했을 때 심리상담사가 전문적 지원인력으로 체계적인 역할을 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심리상담 전문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투입되어 재난 극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이동훈, 강현숙, 2015).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끝에,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심리상담이 신규로 편성되고 나아가 국가수준에서 심리상담의 직무분석을 수행하게 되었다. 〈표 3-3〉은 NCS 심리상담 세분류에 명시된 심리상담사 직무능력단위를 나타낸다. 능력단위는 구체적으로 상담안내, 접수상담, 내담자 의뢰 및 연계, 개인심리치료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상담, 위기상담, 심리상담 교육, 심리검사 활용, 심리상담 자료관리, 심리상담 자문, 상담자 훈련 등 12개의 역할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역할별 구체적 주요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NCS 직무능력단위는 직무와 역할의 영역에 대한 정의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직무수행 요건을 함께 정의하고 있어 심리상담사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 수립 및 이와 연계한 자격검정체계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표 3-3〉 NCS 심리상담 세분류 직무능력단위

직무	능력단위	주요업무
심리상담	상담안내	상담신청 응대하기 상담진행 절차 설명하기 상담신청 접수하기 상담예약 관리하기
	접수상담	호소문제 파악하기 내담자 정보 수집하기 문제수준 분석하기 상담방법 안내하기 상담자 배정하기
	내담자 의뢰 및 연계	의뢰 및 연계기관 발굴하기 의뢰 및 연계기관망 구축하기 내담자 의뢰하기 의뢰사례 추수관리하기
	개인심리치료상담	상담 구조화하기 상담관계 형성하기 사례개념화하기 상담목표 수립하기 상담 진행하기 상담 종결하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 기획하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준비하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하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종결하기
	관계자 상담	커플 상담하기 가족원 상담하기 조력자 상담하기
	위기상담	위기상황 평가하기 위기상담 계획하기 위기상담 진행하기 위기상담 결과 평가하기
	심리상담 교육	심리상담 교육 요구 조사하기 심리상담 교육 설계하기 심리상담 교육 실시하기
	심리검사 활용	심리검사 선정하기 심리검사 실시하기 심리검사 결과 평가하기 심리검사 해석상담하기
	심리상담 자료관리	개인정보 보호하기 상담기록 관리하기 상담통계 활용하기
	심리상담 자문	심리상담 자문관계 구축하기 심리상담 자문 계획하기 심리상담 자문 실시하기
	상담자 훈련	상담자 교육분석 실시하기 상담자 윤리교육 실시하기 심리상담 훈련 실시하기 심리상담 수퍼비전 실시하기

3. 심리상담사의 윤리

오늘날의 많은 전문직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윤리규정을 따르는데, 이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통된 기준을 확립하고, 다양한 문제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Baker 등, 1999; Welfel, 2002). 심리상담사를 위한 윤리원칙은 높은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시된다. 왜냐하면, 심리상담사의 여러 결정들은 내담자와 내담자 가족, 상담기관, 동료 심리상담사, 지역사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잠재하는 윤리상의 문제들을 예상하고 실제적인 윤리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담자는 상담 관련 윤리 규정 및 법률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딜레마가 내포된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사용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권경인, 조수연, 2015; 서영석, 최영희, 이소연, 2009).

미국의 경우,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상담협회(ACA)에서는 1961년 윤리지침(code of ethics)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현재는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4년의 윤리지침이 최신 윤리규정으로 준용되고 있다. 이 지침의 제정 목적은 크게 첫째, 심리상담사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둘째, 윤리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셋째, 내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9개의 중요영역(main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상담관계(Counseling relationsihp)', '비밀보장과 개인정보(Confidentiality and privacy)', '직업적 책임(Professional responsibility)', '유관 직종과의 관계(Relationships with other professionals)', '평가 및 진단과 해석(Evaluation, assessment, and interpretation)', '슈퍼비전, 훈련, 교육(Supervision, training, and teaching)', '연구와 출판(Research and publication)', '원격 상담, 기술, 소셜미디어(Distance counseling, technology, and social media)', '윤리적 이슈 해결(Resolving ethical issues)'이다.

심리상담사 윤리지침은 심리상담사들이 내담자의 생애 전반에 걸친 인간적 성장을 돕고, 인간적 존엄성과 잠재력, 독특성을 자신들의 문화사회적 맥락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적 정의를 촉진하며, 상담자-내담자 관계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행동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율성(autonomy)-개인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촉진.

둘째, 무해성(nomaleficence)-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피함.

셋째, 선행(beneficence)-마음건강과 웰빙을 촉진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위함.

넷째, 정의(justice)-모든 개인을 동등하게 대하며 공정함과 평등함을 촉진.

다섯째, 신뢰(fidelity)-전문적 관계의 신뢰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헌신 및 약속 엄수.

여섯째, 진실성(veracity)-상담장면에서 만나는 개인들을 진실하게 대함.

이와 같은 ACA의 윤리적 가치와 원칙들은 심리상담사가 상담장면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상담윤리는 심리상담사의 전문적 정체성의 핵심이며, 심리상담사로서 역할 수행에 있어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Hill, 2004). 그러나 윤리규정이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모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Corey, Corey, & Callanan, 2011), 미국상담학회 윤리위원회의 경우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하여 회원들의 윤리적 이슈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나, 윤리위원회의 교육 활동들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Anderson & Freeman, 2006; Williams & Freeman, 2002).

한국의 경우에도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윤리규정을 각 학회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2003년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 2009년, 2018년 등 세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당 윤리강령은 상담사의 행동원칙으로써 전문성, 성실성, 사회적 책임, 인간존중, 다양성 존중을 명시하고 있으며, 윤리 규정의 주요 영역을 전문가로서의 태도, 사회적 책임,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상담관계,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심리평가,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 윤리문제 해결 등 8개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상담학회의 경우 2002년 윤리강령을 최초 제정하고 2008년, 2011년, 2016년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윤리강령에서는 상담사의 행동원칙으로 개인의 가치, 잠재력 및 고유성 존중, 내담자의 전인적 발달 촉진, 내담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안녕 유지 및 증진, 내담자 복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역시 8개의 구체적 윤리 영역으로 구체적으로는 전문적 태도, 정보의 보호, 내담자의 복지, 상담관계, 사회적 책임, 상담연구, 심리검사, 윤리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Ⅳ.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 실태

1. 관련 유사명칭 및 유관 국가자격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크게 자격기본법에 따른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자격 발급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국가면허제도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 그리고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공인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까지 심리상담 분야에서의 국가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으며, 협회 및 학회에서 제공하는 민간자격증을 중심으로 이를 취득하여 심리상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심리상담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종합적인 상담 관련 국가자격의 경우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있으며, 해당 자격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또한 존재하므로 이들 자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1) 관련 민간자격제도

심리상담사 관련 유사 민간자격 실태는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공인민간자격과 일반 등록민간자격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2020년 3월 기준, '심리상담'을 키워드로 검색한 경우 유사한 명칭의 공인민간자격은 없으며, 등록민간자격은 295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등록민간자격 37,688개 중 7.8%에 달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또한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신규등록건수가 2015년에는 567건, 2016년 547건, 2017년 430건, 2019년 381건, 2020년 3월까지 73건으로 상담 민간자격의 증가세가 매우 급격한 것으로 보인다.

등록민간자격 중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격으로는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가 있다. 두 학회의 전체 회원수는 2019년 말 기준 약 55,000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상담사로 실제 활동하는 이들은 약 32,000명 정도로 나타났다(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9). 이들 학회들은 상담 전문가를 1급, 2급으로 구분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자격증별 전문가 수는 2019년 기준 한국상담학회 5,305명, 한국상담심리학회 4,29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상담학회는 심리상담 전문 자격증을 '전문상담사'로 칭하며 각 급수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급 전문상담사 취득 요건은 상담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2급 자격증 취득자 중 720시간의 상담 수련을 거친 자나,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으로 540시간의 상담 수련을 거친 자 중 필기 및 면접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이다. 2급 전문상담사 취득 요건은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이수자 중

180시간의 상담 수련을 마친 자나, 학회 가입 이후 교육연수기관에서 450시간 이상의 상담교육을 이수하고 360시간의 상담 수련을 마친 자 중 필기 및 면접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이다.

〈표 4-1〉 심리상담 분야 민간자격증 현황(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9)

학회명	총 회원수	활동회원수	자격증별 전문가 수	
한국상담학회	23,676	12,000	1급	741
			2급	4,564
			소계	5,305
한국상담심리학회	24,028	16,783	1급	1,111
			2급	3,180
			소계	4,291
계	47,704	28783		9,596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심리상담 전문 자격증을 '상담심리사'로 칭하고 있으며 각 급수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급 상담심리사 취득 요건은 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상담심리사 2급 취득자, 상담관련 박사과정 입학자 중 개인상담 400시간 이상, 집단상담 집단상담 60시간 이상, 심리검사 해석 2사례 이상 등을 포함하는 수련기준을 충족한 자 중 필기 및 면접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이다. 2급 상담심리사 취득 요건은 상담관련 석사과정 재학자, 상담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중 접수면접 20회 이상, 개인상담 50시간 이상, 심리평가 10사례 이상 등을 포함하는 수련기준을 충족한 자 중 필기 및 면접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이다.

언급한 두 학회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수련기간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간등록자격증도 존재하는 반면, 어떤 자격들은 자격관리기관의 홈페이지조차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상담 및 심리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인도 온라인 강의만 수강 완료할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3,000여개에 달하는 심리상담 관련 민간등록자격 중 '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자격증의 수 역시 매우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심리상담사 유관 국가자격제도 현황

심리상담사 유관 국가자격으로는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청소년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가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그 직위가 교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역시 현장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상담사 유관 국가자격제도의 하나로 보고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으로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수행직무는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등에서 심리상담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최초의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은 2003년에 이루어졌으며, 2019년 기준 자격발급 건수는 총 19,578건으로 1급 619건, 2급 5,945건, 3급 13,014건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0).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의 자격발급 건수가 총 7,324건인데 비해 최근 5년간의 자격발급 건수가 총 12,254건으로 그 증가 추이가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상담교사는 초·중등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교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배치되어 심리상담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부는 1999학년도부터 전국의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144건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시작으로 2018학년도에는 1,187건의 신규 전문상담교사 교원자격증이 발급되기에 이르렀다(교육통계연보, 2019). 〈표 4-2〉에는 최근 5년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증 및 전문상담교사 교원자격증 발급 현황을 제시하였다.

〈표 4-2〉 최근 5년간 상담 관련 국가자격 발급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청소년상담사	1급	15	52	39	88	109	303
	2급	409	564	830	1,042	767	3,612
	3급	1,558	1,531	2,141	1,594	1,515	8,339
	계	1,982	2,147	3,010	2,724	2,391	12,254
전문상담교사	1/2급	1,092	1,198	1,380	1,135	1,187	5,992
계		3,074	3,345	4,390	3,859	3,578	18,246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요건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별표3에 의해 명시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표 4-3〉과 같다. 해당 급수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며, 자격시험의 내용 또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표 4-3〉 청소년상담사 급별 자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별표3)

등급	응시자격기준
1급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급	응시자격기준
2급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표 4-4〉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과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면접
	선택	비행상담·성 상담·약물 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시험	면접
	선택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 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필기시험	면접
	선택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요건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3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표 4-5〉와 같다. 일반적으로 교육대학원 등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칠 경우 전문상담교사 2급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으며, 2급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교원 임용시험을 통과한 경우 국·공립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로 임용될 수 있으며, 일정 경력 및 자격연수를 통해 1급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원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사립학교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임용과정을 통과한 경우 2급 교원자격증으로 전문상담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4-5〉 전문상담교사 자격요건(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3)

자격	내용
전문상담교사 1급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전문상담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Ⅴ. 심리상담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1. 심리상담 국가시험 운영 등

(1) 심리상담사 국가시험 과정의 개요

심리상담사 국가시험 과정은 심리상담사협회 산하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리상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면, 이에 따라 심리상담사시험 실시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응시자격 확인 – 시험실시 – 합격자 통보 – 심리상담사 자격증 발급 등의 절차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안한다.

(2)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심리상담사시험에 관한 사항,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심리상담사 응시자격 및 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심리상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심리상담사들로 구성된 심리상담사협회 산하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도록 제안한다.

첫째,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과목과 관련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는 심리상담의 직무능력을 12개 단위로 세분하고 각 단위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응시자가 심리상담사의 종합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적절히 이수하였음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시험과목이 무엇인지 심의하고, 대통령령에 그 결과를 규정하도록 제안한다.

둘째, 심리상담사 자격시험의 선발인원과 관련하여,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회 분야와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제안한다.

셋째,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법률에서는 응시자가 내담자 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음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대학에서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사람 및 위 두 경우와 동등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응시자격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고 대통령령에 그 결과를 규정하도록 제안한다.

넷째, 심리상담사 자격의 부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는 심리학·교육학·청소년학·아동학·상담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정신분석학 등 상담 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위 전공으로 석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서 위 전공과목으로 5년 이상 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률 시행 후 3년 동안 심리상담사시험 없이도 심리상담사가 될 수 있는 예외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위 자격취득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도록 제안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의 심리상담사시험 시행절차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과목,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선발인원, 심리상담사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에 기초하여, 실제 심리상담사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첫째, 심리상담사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도록 제안한다. 위 시행공고는 다른 자격시험의 공고방식과 마찬가지로 시험의 일시, 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기관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둘째, 심리상담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제안한다. 시험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는 이유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심리상담의 직무능력을 세분화하고 각 단위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한 번의 시험만으로 응시자가 심리상담에 필요한 종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시험 응시자로부터 응시자격의 증명방법이 포함된 응시원서 및 결격사유 조회요청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제안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응시자격 증명방법 및 경찰청 등 결격사유 조회요청기관으로부터 받은 조회결과를 기초로 응시자의 응시자격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선발인원 수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제안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만, 심리상담사협회에는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심리상담사협회를 제외한 곳에 시험관리를 위탁해야 할 것이다.

2. 심리상담기관 및 관련학과 인정방안

앞서 기술한 대로 심리상담사 자격시험은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5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위 두 경우와 동등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때 심리상담기관 및 관련학과는 심리상담사의 전문적 역량을 훈련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응시자가 심리상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음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심리상담기관 및 관련학과를 정의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심리상담기관의 정의 및 인정 범위는 심리상담사의 역할과 기능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는 심리상담사의 직무능력을 상담안내, 접수상담, 내담자 의뢰 및 연계, 개인심리치료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상담, 위기상담, 심리상담 교육, 심리검사 활용, 심리상담 자료관리, 심리상담 자문, 상담자 훈련 등 12개의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심리상담기관은 이와 같은 심리상담 직무 역할을 수행 및 훈련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며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한편, 2017년과 2019년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실시한 심리상담사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상담기관과 상담복지기관(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복지관, 보육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고용복지센터,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학교 내 상담시설(예, 초, 중, 고, 대학 상담소), 사설상담기관, 기업 내 상담시설, 교육기관(예, 교육연수원, 교육개발원, 교육지원센터 등), 의료기관,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산업범위 분석 연구보고서(김인규, 손요한, 2019)에 따르면, 18개 국가 행정부처에서는 부처별 목적에 부합하는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99개의 상담관련 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자활센터, 긴급지원기관, 노숙인자활시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 등의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센터 등의 기관을, 법무부에서는 보호시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심리상담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전문기관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평등상담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업안정기관 등의 전문기관을, 교육부에서는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 교원치유센터, 국가진로교육센터 등의 전문기관과 영재학교, 학교상담실 등의 학교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경찰청, 소방청, 국가보훈처 등의 부처별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소방전문치료센처, 지역적응센터,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등을 두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현재 심리상담 전문인력들이 근무하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규정하는 심리상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리상담 관련 기관 등을 심리상담사 자격관리를 위한 심리상담기관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학과는 앞서 기술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규정된 심리상담 직무를 훈련·교육시키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전공 교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학과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등 여성가족부령에서 정한 10개의 학과 또는 10개 학과명의 조합인 경우 상담관련 학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담관련 학과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등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담 관련학과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상담 직무역량을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관련 교과목 등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교육학·청소년학·아동학·상담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정신분석학 등을 상담관련 학과로 인정하고, 또한 이상의 단일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관련학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관련학과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진로/직업상담, 상담교육 및 수퍼비전, 상담연구방법, 상담윤리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5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여 실제로 개설하고 있는 학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3. 심리상담 관련 이수 교과목 구성방안

심리상담사가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사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의 인정 기준과 더불어 세부적인 이수 교과목, 즉 교육과정이 정립되어야 한다. 심리상담사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정립은 교육 기관이 현장에서 심리상담사의 훈련 및 양성 교과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준거의 틀이 됨으로써 표준화된 훈련·양성 체제가 자리잡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심리상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으로 제안한 바, 이어서 구체적인 이수 교과목을 구성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NCS에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심리상담 직무능력단위의 분류들(상담안내, 접수상담, 내담자 의뢰 및 연계, 개인심리치료상담, 관계자 상담, 위기상담, 심리상담 교육, 심리검사 활용, 심리상담 자료관리, 심리상담 자문, 상담자 훈련)과 더불어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의 자격규정 중 교과 인정 영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표 5-1 참조).

첫째, 이수 교과목 체제는 필수교과 영역과 선택교과 영역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필수교과의 경우 제시된 전 영역의 과목을 적어도 하나 이상 이수하도록 하며, 선택교과에서는 최소요구 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필수교과 영역은 상담이론, 심리진단 및 평가, 상담실습의 세 영역으로 하여 각 영역에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과목을 이수할 것을 제안한다. 이 영역들은 내담자의 호소문제와 기저 원인을 평가·이해하고, 문제 해소를 위한 개입 전략을 수립하고, 내담자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등,

내담자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선택교과 영역은 상담기법 및 실제, 성격 및 정신병리, 상담윤리, 상담자교육 및 슈퍼비전, 가족 및 커플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특수아 상담, 학교상담, 위기상담, 다문화상담, 진로상담, 심리상담 연구방법 등의 영역으로 하여 NCS 직무능력단위의 상담안내, 관계자 상담, 위기상담, 심리상담 교육, 심리상담 자문, 상담자 훈련 등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망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필수교과 전 영역과 선택교과를 포함하여 18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 필수교과 전 영역과 선택교과를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할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본 절에서는 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의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대학의 교과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목 명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심의절차를 통해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표 5-1〉 심리상담 관련 이수 교과목 구성(안)

필수영역(각 영역 모두에서 최소 한 과목 이상 이수)					
영역	**관련과목 예시**	**영역**	**관련과목 예시**	**영역**	**관련과목 예시**
상담 및 임상 이론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개인상담이론 집단상담이론	심리진단 및 평가	심리검사 심리진단 및 평가 생리심리학 투사검사 심리측정이론 아동심리평가	상담실습	상담현장실습 임상현장실습
선택영역					
영역	**관련과목 예시**	**영역**	**관련과목 예시**	**영역**	**관련과목 예시**
상담기법 및 실제	상담기법 상담면접 사례개념화	성격 및 정신병리	성격심리학 이상심리학 정신병리학	상담윤리	상담윤리 심리상담과 윤리
상담자 교육 및 슈퍼비전	상담자교육슈퍼비전 집단상담슈퍼비전 슈퍼비전실습	가족 및 부부상담	가족 및 부부상담 인간관계와 가족상담	아동 청소년 상담	아동청소년 발달 아동, 청소년 행동장애
특수아 상담	특수아상담 영재아상담 발달장애 치료	학교상담	학업상담 학교상담의 실제	위기상담	위기상담 중독상담
다문화 상담	다문화사회와 상담 다문화교육 및 상담	진로상담	생애와 진로 진로 및 직업상담	심리상담 연구방법	심리상담연구방법 임상연구방법 사례연구방법 심리통계

4. 심리상담사법(안)

심리상담사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심리상담사의 자격을 정하고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마음건강 유지와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이란 심리상담사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심리적 갈등이나 사회적 부적응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대인관계 및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지적·정서적·행동적·체계적 상담전략과 대면·원격대화로 호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지원, 원조 활동을 말한다.
2. “심리상담사”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뒤 제3조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내담자”란 심리사회적이고 적응적 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여 상담을 받으려고 심리상담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상담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4. “관계자”란 내담자의 가족, 대리인, 동거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 보호자 등으로서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 심리적 문제 해결에 조력을 구하기 위해 상담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 심리상담사는 보건, 복지, 교육, 가정 기타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상담에 응하고 조언, 지도 기타 원조를 하는 것
2.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관계자에 대해 상담에 응하고 조언, 지도 기타 원조를 하는 것
3. 마음의 건강에 관한 지식 보급을 위한 연구·교육 및 정보의 제공,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것

제4조(심리상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사항) ①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심리상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인권존중 및 품위유지 의무 등) ① 심리상담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상담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리상담사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 내용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제3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2장 자격과 시험

제6조(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는 심리상담사가 될 자격을 가진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상담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8.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심리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 ① 심리상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사협회에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심리상담사 응시자격, 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리상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리상담사협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9조(심리상담사시험) ① 심리상담사시험은 매년 1회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심리상담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심리상담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5호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심리상담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④ 심리상담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심리상담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응시자격) 제9조의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담학, 심리학 등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기타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담학, 심리학 등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기타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5년 이상 제3조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전2호에 열거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11조(심리상담사시험의 위탁)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심리상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심리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13조(심리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3장 등 록

제14조(등록) ① 심리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3조의 심리상담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심리상담사의 등록신청과 변경, 등록증교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의 사실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해당 심리상담사가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4. 해당 심리상담사가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5. 사망하였을 때

제16조(등록료) 심리상담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제17조(사무소 설치) ① 심리상담사는 제3조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② 심리상담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합동사무소) ① 심리상담사는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심리상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심리상담법인) 심리상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리상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0조(심리상담법인의 사원 등) ① 심리상담법인의 사원은 3명 이상의 개업심리상담사로 구성한다.

②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심리상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③ 심리상담법인은 사원이 아닌 심리상담사(이하 '소속심리상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제21조(심리상담법인의 설립 절차 등) ① 심리상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심리상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리상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심리상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2조(심리상담법인의 해산) ① 심리상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심리상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심리상담법인의 인가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원의 수(數)에 미치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5. 심리상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심리상담사가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심리상담법인이 개업심리상담사 또는 개업심리상담사이었던 자(개업심리상담사 또는 개업심리상담사이었던 자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경우

제24조(심리상담법인의 사무소) ① 심리상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심리상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심리상담법인의 사원과 소속심리상담사는 그 심리상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심리상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심리상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제25조(심리상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① 심리상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심리상담사(이하 "담당심리상담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심리상담사를 담당심리상담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심리상담법인의 사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리상담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심리상담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리상담법인의 사원 모두를 담당심리상담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담당심리상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심리상담법인을 대표한다.

④ 심리상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심리상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겸업의 금지) ① 심리상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심리상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심리상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심리상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심리상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심리상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심리상담사이었던 사람은 그 심리상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심리상담법인의 담당심리상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심리상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준용규정) 심리상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심리상담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심리상담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9조(폐업신고) ① 심리상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심리상담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휴업신고) ① 심리상담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휴업한 심리상담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심리상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심리상담사의 권리·의무

제31조(사무직원) ① 심리상담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심리상담사의 행위로 본다.

제32조(보수) ① 심리상담사는 내담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② 심리상담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내담자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

제33조(비밀유지의무) 심리상담사 또는 심리상담사이었던 사람(심리상담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업무의 연계 등) ① 심리상담사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담자에게 보건의료, 복지, 교육 등과 긴밀한 연계 하에 종합적이고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이를 제공하는 자 기타 관계자 등과의 연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심리상담사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해당 지원에 관한 주치의가 있을 경우 그와 협력해야 한다.

제35조(상담기록부 작성) ① 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상담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상담한 연월일
3. 상담한 내용의 개요
4. 보수액
5. 내담자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상담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심리상담사의 교육·연수) ① 심리상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담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 등록을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심리상담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심리상담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시기·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심리상담사협회

제37조(심리상담사협회의 설립 등) ① 국민의 마음건강 유지 및 행복 증진, 기여를 도모하고 심리상담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심리상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는 정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39조(협회의 가입의무)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심리상담사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0조(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협회에 대한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 업무상황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2조(정보 공개) ① 협회는 내담자의 심리상담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심리상담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심리상담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리상담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도·감독

제43조(자격정지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심리상담사가 제1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44조(심리상담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4. 심리상담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45조(징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심리상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26조에 따른 겸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 제33조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28조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심리상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8.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중대한 과실로 내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9. 제43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심리상담사가 직무를 수행한 경우

② 심리상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③ 심리상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제명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譴責)

④ 제37조에 따른 심리상담사협회는 심리상담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심리상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46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시험운영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
2. 제2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심리상담사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 받은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33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심리상담사 업무를 한 사람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심리상담사, 상담사무소, 심리상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3. 제43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에 심리상담사 업무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2개소를 설치한 사람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담자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사람

제48조(양벌규정) 심리상담사의 사무직원이 심리상담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심리상담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심리상담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2항 및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사람
2. 제35조를 위반하여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심리상담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심리상담사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업,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심리상담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상담사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상담사시험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실시한다.

제3조(명칭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심리상담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명칭 중에 심리, 상담의 문자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 2년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심리상담사 자격의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리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심리학, 교육학, 청소년학, 아동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등 심리상담 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자
2. 심리학, 교육학, 청소년학, 아동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등 심리상담 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 또는 이와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심리학, 교육학, 청소년학, 아동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등 심리상담 전공을 5년 이상 교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박사학위의 인정기준, 5년 이상 교수한 경력,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09). 상담자 윤리. 서울: 학지사.

곽미용, 이영순 (2010). 상담자 자격의 윤리적 문제. 인문학논총, 15(1), 235-253.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학교상담진흥법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학교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경인, 조수연 (2015). 집단상담 윤리: 개관. 상담학연구, 16(4), 65-88.

김봉환 (2002). 상담전공자의 직무수행 영역 확대를 위한 탐색적 논의. 대학생활연구, 20, 1-27.

권수영, 이신형, 황진태, 손재구 (2016). 전문상담사의 국가자격화 논의를 위한 연구: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4), 9-29.

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 (2012).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41-670.

김인규 (2009). 학교상담 법제화 방향 탐색 연구. 교육학연구, 47(1), 19-47.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김인규, 손요한 (2019). 상담관련 법률적 근거에 의한 산업범위 분석 연구. 미발행 보고서.

김정진 (2016). 상담사 등의 처우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 입법과 정책, 8(2), 247-271.

김진희, 오익수, 최동옥, 권해주 (1996). 학교상담체제발전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김영근, 조민지, 조민경, 손요한 (2013).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노안영 (1994). 상담심리학의 최근 동향. 학생생활 연구, 26(1), 99-113.

명대정 (2000). 상담의 전문직화 방안: 주요전문직(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의 선례분석을 기초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간자격정보서비스 (2019). 민간자격검색. http://pqi.or.kr/inf/qul/infQulList.do에서 검색.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9). 2019 상담분야 인력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서울: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서영석, 안수정, 안하얀, 이소연 (2019). 한국상담심리학회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 Ⅰ: 학회 제반 활동에 대한 학회원들의 만족도 및 요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65-1405.

서영석, 최영희, 이소연 (2009). 상담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15-842.

유형근 (2002). 종합적인 학교상담 체제 구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1), 55-70.이상민 (2020). 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547-557.

이동귀, 김광식, 권해수 (2013).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 재정립. 서울: 국방부.

이동훈, 강현숙 (2015). 미국의 재난심리지원 체계 및 재난위기상담의 실제와 시사점. 상담학연구, 16(3), 513-536.

이상민 (2020). 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547-557.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한국에서의 상담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87-607.

이장호 (2009).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이창호, 이소엽, 조수연 (2011).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과목 응시자격 개선 결과보고.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이형국 (2016). 상담전문가 인력현황 조사연구: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5), 109-132.

이형득 (1992). 상담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최윤경 (2004). 한국 상담자의 전문업무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학연구, 17(2), 147-173.

최윤미 (2003). 한국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직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79-200.

최정아 (2018). 법률 분석을 통한 상담전문직의 사회적 위상: 현황과 과제. 상담학연구, 19(3), 341-366.

최해림, 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 석박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29.

황준성, 김성기, 이덕난, 안병천 (2011). 학교상담법제화에 대한 요구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1), 347-374.

Anderson, D., & Freeman, L. T. (2006). Report of the ACA Ethics Committee: 2004-2005.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2), 225-227.

Baker, R. B., Caplan, A. L., Emanuel, L. L, & Latham, S. R. (1999). *The American medical ethics revolution*.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Corey, G., Corey, M. S., & Callanan, P. (2011).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 Belmont, CA: Brooks/Cole.

Gall, M, D., Gall, J. P., & Borg, W. R (2003). *Educational research: An introduction(7th ed.)*. Boston, MA: Allyn & Bacon.

Galletly, C. A. (1993). Psychiatrist–patient sexual relationships: the ethical dilemma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7*(1), 133–139.

Goldschmitt, M., Tipton, R. M.., & Wiggins, R. C. (1981). Professional identity of counseling psycholog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2), 158–167.

Hill, A. L. (2004). Ethical analysis in counseling: A case for narrative ethics, moral visions, and virtue ethics. *Counseling and Values, 48*(2), 131–148.

Kaplan, D. M., Tarvydas, V. M., & Gladding, S. T. (2014). 20/20: A vision for the future of counseling: The new consensus definition o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2*(3), 366–372.

Kim, A. R., Lee, S. M., & An, S. (2018).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counselling services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Psychotherapy Research, 28*(5), 820–828.

Nassar–McMillan, S. C., & Niles, S. G. (2011). *Developing your identity as a professional counselor*. CA: Brooks/Cole.

Mellin, E. A., Hunt, B., & Nichols, L. M. (2011).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9*(2), 140–147.

Osipow, S. H., Cohen, W., Jenkins, J., & Dostal, J. (1979). Clinical versus counseling psychology: Is there a difference? *Professional Psychology, 10*(2), 148–153.

Richardson, A. G. (1968). The role of the professionals. *American Association of Industrial Nurses Journal, 16*(11), 26–27.

Rogers, C. R. (1942).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er concepts in practice.* Boston, MA: Houghton Mifflin.

Sheeley, V. L., & Stickle, F. E. (2008). Gone but not forgotten: Council leaders, 1934–1952.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6*(2), 211–218.

Sweeney, T. J. (2001). Counseling: Historical origins and philosophical roots. In D. C. Locke, J. E. Myers, & E. L. Herr (Eds.), *The handbook of counseling* (pp. 3–26). CA: Sage.

Welfel, E. R. (2002). *Ethic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acific Grove, CA: Brooks/Cole.

Williams, C. B., & Freeman, L. T. (2002). Report of the ACA Ethics Committee: 2000–2001.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2), 251–254.